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장기 반부패 Master Plan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한국행정연구원

제 출 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장기 반부패 Master Plan」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0. 31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	홍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종설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선중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홍성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차 례

I. 서론 : 대한민국 왜 반부패·청렴을 말하는가?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기본방향 및 내용 …………… 5	
II. 한국사회 부패 진단 : 우리사회의 반부패·청렴 환경 어떠한가? …………… 7	
1.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 7	
2.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 평가 …………… 16	
3. 한국사회 부패의 원인(사례를 중심으로) …………… 32	
III. 전략수립을 위한 목표 및 방향 : 반부패·청렴 확산의 방법은 무엇인가? …………… 45	
1. 반부패·청렴 마스터플랜의 성공요인 …………… 45	
2. 각 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대별 반부패 정책 사례 분석 …… 48	
3. 반부패·청렴 전략 도출 …………… 67	
4. 비전의 설정과 목표체계 …………… 72	
5. 반부패마스터플랜 이행계획 및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 74	
IV. 과제별 전략 :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77	
1. 청렴 소프트파워 형성을 위한 청렴교육·홍보 확산 …………… 77	
2. 청렴의식 함양 …………… 103	
3. 청렴 플랫폼 구축 …………… 141	
4.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 186	
V. 향후 기대 효과 …………… 233	

1. 서론 : 대한민국 왜 반부패·청렴을 말하는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며

-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부패방지위원회 창설연도인 2002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4.5이었고, 2005년 5.0으로 5점대에 진입하기까지는 4점대에 머물다가 그 이후에는 5점대에 머물고 있음
-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부패·청렴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이 요구됨

□ 반부패·청렴가치의 국가 아젠다 설정의 필요성

- 본 연구는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반부패·청렴가치의 전사회적 확산과 중·장기적으로 청렴선진신뢰사회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아젠다 설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렴”이라는 말은 과거 속의 가치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렴이나 반부패라는 가치에 대한 강조가 사회구성원들을 매우 불편해하게 만들고 마치 시대착오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 반부패·청렴이라는 가치는 마치 하나의 수단적 가치로 전락한 듯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소 청렴하지 않아도 용인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는 더욱 더 반부패·청렴 가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어린 학생들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성적만 우수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UN Global Compact 가입 기업체의 증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반부패·청렴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와 국가 이미지 쇄신의 기틀을 마련
- 우리나라는 최근의 경제성장과 함께 OECD 가입, OECD DAC(원조위원회) 가입, G20정상회의 개최, UN반부패협약 가입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등장하였으나 부패문제는 별로 해소되지 않아 국격 제고나 선진사회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기존 부패방지정책의 한계 극복의 필요성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반부패·청렴 정책은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부패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나 의식의 전환이 부족하고 일부 특정 직역이나 계층,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대안 제시나 부패를 저질러 현실에서 이슈화되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식에 그치고 있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의 경우, 위반 시 형량도 선진국에 비하여 작지만 기소하여도 판결 시 양형 기준에도 미흡하고 판결을 받아도 집행유예나 사면 등으로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는 뒤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언급됨)은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이나 의식의 개혁이 없다는 단적인 증거임
- 국내적으로는 부패문제가 기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며 국제 상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어 기업의생산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정부의 생산성을 하락시켜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여러 중남미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국가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오게 함

- ※ 역사에서 보면 서양의 로마제국 멸망이나 근대 중국대륙의 공산화 등은 외부의 침입이나 물리적 경제력의 약화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이로 인한 분열, 약화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역대 정부에서는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의 설립 및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는 기대하였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전반적으로 청렴에 대한 의식이나 부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청렴이나 부패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어느 정도 둔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됨
- 수많은 반부패관련 제도나 법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직이나 민간부문 사회지도층의 기획적 혹은 전략적 부패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형부패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련 법·제도의 미흡함이나 부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행에 그 주요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먼저 반부패관련 제도나 법들은 서구 선진국들이나 청렴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형식적이며 실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도 미약하여 법제도에 의한 적발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짐
- ※ 미국법원은 1조 5000여억 원을 분식 회계한 석유재벌 엔론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4년 4월형을 선고했으나, 한국법원은 20여조 원을 분식 회계한 재벌총수에게 징역 8년 6월을 선고하는데 그침.(조선일보 2011. 10. 17) 또한 3000만원-5000만원 미만 뇌물수수의 경우 법정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이나 작년 1심의 선고형량 평균은 그 절반정도인 2년 7개월임(조선일보 2011. 10. 20)
- 부패와 관련된 사회전반의 인식과 관행은 공교육이나 사회교육, 홍보 등의 미흡함에도 기인할 수 있고, 또한 위에서 지적한대로 법제도나 적발처벌 실효성의 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하된 결과일 수 있음. 중요한 점은 국민의 대표에 의한 법의 제정이나 전반적인 배심원제의 실행은 아니지만 법관에 의한 판결이나 집행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과 관행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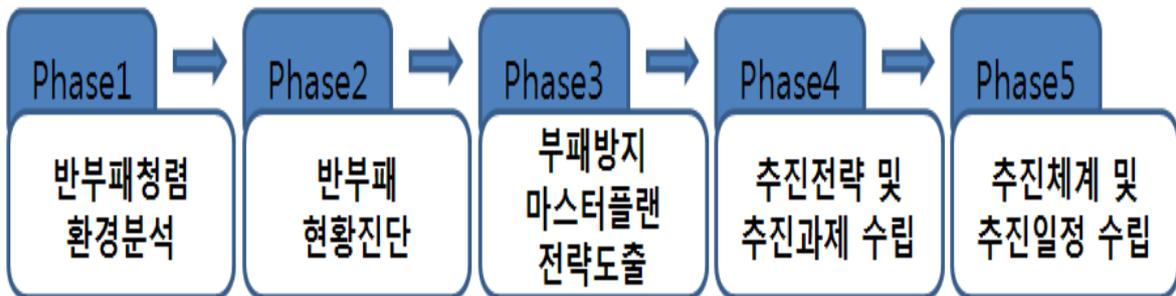
□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부패방지 계획 마련

- 현재 한국의 상황은 반부패, 청렴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여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부패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철저한 반부패, 청렴운동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임
 - 따라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및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요청됨
-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변화상과 현재 부패방지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사회의 부패적결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플랜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아젠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반부패 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 전략과 액션플랜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및 부패방지기구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2. 연구의 기본방향 및 내용

□ 연구의 주요 흐름

-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 환경 분석, 반부패 현황진단, 반부패·청렴마스터플랜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추진체계 확립 및 추진일정 수립의 5단계로 진행함



○ 연구추진 절차에 따른 연구방향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계 구분	반부패·청렴 환경 분석	반부패 현황 진단	부패방지 마스터플랜 전략도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수립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수립
Main Issue	-우리사회의 공 정성 및 반부 패·청렴 수준 -반부패정책에 대한 효과성	-권익위 부패방지 정책 진단 및 향 후 방향성 -공공부문 부패방지 시책 진단 및 향후 방향성 -권익위 및 유관기관 의 부패방지 관련 기 능 -민간부문의 부패방 지 및 역할	-2020년 기준으 로 한 반부패· 청렴 마스터플 랜의 미션 및 목표 -단계별 목표에 대한 목표설정	-권익위 부패방지 업무 독립적 수행방안 -부패방지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부패방지 기능 극대화	-부패방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체 계 마련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일정 수립
주요 연구내용	-반부패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국제반부패기구 및 외국의 동향 파악	-권익위의 부패방 지 정책 분석 -청렴도 향상을 위 한 정책방향 -민간부문의 반부 패동향 -기업의 윤리경영 제 고방안	-주요 선진국의 반부패 현황 파악 -제도 도입 시 적정성 평가 -CPI제고를 위한 반부패정책 홍보 방안	-권익위 부패방지 업무의 독립적 수 행 방안 -부패방지 기능의 극대화 방안	-민관협력추진체 계 -반부패 청렴 운 동본부(가칭) 설 립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분담 및 일정 수립
연구수행 방법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 -선행연구 검토 -외국사례 검토 -전문가 조사	-문헌조사 -관련계획 검토 -전문가 조사 -간담회	-문헌조사 및 해 외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간담회	-전문가 자문 -간담회
결과물	-우리사회의 공정 성 수준 및 반 부패 수준 도출 -반부패정책에 대 한 효과성 도출 -외국의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도출	-권익위 부패방지 정책 발전방안 -기업윤리경영 제고 방안 도출 -특수법인, 직능단체, 전문가집단 등의 청 렴도 제고방안 도출	-해외 선진 사례 도출 -우리나라 반부 패정책 홍보방안	-권익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방안 도출 -부패방지 기능의 극대화 방안 도출	-부패방지 민간 파트너십 강화방 안 도출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일정 도출

II. 한국사회 부패 진단 : 우리사회의 반부패·청렴 환경 어떠한가?

1.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 '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한국 부패인식지수 2년 연속 하락으로 하락세 고정 우려

○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해보다 0.1점 하락, 178개국 가운데 39위(모리셔스와 공동 39위)

- 2008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점수 하락세는,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현실에 기인. 교육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사정기관의 부패 스캔들, 일부 대기업 총수 등 특권층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적용 등 각종 언론의 머리말기사 부패사건과 청렴의식의 둔화가 관행적 부패의 지속과 지능형 부패의 발생을 야기

- 올해 7월 발표된 '201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삼성 회장의 대통령 사면과 경영복귀, 검사 스폰서 사건 등 국내 부패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의구심 표시. 이미 국제사회가 현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주목, 점수 하락세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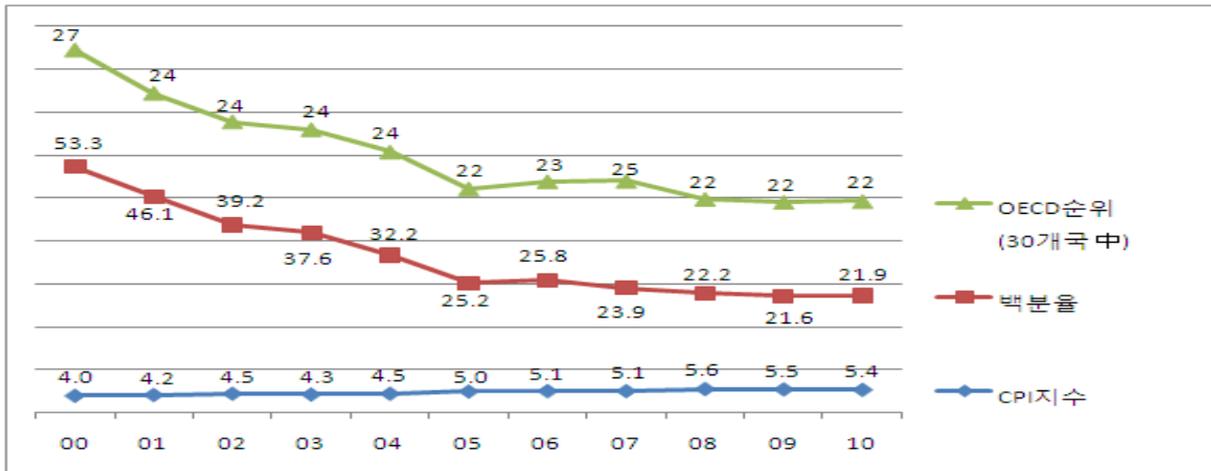
< 우리나라 CPI 변화 추세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점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순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백분율	65.9	50.0	65.4	50.6	50.5	53.3	46.1	39.2
OECD 순위	20/25	21/27	26/28	27/30	27/30	27/30	24/30	24/30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점수	4.3	4.5	5.0	5.1	5.1	5.6	5.5	5.4
순위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40/180	39/180	39/178
백분율	37.6	32.2	25.2	25.8	23.9	22.2	21.6	21.9
OECD 순위	24/30	24/30	22/30	23/30	25/30	22/30	22/30	22/30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관련 보도자료>

- 위의 부패인식지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4점대를 홍보하다가 2005년부터는 5점대를 홍보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백분율도 1995년의 65.9에서 2010년의 21.9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OECD순위도 전반적으로 20위 중 후반 권에서 20위 초반권으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10년간('00~'10)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관련 지표 변화 추이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관련 도표 재구성>

☞ CPI는 부패실태를 통한 부패의 정도가 아닌, 부패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CPI지수의 미미한 변화(2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0.1점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 인식 정도의 개선이 기대치에 비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반부패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좌표를 설정해야 함

※ 사후 단순한 징벌적 조치 중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전적 예방 중심 방향으로 반부패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3년 367건에서 2010년 1,43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공직자도 최근 3년간 증가하였지만('05년~'07년 2,294명→'08년~'10년 3,289명으로 43% 증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최근 3년간 8.2에서 8.44로 답보상태임을 고려할 때 사후적 처벌 장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반부패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기존의 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에 기초한 법제도적 접근 위주의 사후적 조치에서 반부패, 청렴에 대한 교육, 홍보, 문화운동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 조치로의 전환이 요구됨. 이는 청렴선진국의 반부패 인식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다는데 착안한 것임.

※ 청렴도가 높은 나라 중 홍콩의 경우 반부패 의식고취를 위해 유치원에서 초중고 까지 반부패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받게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어린나이의 학생일지라도 학교규율을 어길 시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등 반부패 인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음.

☞ 그러나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방안은 그 동안 비교적 미흡하였던 교육, 홍보, 문화운동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법제도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됨. 법제도의 공정한 적용은 또 다른 교육, 홍보의 효과를 가져오며 국민의 인식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임

□ 아시아 지역 부패 지표에 의하면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10년 대비 3 단계 하락

- TI의 부패인식지수의 원자료에 포함되는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PERC)에서 지난 2011년 3월 23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 부패 지표>(Asian Corruption Update)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10년 대비 3단계가 하락하였음. 특히, 민간분야는 최하위인 16위로 가장 심각한 수준임

<한국사회 부문별 부패수준>

구분	민간 분야	인·허가	검사 단속	조세	관세	경찰	군대	사법	주식 시장	소계	정 치 분 야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지방 정치	중앙 정치
점수	8.95	6.97	5.10	7.00	4.15	6.89	4.11	6.18	6.89	6.52	6.00	5.00	7.89	7.18
순위	16	8	6	9	6	9	5	8	12	8	7	5	8	9
전체 평균	6.39	6.41	5.85	5.46	5.45	5.79	5.51	5.30	5.16	5.78	6.16	6.02	6.48	6.14

자료 : Asian Corruption Update, 2011, PERC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 CPI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지역 부패지수에 의한 순위는 높지 않은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민간분야와 주식시장 분야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민간분야와 주식시장 분야의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시장이 부패의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일 수 있음

- 서구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금융사기나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과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미흡함.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차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함. 2011년 9월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로 16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재벌3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함. 한편,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자는 11년형, 4억달러 다단계 사기범에게는 25년 형을 선고함.(2011. 10. 17. 조선일보)

※ 공직중심의 반부패정책을 민간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반부패정책으로의 변화 모색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치체계의 내재화 및 제도적 지원 필요

1)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부패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식적 노력의 부재, 공공부문과 비교할 때 민간부문 부패교육에 대한 공백,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 의식 등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1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현 정부가 우리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정도에 대해 일반국민(47.2%), 여론선도층(43.0%)의 상당수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평가와 기업인의 상당수(60.9%)가 부패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부패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1%를 차지한 사례 그리고 법의 날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하고 81%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는 인식이 이를 방증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

-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0년부터 격년제로 발표하는 지수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인 부패지수(CPI)와 함께 한 국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주요 잣대로 사용
- 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뇌물공여지수를 공개하고 있음. '국가별 부패지수'가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뇌물공여지수는 기업, 특히 국제적 기업 등이 대상국의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까지 뇌물을 사용할 것인지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임

< 뇌물공여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99	'02	'06	'08
점 수	3.4	3.9	5.8	7.5
순위/전체대상국	18/19	18/21	21/30	14/22
백분율	94.7	85.7	70.0	63.6

<출처 : '06년 TI(국제 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BPI) 발표관련> 재구성

- 뇌물공여지수는 각종 공사나 계약을 따기 위해 외국 기업에 뇌물을 얼마나 자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로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08년 뇌물공여지수는 조사대상 22개국 중 14위임. OECD 14개국 중에서는 12위로 최하위권임
- 뇌물공여지수와 부패인식지수는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의 경우 홍콩은 7.6점으로 불과 0.1점 차이이며 미국은 8.1점으로 0.6점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뇌물공여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국 중 하위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뇌물공여지수는 뇌물제공자나 정치자금 제공자를 바탕으로 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기업활동 및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

☞ 상대가 내일 보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위험이나 비용을 감수하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임. 로버트 액슬로드(Robert, Axelrod, 1984)는 ‘미래의 그림자(the shadow of the future)’를 말하면서 행위주체의 행위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의 규범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어 공동체의 추구가치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함. 사회구성원들이 반부패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위험이나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 부패척결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미래의 그림자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국가 내에서(국민간, 공직자간) 혹은 국민과 공직자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규범을 세울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이 공동체의 사회규범으로 자리매김할 때 반부패·청렴 수준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음

※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동체의 사회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우리나라 부패실태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결과

- 우리나라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정부효율성 지수('11년)에서 22위를 차지했지만, 뇌물공여는 30위, 정부의 투명성은 26위를 차지
-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11년 까지의 정부 효율성과 투명성은 31위에서 22위, 34위에서 26위로 각각 많이 개선되었으나, 뇌물공여와 부패비리는 33위에서 30위로 상대적으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IMD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평가항목	'05	'06	'07	'08	'09	'10	'11
IMD 국가경쟁력	29/60	38/61	29/55	31/55	27/57	23/58	22/59
정부효율성	31	47	31	37	36	26	22
뇌물공여와 부패비리(설문)	33	33	29	30	29	29	30
정부의 투명성(설문)	34	38	34	35	37	27	26

<출처 : IMD(국가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연감 2011”>

-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4위로 2007년 이후 4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WEF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GCI 지수	'04	'05	'06	'07	'08	'09	'10	'11
종합경쟁력	4.90	5.07	5.13	5.4	5.3	5.0	4.93	5.0
	29/104	17/117	24/125	11/131	13/134	19/133	22/139	24/142
정부정책 수립의 투명성	-	-	-	34	44	100	111	128
정책결정의 정실주의	49	26	46	15	22	65	84	94
정부지출 낭비성	57	32	73	22	33	70	71	95
정부기능 관련뇌물 및 추가비용	수출입	50	51	46	-	-	-	-
	공공 서비스	42	49	59	-	-	-	-
	조세	63	61	59	-	-	-	-
	공공 계약	47	34	46	-	-	-	-
	정책 결정	57	-	49	-	-	-	-
재판	54	54	60	-	-	-	-	-

<출처 : 세계경제포럼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 OECD 법질서 준수 지수의 경우 OECD 가입 30개국 중 27위에 머무르고 있음

-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2005)의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도는 4.3점으로 OECD 평균지수인 5.4에 비해 많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들은 국부창출의 80%가 준법 GDP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는 4.3으로 OECD가입 30개국 중 27위의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
-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세부항목에는 교육과 금융의 선진화 수준, 법질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는데, 법질서 준수 수준은 사회자본과 0.83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국제경영개발원이나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서 부패관련 지표들은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에 머물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전체 경쟁력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부패 관련 지표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국가 경쟁력이 부패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부패문제의 해결이 곧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패문제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2. 반부패 · 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 평가

1) 국내 반부패실태 조사

□ 우리 사회 부패의 수준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절대적 수치로 볼 때 아직까지 부패의 정도가 심각함

○ 일반국민의 경우, 2009년과 비교할 때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이 5.0%(56.6%→51.6%)감소하는 등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이 3.5%(40.5%→37.0%)감소하여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하지만 부패의 수준에 대한 총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부패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의 한국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2010년 기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청소년들은 일반국민, 공무원 등 다른 계층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한국 사회 부패인식 추이 변화>

기관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우리사회 부패수준	일반국민	-	-	-	-	59.8	55.5	59.1	56.6	51.6
	청소년	-	-	-	78.1	73.1	75.8	-	76.8	74.4
	공무원	-	-	-	-	16.3	16.4	16.0	-	10.5
	기업인	-	-	-	-	37.0	27.8	34.9	34.0	39.0
	외국인	-	-	-	-	-	-	-	40.5	37.0
	여론선도층	-	-	-	-	-	-	40.8	40.6	51.7
공무원 부패수준	일반국민	59.9	64.6	59.0	60.8	55.9	57.2	57.1	56.6	54.1
	공무원	5.4	7.7	3.9	2.4	2.6	4.3	3.1	-	2.4
	기업인	-	-	26.0	-	32.8	33.3	40.9	32.3	40.9
	외국인	56.7	54.5	50.5	45.5	36.9	45.5	50.5	35.0	38.0
	여론선도층	-	-	-	-	-	-	34.1	36.8	57.1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10. 1>

- 기업의 경우,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이나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하여 2008년에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가 2009년에 잠시 감소하였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여 인식이 완만히 개선된 다른 계층과는 다르게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연도별 공공부문 부정부패 인식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기업에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기업인들이 인식하고 있음
 - 건설관련 기업인들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등으로 건설감리,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부패가 다른 부문에 비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국가에서도 공공부문의 반부패를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²⁾
 - 인터뷰 결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기업들의 청렴에 대한 자체 인식수준이 일반국민, 공무원계층등 보다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현 사회의 부패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음³⁾
 - 민간부문의 청렴의식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는 사례로서 UNGC의 글로벌 콤팩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⁴⁾이며 특히 주요기업(100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각 기업에 맞는 윤리경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체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 LG그룹의 경우, 내부신고제도인 ‘신문고’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징계결과는 임직원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 ※ 포스코의 경우에도 기업윤리 및 공정거래상담제도가 있으며 신고보상제도와 사이버신고제도를 자체운영 중임

2) 기업인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함

3) 기업인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자체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하는 등 민간부문의 청렴의식은 향상되어가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부패는 개선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특히, 공공부문도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음이 보이지만 공공부문에서 인사,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문에서는 아직 경직된 관료부의로부터 개화가 덜 된 상태이며, 건설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4)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중 하나가 반부패에 관련된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으로 글로벌 콤팩트 가입의 증가는 민간부문의 반부패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사회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의한 세력의 다극화임. 과거에는 언론도 비교적 소수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전자언론매체를 대하게 되며, 부패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급속한 증가는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옴. 또한 공직사회도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감소와 분권화의 영향으로 상위직과 하위직 모두에게 갑·을 관계의 부담을 갖고 있으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의 시각에서 보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곳이 그 만큼 증가했다고 보며 그 만큼 부패의 개연성이 커졌다고 느끼고 있음

-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것이 제일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같이 부패에 대하여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의 엄정한 벌금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이나 공직의 경우에도 직원의 채용이나 관리 시에도 인성(人性)을 중시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건설분야의 경우 턴키방식의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5>

구분	부정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지수	
	심각	심각하지 않음
2005	71.0	29.0
2006	64.8	35.2
2007	69.8	30.2
2008	60.9	39.1
2009	42.1	57.9
2010	51.2	48.8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조사 결과, '10.12>

- 위의 표에서와 같이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보는 인식은 2005년의 71.0에서 2010년의 51.2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5)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한국행정연구원, ‘10)’에서는 기업체(600명), 자영업자(400명)를 대상으로 부정부패에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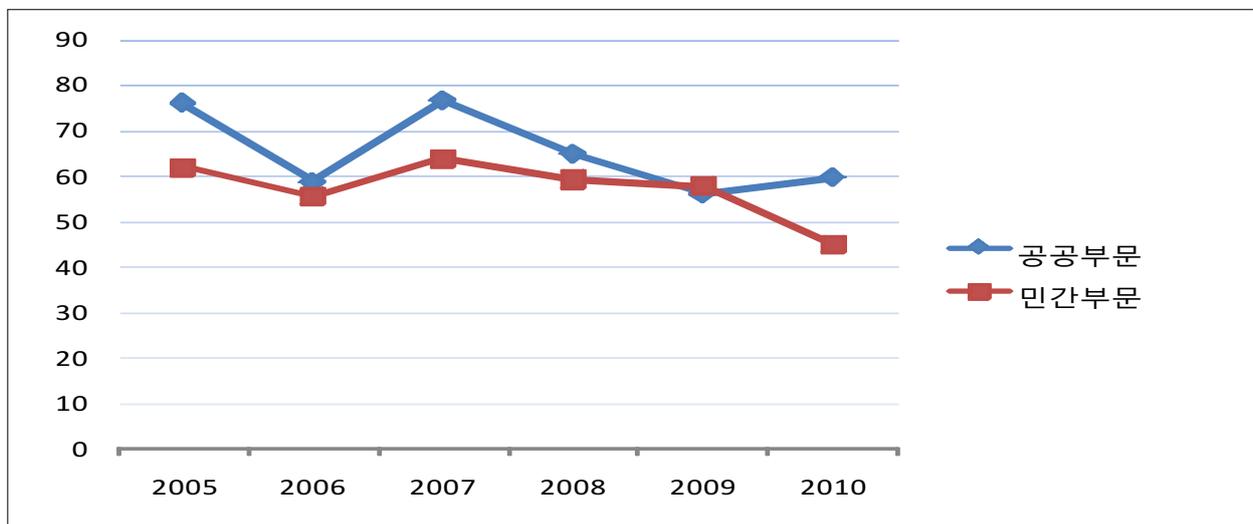
- 부문별로는 공공, 민간부문 공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 2007년과 201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나빠졌으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2007년도에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2010년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부패는 향상되었으나 공공부문의 부패 심각성은 전년도에 비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부문별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구분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지수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지수	
	심각	심각하지 않음	심각	심각하지 않음
2005	75.9	24.1	61.9	38.1
2006	58.6	41.1	55.4	44.6
2007	76.6	23.4	63.8	36.2
2008	64.8	35.2	59.3	40.7
2009	55.9	44.1	57.8	42.2
2010	59.6	40.4	44.9	55.1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조사 결과, '10.12>

<공공-민간부문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정도>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조사 결과 재구성, '10.12>

☞ 우리사회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총량적 측면에서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의 <한국 사회 부패인식 추이 변화>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다른 대상에 비해 부패인식 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예전부터 실시해온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청소년들에게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부패에 관련된 여러 원인의 진단과 함께 우리 사회의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 반부패·청렴 가치가 내재화 될 수 있는 의식개혁 전략의 도입을 통해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변화 필요

□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간의 인식의 괴리 심각

- 일반국민과 공직자간의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부패인식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부패했다고 응답했지만 공직자의 경우 응답자의 10.5%만이 부패했다고 인식
- 중요한 것은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응답자의 54.1%가 부패했다고 응답했지만 공직자의 경우 응답자의 2.4%만이 부패했다고 응답하여 공직자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심각함

☞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처한 상황이나 인식적 한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부패의 정도의 공공부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이 아직까지 미약함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또는 공직자의 윤리의식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음

※ 반부패·청렴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

□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 및 외국인의 경우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부패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

○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다수가 응답한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부패의 관용적인 사회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부패를 묵인하거나 나에게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하는 인식은 부패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부패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발생하고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청렴선진국의 무관용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왜곡된 온정주의 문화의 결과일 수 있지만, 앞서 주가조작이나 금융사기, 내부자거래 등에서 보았듯이 가진 자들의 화이트칼라 범죄나 부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응일 수 있음.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기업인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음

<우리 사회 부패발생의 원인>

항 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9.4	13.6	24.3	13.5
법/제도 · 불합리한 행정규제	19.1	9.4	21.1	18.0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6.4	38.9	13.0	18.0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15.7	18.6	28.9	33.0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5.3	16.6	10.0	13.0

<출처 : '10.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와 '연고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이 필요

- 부패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반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공직자의 경우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를 꼽고 있음
 - 일반국민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강화를 부패문제 해결의 최우선과제로 보는 것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재벌이나 사회지도층, 권력층 등의 부패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위장전입 등과 같은 동일한 위법사항도 청문회 등에 나오는 고위층들은 거의 전부 적발처벌 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4년간 국민들이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무려 6,894명에 달하여 연평균 1,700여명이 처벌 받았음(2011. 8. 4. 노컷뉴스)
 - 일반국민들은 가진 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금융사기나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변칙적 재산상속, 세금포탈 등의 범죄와 부패에 관하여 더욱 강력한 적발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것 이외에 이것이 서민들의 사기나 정서, 정부 신뢰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임

6) 앞서 언급했던 특정 권력층에 대한 사면권의 행사로 인한 부패척결 의지 및 실천에 대한 낮은 인식의 확산이나 '10년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36명 중 주의·경고, 기타(인사조치·훈계)가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항 목(대상 : 일반국민)	'09년	'10년	전년대비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39.7	38.4	△1.3%p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18.1	17.1	△1.0%p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3.0	13.2	+0.2%p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3.4	9.9	△3.5%p
투명한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7.4	9.6	+2.2%p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척결	6.8	7.2	+0.4%p
기타	0.6	2.8	+2.2%p
없음/모름	0.9	1.9	+1.0%p
항 목(대상 : 공무원)	'08년	'10년	전년대비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척결	19.1	18.8	△0.3%p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8.7	18.2	△0.5%p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13.6	16.4	+2.8%p
투명한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14.3	15.5	+1.2%p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19.0	14.6	△4.4%p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사전 예방활동	14.0	13.1	△0.9%p
기타	0.7	1.6	+0.9%p
없음/모름	0.6	1.9	+1.3%p

<출처 : '10.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부패문제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부패에 대한 관용적 사회 문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부패에 대한 적발 및 처벌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공직자의 경우 부패발생의 원인에 대해 정치과정에서의 부패유발구조 및 부패에 대한 관용적 사회문화를 다수가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고온정주의 사회 문화 척결과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원인과 그 해결방안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음

<외국의 사례>

-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특별사면 단행 시 부패와 테러혐의 수감자에 대한 감형대상에서 제외(연합뉴스, 2011.9.16)
- 프랑스의 경우, 공직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국내 사례>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평균 90.6%이지만 뇌물죄의 경우 77.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부패정책의 방향을 사후적·처벌 중심에서 사전적·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제시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패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의 반부패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의 한국사회 부패환경 및 부패원인 평가

□ 공직자와 일반 국민과의 부패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 <한국 사회 부패인식 추이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직자의 일반 국민과의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
 -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혹은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것도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인식은 일반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둔화시키며 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반부패·청렴의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이 공직자 개인, 그리고 공직자가 속한 조직문화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부패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공직사회 외부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기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즉 부패의 개연성이나 무엇이, 어느 정도까지 부패인지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공직 입문 전 공직자들도 일반국민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조직 문화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공부문의 부패발생 개연성이 있거나 이를 묵인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개인의 일탈행위보다 인식과 가치관의 문제 심각

- 우리 사회의 경우 권위주의적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영향이 부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7) Hofstede(2005)가 측정한 권력거리지수(권위주의 문화 측정 대응변수)를 살펴보면 덴마크 18, 핀란드 33, 미국 40, 한국 60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CPI지수

-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문화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유지되어오고 있음. 특히 민간분야보다 공직분야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관계나 상하관계로 인하여 토론문화가 미흡하거나 다른 의견의 개선이나 자유로운 비판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도 발견되며, 또한 사회의 가치체계가 다양하지 못한데서도 서열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아직 잔존함을 파악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국제적 평가인 CPI점수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한국사회의 가치관의 문제, 문화의 문제, 사회시스템이 서구사회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법적 처벌의 사항으로 간주하여 조직과는 별개로 개인의 도덕이나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즉, 조직적인 부패의 문제를 거버넌스 차원의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반부패청렴 가치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부패발생에 대한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조직 또한 책임 질 수 있는 제도의 확립 필요(부패 발생 시 기관경고제도, 부패를 밝혀 이를 스스로 알리고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부패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처벌 제도).

※ 부패발생에 대한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조직 또한 책임 질 수 있는 제도의 확립 필요(부패 발생 시 기관경고제도, 부패를 밝혀 이를 스스로 알리고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부패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처벌 제도)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부패를 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묵인하는 사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도 부패행위를 조장한 사람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 처벌

-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부패가 많이 사라진 것을 체감할 수 있지만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 사회적 문화의 개선,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가 높은 18개국(아이슬란드, 스위스, 벨기에를 제외)평균이 38.89임을 감안하면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부패방지법」의 절차법으로서의 한계

- 부패 범죄에 관해서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용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앞서 지적하였듯이 부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법정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결을 받아도 집행유예나 사면 등으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많은 일반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평균 90.6%이지만 뇌물죄의 경우 77.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 반부패제도 부족한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반부패제도의 한계와 향후 반부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고찰 필요
 -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방지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면 부패문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형태나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윤리강령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선에 그치고 있음. 즉 「부패방지법」이 실천법이 아닌 절차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반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과 소통의 한계

-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미비
 -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 관련된 거버넌스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시민사회·학계의 공통적 지적임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경제계, 공공부문 등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반부패 문제에 대한 정보의 소통 부족

- 언론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에 대해 그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언론이 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부패방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언론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토해양부 연찬회 사건은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까지 사과를 했지만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주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정보 부족

※ CPI 9.3점으로 1위인 덴마크의 경우 언론은 '고발기자'라는 특수 분야 기자를 양성해 부패를 고발하고 언론에 의해 밝혀진 부패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예외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한 뒤 이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음

☞ 반부패 문제에 있어서 민관협력 체계 및 소통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왔던 이슈로 이에 대해 열린 자세가 필요

※ 반부패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므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반부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 반부패문제(부패사건, 부패사건의 결과 등)에 대한 지속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 활성화 필요

□ 공공 재화, 공적 재원에 대한 모럴해저드 역시 시민사회에 부패를 만연케 하고 선량한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우리사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문제 해결에 일정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재화 및 공적 재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모럴해저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적연금의 부정수급 문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은 필요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선량한 다른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 및 시민사회 내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뇌물이나 기타 부패에 투입되는 자금은 개인의 사적인 자금이기보다는 대부분 공공의 자금인 경우가 많은데(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분야가 아니라도 민간분야에서도 주식은 일반 주주의 것으로 공적 성격이 있는 것임), 이를 마치 개인의 것으로 여기고,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처럼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자금과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러한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요구됨

☞ 부패는 '받는 부패'뿐만 아니라 '주는 부패'의 쌍방 책임이므로 현재 「부패방지법」 상의 공직자에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는 부패의 개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및 의식전환 전략이 필요함

-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시민단체인 국제자연보호회(Nature Conservancy)는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환경 부담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회사와 자문위원회의 고위 임원 위에 군림
- 자연보호회는 수백만 달러를 회사 내부인들과 거래하였고, 최고경영자의 수입 비리를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회사 경영자에게 1백5십만 달러의 대출을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허위 적용함으로써 임원들의 사적인 은행 역할을 함
- 자연보호회는 또 다른 도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사용하였고, 동물의 서식장소 아래에 석유개발을 위한 땅을 채굴, 결과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던 새들마저 죽게 만듦

※ 국제자연보호회는 반복적으로 관광 명소들을 사들였고, 그 땅들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선포 후 다시 수탁자(trustee)와 후원자에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되파는 수법을 사용, 많은 구매자들은 그 명소를 개발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국제자연보호회에 기부를 하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음

☞ 국제자연보호회는 권위를 이용하여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행동이 저지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함

□ 감사기관, 감시기관 공직자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제도 부족

- 부패행위자를 처벌하고 부패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기관 및 감사기관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
 - 감사기관의 적절한 부패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부패예방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특히 사정기관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패예방 및 처벌에 치명적임. 모든 기관, 특히 공공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부패가 사라질 수 있는데 사정기관 및 그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요구됨

☞ 감사기관 혹은 감찰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기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청렴 음부즈만 제도나 시민감사위원회 등의 제도화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장치 마련 전략 필요

□ 행정부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인한 확산 미비

- 반부패확산을 위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 제정 및 적용, 집행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및 소통이 필요
 - 입법부와 사법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가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의 경우 청렴 플랫폼(학계, 언론계)의 지원을 받아 도입을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반부패 정책 조정 기능의 확대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형태가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 조정기능의 주체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인 반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여러 기관이 공직윤리 관련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상호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며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부패방지와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각기 개별적인 지위에서 특별한 협의나 조정 과정 없이 소관업무 수행하며 비효율 양산의 소지가 있음

○ 부패관리와 공직윤리 관리기능을 일원화하여 공공부문의 부패, 공직윤리 관리기능의 효율성 확보가 절실

※ 지능화되는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

※ 반부패 정책 조정 기능의 상설화나 부패방지 기능의 통합 등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및 반부패 정책 조정 기능의 확대 강화 필요

3. 한국사회 부패의 원인(사례를 중심으로)

1) 부패발생에 대한 시각

□ 부정부패의 영향요인

- 부패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부정부패에 대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와 부정 부패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
 - 전자의 문제는 내생적 부패모형(endogenous corruption model), 후자의 문제는 외생적 부패 모형(exogenous corruption model)임
 - 내생적 부정부패모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떠한 요인들이 부정부패와 연관이 높은지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0개국의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청렴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부패 친화적 연고온정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청렴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조은경 외, 2006)
 - 부패 친화적 연고온정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CPI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즉 권력거리지수는 높을수록 부정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며 개인거리지수는 낮을수록 개인 간의 연고온정주의를 중시하고 규칙을 회피하는 등 정실주의의 심화를 가져와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커짐
 - 한국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과 비교할 때 권력거리지수가 매우 높으며 개인거리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렴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권력거리지수 및 개인거리지수와 비교해보면 부패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부패발생 요인으로 학자들이 제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제도적·정책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공공 윤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인에 대해 부패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 부패의 원인

□ 부패는 개인적 일탈의 차원에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 일탈의 문제와 더불어 부패 발생의 제도적 정책적 요인에 대한 이해 필요(제도적·정책적 요인)

○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로 인한 부패발생

- 행정규제로 인한 인·허가 단속과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세금'의 지불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며 행정절차상의 불투명성과 정보공개에의 제한성으로 인한 부패발생 여지가 있음

□ 모호한 법 규정과 공개되지 않는 행정절차가 부정부패

○ 법령이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면 민원인들은 법을 지키기보다 해석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음.

(참고 사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김모씨(45)는 올해 초 재건축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구청에 갔다.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으려고 미리 관련규정을 꼼꼼히 읽고 서류를 갖춰 갔지만 담당공무원은 읽어보지도 않고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 공무원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김씨는 조용히 물러났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다. “재건축단지 주변도로를 전면 재포장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보완하십시오.”

김씨는 “근거가 무엇이나”고 따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말만 들었다. 결국 김씨는 세 차례나 보완지시를 받았고 그때마다 서류를 다시 작성한 끝에 닷달이 지난 최근야 겨우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김씨는 “규정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면 서너 달을 넘기는 것은 예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이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법 규정이 애매해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일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99.05.20)

※ 민원인에게 공개되는 행정정보가 극히 제한 되어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행정업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대등하고 공정한 일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부패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무감각하게 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부패는 단순히 부패로서 존재하지 않고 이를 강요하는 문화가 존재(문화적 요인)

○ 한국의 행정문화적 전통은 연고·온정주의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연고·온정주의 문화는 서구사회의 사회자본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같은 공동체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연고·온정주의가 부정적으로 파생될 경우 집단의 사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함

※ 사회자본을 크게 교량형 사회자본과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고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교량형 사회자본의 속성보다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연고·온정주의를 통한 효율적 합리적 선택보다는 비효율적 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정주, 2008)

- 이로 인하여 인사치레라고 하는 관습적 행위가 부패행위와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를 일상적인 예의로 생각하는 문화가 만연

- 청탁과 접대문화는 부패를 야기하는 관계 고리로 작용되고 공동체 문화 속에서 부탁과 이에 대한 답례는 삶의 일부로서 여겨지므로 인하여 토착비리의 발생을 유발하고 있음

- 미국 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자 거래를 비롯한, 주가조작·회계분식 등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추세임
 -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008년 9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등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올린 헤지펀드 설립자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11년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0만 달러(115억 원 상당), 재산 5380만 달러 몰수명령을 내림
 - 2009년엔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는 71세 고령임에도 법정 최고형인 150년 징역형을 선고. 다른 다단계 금융 사기범 아가페 머천트 어드밴스의 코스모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1억7900만 달러(2069억 원) 배상 판결
- ☞ 미국의 경우 법적 처벌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처벌되고 있음. 또한 해당 죄의 종류, 피의자의 신분등에 비례하여 처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와는 달리 온정주의·연고주의로 인한 범법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처벌은 법에 명시된 처벌에 못 미치는 미약한 수준임.
 -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등으로 기소된 태광실업 전 회장의 경우 1심은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으로 형을 낮추었음
(동아일보, '11.10.14)
- ☞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에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에 명시된 처벌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중 하나는 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가 법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위 사례는 미국의 경우와 대비되는 사례로써 부패에 대한 대응이 청렴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신지역주의 문화로 인한 부정부패의 팽배

- 지방토호세력 중심의 학연 및 혈연 등 연고주의가 확산되면서 지방언론과 시민단체, 지식인들이 상호비판과 견제보다는 거대한 담합구조를 이루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지방부패의 네트워크화로 인해 지방정책의 정치화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은 저하되고 지방자치행정이 과거보다 토착적이고 고질적인 지역사회의 부조리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범법으로 인한 기소건수는 1기(1995~98년)에 23명이던 단체장 기소는 2기(1998~2002년)에 59명, 3기(2002~06년)에 78명, 4기(2006~10년)에 11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며 이러한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 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 홍콩의 "부패예방처"는 공공기관의 업무절차 및 제도개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언을 실시하며, "지역사회관계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민교육, 드라마·광고 등을 활용한 시민의 지지 확보에 주력함

☞ 지역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아주 작은 지역에서부터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권위주의 의식의 팽배

- 한국 관료들의 권위주의 성격과 강도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보다 1.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볼 때(Hofstede, 2005) 이러한 행정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부패의 중요한 토양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행정이 지닌 특성들, 예를 들면 권위주의, 기관 편의적 법규행정, 형식적 능률주의, 관존민비의 행정문화와 행태, 관직만능과 행정부패 등은 모두가 관치행정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음

○ 직원 '업무보고 받겠다'며 룸살롱 접대 받은 지식경제부 적발(동아일보, 11. 08. 04)

- 지난 8월 지식경제부 직원 10여명은 지방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과 방사선편기물 직원들을 서울로 불러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고 식사 후 룸살롱에서 술대접과 함께 성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뇌물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임

※ 스웨덴의 경우 교통신호위반사항을 묵인해준 대가로 2유료를 받은 경찰에게 5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홍콩의 고위공무원이 비행기 표를 받은 혐의가 들어나자 공무원직을 사퇴함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존재하지 않음.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짐

※ 핀란드에서는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 업무 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요도 뇌물로 간주함

☞ 싱가포르의 리관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사람에 대한 평가와 조직에 대한 평가의 불일치로 인한 부패의 악순환 고리 재생산(공공윤리적 요인)

○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행정윤리 혹은 공직윤리의 훼손가능성

-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부문에서도 기업적 요소가 반영되는 인센티브제도, 성과보수제 등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공공관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행정윤리의 훼손을 야기하는데 신공공관리가 직접적으로 행정윤리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보다는 신공공관리론의 강조로 인하여 비경제적 영역인 윤리 혹은 가치판단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음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매각 입찰에 사모펀드가 참여해 논란

-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로 민영화 결정이 난 뒤 세 번째 매각 공고에 지난달 28일 두 곳이 제안서를 냈고 이 중 사모펀드 2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됨
- 지경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들의 연구소와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독성평가 연구의 공익적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연구원들은 주장함

※ “독성(안전성)평가는 기업이나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분석돼야 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 “지경부가 성과주의에 빠져서 결국 실현되지도 않을 민영화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경향신문 '11. 7. 8)

- 행정안전부는 서울메트로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평가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것과 관련 서울시에 자체감사를 요청함(한국경제, 11. 07. 25)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공기업평가가 성과급과 직결되고, 지난해 가장 낮은 저수를 받은 서울메트로의 역장이 직위 해제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평가 규정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이 있음을 다시 공지하였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 공기업평가가 성과급과 직결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한 공직윤리가 훼손된 사건이었음

○ 개인의 윤리나 동기보다는 조직윤리의 강조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 정부조직은 전통적으로 합리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윤리보다 조직윤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인하여 개인의 윤리나 동기와 상관없이 조직의 충성심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패발생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내부고발자의 대표적 예인 이문옥 감사관의 사례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등에서 조직윤리가 건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1990년 이후 대표적인 내부고발사건의 36건 처리상황을 살펴본 결과, 비리 혐의자가 유죄판결(선고유예)을 받은 것은 12건인 반면, 내부고발자 45명 가운데 20명이 공익신고 당시 파면·해임됨
- ※ **개인의 윤리의식을 조직윤리가 뒷받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 1990년 이후 대표적인 내부고발사건의 36건 처리상황을 살펴본 결과, 비리 혐의자가 유죄판결(선고유예)을 받은 것은 12건인 반면, 내부고발자 45명 가운데 20명이 공익

신고 당시 파면·해임됨

※ 개인의 윤리의식을 조직윤리가 뒷받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해외 사례>

□ 독일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청렴선진국들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함

○ 독일에서는 부패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익명의 제보자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음.

○ 또한 독일철도회사는 두 명의 변호사를 옴부즈맨으로 고용하였고,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변호사를 상담자로 고용하는 등 '외부인'에게 조직내부의 부패를 고백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제보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안심하고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싱가포르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우리나라 사례>

□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법령의 법적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의문제기

○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부패방지법」 제64조(신변보호등), 제65조(협조자보호)등과 같이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위계질서가 철저한 한국 사회에서 행해질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 법적 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어 왔음

□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 법적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내부고발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30 시행)”이 제정됨

※ 조직안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 많아 내부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더불어 국민에게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법의 집행을 확실히 해야 함

□ 부패 발생에 촉진제 역할을 하는 사회 시스템(환경적 요인)

-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인 소득 창출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부패의 가능성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상황은 특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천민자본주의적인 속성과 부정적 지대추구(rent-seeking)의 관행에 의하여 부패행위가 보다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소득창출에 대한 사례

-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공무원이 한 사업체에게 김 한 박스를 선물로 보냄.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사업체사장이 전화를 하니 김 공장을 하는데 잘 팔리지 않아 소화하는 차원이라며 말했고, 사업체는 거절할 수 없어 수십만 원어치의 김을 팔아줌
- 부서 회식자리에 별 부담 갖지 말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에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 참석하자 회식비를 전부 지불하라는 압력에 회식비 전부를 지불함
- 뉴질랜드 공직사회가 깨끗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정직과 정치적 중립성,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란트 리델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 국장(Grant Liddell, Director of Serious Fraud Office)은 말함
- 뉴질랜드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 이사장이 당시 뉴질랜드 총리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호주 전직 총리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회사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음.
- 방송국 이사장이 정치인들과 식사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일 뿐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비는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논리로써 뉴질랜드의 투명성이 높은 사회임을 보여줌

☞ 최근 5년간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678건(-27.6%증가), 2007년 679건(전년대비 0.1% 증가) 수준이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2008년 764건(전년대비 12.5% 증가), 2009년 1,089건(전년대비 42.5% 증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특히, 금품향응 등 수수건수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스웨덴에서는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일반기업 및 민간의 경우 뇌물을 주고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하나 공무원의 경우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 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바로 범죄로 기소 가능 할 수 있는 등 일반인과 비교하여 처벌강도가 높음.

※ 뉴질랜드의 경우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으로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

III. 전략수립을 위한 목표 및 방향 : 반부패·청렴 확산의 방법은 무엇인가?

1. 반부패·청렴 마스터플랜의 성공요인

□ G20 세계 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된 이슈는 반부패의 문제임

- 국가 청렴도 제고는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소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으며 , UN, OECD, APEC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협약체결을 통한 반부패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G20 세계 정상회의에서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이행확산을 위한 각국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G20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전략으로 부패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행동계획에 의해 각 국가들의 이행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음
 - 행동계획의 주요내용은 1. UN 반부패협약 가입, 비준 및 완전한 이행, 2. 국제뇌물의 범죄화, OECD 뇌물방지협약 참여, 3.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수익 세탁방지, 4.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에 관한 협력체제 고려, 5. 사법공조 등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6. 해외은닉자산 회복 지원, 7.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이행, 8. 부패방지기구 및 집행당국의 효과적 기능강화 및 독립성 보장, 9. 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증진 및 부패예방, 10. 민간부문의 국제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 이행체계를 공고히 하는 세계적 변화 속에서 부패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미룬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됨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문제는 한 국가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 국제기구의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의 유무,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부패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국가경쟁력의 한 요인임을 방증하고 있음

□ 부패방지 관련 국내적 여건

○ 부패방지 기반의 구축

-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부패방지위원회의 신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제정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음

○ 부패방지정책의 지속적 추진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직의 명칭 변화는 있었지만 부패방지기구가 존재함으로써 부패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부패방지정책의 추진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반부패 정책의 공고화 기회

- 국제기구 등의 반부패이행계획의 협력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부패정책의 사회적 확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부패 · 청렴 마스터플랜의 성공요인

- 부패척결을 위한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및 많은 학자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부패방지계획의 수립,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반부패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전사회적 반부패 문화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국가적 부패방지계획의 수립

- 부패방지계획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의 부패척결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 부패방지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부패방지계획은 현실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부패방지를 통해 구현될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현실적합성과 실천가능성을 담보해야 함

○ 최고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

-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은 최고결정자의 의지와 추진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 최고결정자의 강력한 의지가 부패척결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음

○ 반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 UN반부패협약이나 G20 반부패행동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척결의 문제는 공공부문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부패척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때 부패척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사회적 반부패문화 확산

- 부패문제에 둔감한 사회적 분위기나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부패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교육, 의식전환전략 등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각 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대별 반부패 정책 사례 분석

1) 8~9점대 국가 : 뉴질랜드(9.3), 덴마크(9.3), 스웨덴(9.2), 싱가포르(9.3), 핀란드(9.2), 홍콩(8.4)

□ 뉴질랜드 (CPI 지수⁸⁾ : 9.3 / 1위)

- 2009년 10월 타이토 필립 전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발급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전직의원이 뇌물 수수로 유죄를 받은 것은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짐
- 자연환경보호부 공무원이 두 유령회사를 만들어 실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대금으로 NZ \$180,000(한화 약 1억 8천만 원)를 자연환경보호부에 청구하고 이의 지급을 승인, 배심평결 전에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2001년 3월에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 산업은행 이사가 당초 사업설명서를 제공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부정직하게 획득하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부터 2001년 5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부패인식지수 1위인 나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던 데는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 SFO*가 중심이 되어 부패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SFO(Serious Fraud Office, 중대비리조사청) :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부패사건 규모가 큰 사건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기관으로 정부와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므로 중대부정사건 수사국에 대한 국민들의 무한 신뢰를 받으며, 뉴질랜드를 반부패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 중대비리조사청은 ▶정보수집 및 수사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의 제척 ▶강제진술 청취 ▶중대비리조사청법상 위반행위 제재 ▶특수비리제보 접수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곳의 직원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신분증의 제시만으로 비리혐의자 뿐만 아니라,
- 제3자, 민간기관이라 할지라도 조사요원의 자료수집, 증거 및 증언확보 등 비리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첩보나 신고, 고발은 물론 경찰, 회계감사기관, 세무담당기관에서 요청 시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8) 기준년도 : 2010년 발표자료 기준

□ 덴마크 (CPI 지수 : 9.3 / 1위)

- 정치인의 부정부패는 있을 수도 없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덴마크의 클린 정치
 - 북유럽의 반부패 선진국들은 그 바탕에 사회문화적으로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 덴마크의 지하철역에는 개찰구나 검표원이 없으며 승차권을 사는 일은 오로지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짐
-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고 그 자리에는 수십 대의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임
- 언론은 '고발기자'라는 특수분야 기사를 양성해 부패를 고발하고 언론에 의해 밝혀진 부패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예외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한 뒤 이를 언론에 공표

□ 스웨덴 (CPI 지수 : 9.2 / 4위)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최초로 성문화 함. 의회·행정·사법 자료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
 - 정보자유권이 국민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옴부즈맨 제도는 이후 200여 년간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며 사회 투명성을 확립
 - 의회, 행정, 사법 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편지나 관련기록도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해야 함
- 정보공개에 전통이 뿌리를 내리면서, 스웨덴은 유럽에서 탐사보도 수준이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사회보험청의 확실한 사회 부패 청산에 힘을 더해주고 있음

- 비리와 부정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스웨덴 사회 자체적으로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인 셈임

□ 싱가포르 (CPI 지수 : 9.3 / 1위)

-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되, 추징할 수 없는 액수는 징역형으로 대체
 - 최고 5년의 징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억 원)에 달함
- 건설 분야를 보면 공공입찰에서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적절한 가격에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거나 덤핑경쟁을 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며, 이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
- 3부 2팀 체제로 운영하는 부패행위조사국을 통해 공무원의 채무한도 법정화
 - 부패행위조사국은 수사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부패수사가 가능하며, 집행부, 집행지원부, 법인 관계부, 계획 및 사업팀, 예방 및 심사 팀으로 구성
 - 모든 공직자에게 무담보 채무가 월 급여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서약을 받음
- 부패행위 수사, 부패행위 관련 제도적 개선, 공무원 재산 공개
 - (부패행위 수사)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부패행위도 수사의 대상임. 사회 전반의 부패관련 사건 담당
 - (부패관련 제도 개선) 사회적 부조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보완
 - (공무원 재산 공개)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매년 갱신함. 허위공개외 경우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처벌

○ 24시간 부패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수사체계 확립

- 24시간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해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갖춰 내부자 고소·고발이나 신고에 의한 수사 착수

○ 뇌물수수 사전 교육, 기업대상 교육 및 홍보

- 공무원들은 매년 뇌물 불수수 선언을 하고 선물 또는 향응 수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공무원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

□ 핀란드 (CPI 지수 : 9.2 / 4위)

○ 청렴에 앞장서는 사회지도층의 청렴의식

- 핀란드 국회 앞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자주 볼 수 있음
- 핀란드에서 부패한 정치인은 곧 영원한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
- 그만큼 부패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며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의 수입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임

* '데이파인'(Day Fine)이라 하는 이 시스템은 월 소득의 1/60을 데이파인으로 정해 위법 사항의 경중에 따라 날 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

※ 노키아의 부회장이 제한속도를 어겨 150만유로, 한화로 1억 8천만 원의 벌금 납부

○ 「정부활동 공개법」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 제도 시행

- 핀란드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활동 공개법」에 따라 정부가 관장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 가능
- 중앙-지방정부 등 각 행정당국뿐 아니라 공공기관, 국영기업과 공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의 정보도 공개 대상이며,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국민은 자신의 열람 목적을 밝힐 필요가 없음

-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해당기관은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달 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함
- 핀란드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확립되었으며, 정보공개는 핀란드 헌법의 대원칙임
- 주식거래 관련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납세내역 정보 등 부정, 비리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

○ 의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실시간감시체계 구축

- 핀란드의 옴부즈만은 의회형 옴부즈만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유형
-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의회의 행정부, 사법부 견제가 단순히 정기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시간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이나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짐

○ 참조인 제도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부패요인 차단

- 참조인 제도는 핀란드 행정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제도임. 참조인은 관할 사항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최종안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고위직이나 정치인 등의 정책 결정자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자의 의견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참조인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책 결정자는 참조인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사안을 이중으로 검토한다는 데 의미

○ 사정감독원 운영을 통해 부정부패 억제 및 시정조치

- 사정감독원은 1809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핀란드의 독특한 반부패기구
- 오랜 전통의 독립된 사정기구로 사회구조적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최고의 법집행기구로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대통령에 대한 적법성까지 감독

- 변호사들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민원, 형량의 적정성 여부 등도 조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패나 불합리한 행정 등에 대해 단순한 권고에 그치는 것과 달리 핀란드의 사정감독원은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차이점이 있음**

○ 정당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 핀란드 정부는 1967년 제정한 「선거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지급되는 일정한 액수 외의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민간자금의 선거비용으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선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선거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공무원 신분보장과 처벌

- 핀란드는 공직자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어 소속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남
- 공무원의 경력은 높고 평가받고 장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종신직이 보장되며 대기업 수준의 보수를 지급
- 부패공무원을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액수와 상관없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즉각 해임되고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됨

□ 홍콩 (CPI 지수 : 8.4 / 13위)

○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반부패 문화

- 어릴 때부터 반부패 의식고취를 위해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반부패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받아야 하고,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드라마를 제작, 반부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펼치고 있음
- 사회 부패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더욱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은 공직자를 감시하는 반부패 시민들을 더 많이 양성해내는 것임을 홍콩의 반부패 성공신화가 말해주고 있음
- 홍콩이 청렴 국가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첫번째 비결은 바로 강력한 수사권임. 부패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은 구속시킬 수 있음

※ 홍콩의 반부패 성공비결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염정공서의 연간 운영비는 7천만달러, 홍콩시민 1인당 미화 10달러를 내는 셈임. 한해 부패신고 약 250건, 기소에 따른 유죄율 약 80%에 달함

○ 3국 체제로 운영되는 염정공서 구축

- 염정공서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별도기관으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구이며, 집행국, 부패방지국, 공공관계국 등 총 3개의 기관으로 구성
-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담당하는 집행국은 부패와 관련된 위반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는 주민제보를 받거나 직권에 의해 개시됨
- 공공부문의 업무방식과 절차를 검토하여 부패와 연루될 수 있는 제도를 수정, 삭제하는 등의 보완작업 실시, 주된 대상은 정부의 각급 부서와 공공기관이지만 민간부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패관련 자문도 제공

○ 대국민 반부패 캠페인 및 교육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반부패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공포럼, 세미나, 워크숍, 강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기업, 공무원에게 캠페인과 교육 실시

○ 뉴질랜드가 부패인식지수 1위(9.3)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던 데는 SFO(중대비리조사청)가 큰 활약을 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음.

○ 또한, 홍콩(8.4)은 부패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과 요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구속권을 갖는 등의 수사권이 확립되어 반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음.

※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보여줌

○ 덴마크의 경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 성숙한 의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부터 청렴을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음.

※ 우리나라도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신의 확립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어 핀란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대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누구나 정부 자료 열람이 가능함. 이를 통해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간극을 줄여 청렴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음.

※ 말 뿐인 정보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이 필요함

2) 6~7점대 국가 : 영국(7.6), 미국(7.1), 프랑스(6.8), 슬로베니아(6.4)

□ 영국 (CPI 지수 : 7.6 / 20위)

- '투명한 도시 만들기' 정책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런던
 - 이타주의, 정직성, 협력, 객관성, 신뢰성, 개방성,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리더십 등의 원칙을 토대로, 시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무원의 행동패턴과 문화를 장려하여 시 자체적으로 매년 시정 평가보고서 작성
-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 구청과 양해각서 체결 및 윤리강령 제정
 - 신입시장 취임 이후 좀 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
 - 직원 표준 윤리강령, 반부패 전략·정책·대응 방안, 선물과 접대 대응 가이드 라인 등 제정
- 시장 및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 직무 역할 수행 및 부적절한 행동 규명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
-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위촉
 - 시장은 12명까지 조언자를 지명하여 활용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언자에 대한 개인정보, 급료, 활동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정보공개, 市 재원 및 지출현황 공개
 - (정보공개) 무료 공공데이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실시간 데이터의 가능성' 홍보 행사 개최
 - (市 재원 및 지출현황 공개) 500과운드(약 91만원) 이상 지출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시민이 市예산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
- 시장-시민 간 공개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 매년 2회에 걸쳐 시민과 공개 토론, 매년 2~4회 정도 환경문제, 올림픽과 같은 체육행사 준비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미국 (CPI 지수 : 7.1 / 22위)

- 고위직에 중점을 둔 반부패 정책 시행
 - 미국은 주민자치의 역사가 길어 하위직 공무원의 청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직부패 억제를 위한 정책의 주요대상은 고위직에 맞춰져 있음
- 다른나라와의 반부패 정책 연대
 - 경제발전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다른나라와의 부패방지도 중요
 - 공무원이 관리하는 반부패정책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반부패 정책 연대를 중시
-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색출 중시
 - 모든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부패의 발견과 수사를 위해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
- 민간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를 중시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주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점이 공직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큰 역할을 함
- 뉴욕주 공무원들을 위한 반부패 지침 마련
 - 특정 행위기준을 설정하고 영업활동과 전문적 활동 제한, 정책결정자와 기타 고위관료의 재정 공개 의무화
- 종합 로비개혁안 제정

- 부패조사국에서 작성, ①로비스트의 시공무원에 대한 선물금지, ②로비법의 적용강화와 최고벌칙 상향 조정, ③로비스트 고객의 정보공개, ④신속하고 정확한 공표를 위한 온라인 서류처리 시스템 개발, ⑤로비법의 허점 보완
- 비영리단체의 기금 유용 감시 및 위법 사기 방지 노력
 - 공공기금을 이용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전담반을 구성·운영
 - 시 법무부, 감사팀과 함께 위법사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 조달 비리 근절 방안 수립
 - 조달관련 부패조사, 해당기업의 계약 이해관계자 정직성 조사 실시
- 내부감사(회계감사관제도), 외부감사(외부회계법인, 보험감사, 감사위원회)를 통한 부패 방지
 - (회계감사관제도) 선거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 선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회계감사관은 시 재정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 권한 보유
 - (외부회계법인) 매년 외부 공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통합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주정부와 시민에게 고지함
 - (보험감사) 회계감사관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에 한번 독립의 보험 설계인을 선정하여 뉴욕시 재무의 건전성 및 시의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불입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보험 통계상의 가정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받음
 - (감사위원회) 시장, 회계감사원, 시민단체 대표, 시장이 임명하는 4명의 일반시민(재무관련 전문가 2명, 회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 감사위원회는 내·외부 감사제도에 관하여 승인 및 평가
- 주정부의 주요 회의 실시간 중계
 - 뉴욕주는 「회의공개법」에 따라 각 실·국 및 산하기관, 관내 시정부는 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하거나 웹상에 회의기록을 남김으로써 누구나 공공정책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도시기관에 정책 및 절차 권고

- 2002년부터 약 2,300개의 정책 및 절차를 권고하였으며, 2010년에만 269개를 발의

○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렴 모니터 프로그램 가동

- 18개 산하기관의 사업별 목표와 실적 및 성과, 그리고 기관 효율성을 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

- 외부의 독립된 모니터 기관을 통하여 보고서 제출, 기타 방법으로 청렴을 입증하여야 함

○ 부패방지 교육, 부패보고서 발간, 주택 사기 사례 등을 자료화

- (부패방지 교육) 2002년부터 4,000회 이상 교육, 2010년에만 520회 교육 진행

- (부패보고서 발간) 건설국과 재무국의 비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23개항에 달하는 권고안 제시

- (주택 사기 관련) 1천5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사기 사례를 문서화하여 일반 공개

□ 프랑스 (CPI 지수 : 6.8 / 25위)

○ 법무부 소속하의 각 부처 연합체인 부패예방청(CAPC) 운영

- 부패행위 및 부패유사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수집, 필요시 책임있는 관계 행정당국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경고(avis) 요구권 보유, 필요시 사법당국과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업무 추진

- CAPC의 경고요구권 대상기관(Les Autorites Habilees A Demander un Avis)으로는 지방시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공동연합기구 의장 등, 국가행정부처 및 행정위원회의 장,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장

□ 슬로베니아 (CPI 지수 : 6.4 / 27위)

○ “청렴도 제고 계획(Integrity Plan) 실시

- 슬로베니아 부패예방위원회는 「부패예방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2004)에 근거하여 부패취약도 자체진단평가 시스템인 “청렴도 제고 계획(Integrity Plan)”을 실시
- 공공기관들은 부패예방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패 취약도를 분석, 부패 취약 분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
- 부패예방위원회는 현재까지 500개 공공기관 및 210개 지방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권고
- 216개 기관의 공직자 33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계획” 수립 방법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동 제도를 몰도바,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투명성확보가 부패의 사전예방에 기여함.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가 극히 일부만 이루어져 있고 이 또한 형식적이거나 매우 부실함.

※ 한국의 경우에도 형식적,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여 투명성 확보 필요

- 미국의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공무원들이 지침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있고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도 청렴도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 이러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개선은 단기적인 부패의 감소보다는 장기적인 반부패시스템으로써 효력을 발휘함.

※ 직무 역할 수행 및 부적절한 행동 규명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함.

3) 5점대 국가 : 대만(5.8)

□ 대만 (CPI 지수 : 5.8 / 33위)

○ 공무원 부패 전담기구 엽정서(The Agency Against Corruption(AAC)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운영

- 공무원 관련 부정부패 사례들을 적발해 부정부패 사건 유죄 확정 비율을 높이고, 범죄발생률을 줄이고, 인권을 보장하자는 3대 목표 추진

- 공무원 부정부패 예방, 척결, 처벌이 주요 업무이며, 정부 윤리 담당 관리(정풍요원)들이 정부 각 부처들에 주재하면서 부정부패 정보들을 수집하여 엽정서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주된 업무가 이루어짐

- 정풍요원, 엽정관, 검찰관 14명, 경찰관 등 1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무부 산하에 설치

※ 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에게서 뇌물과 성상납을 받고 무죄판결을 내린 ‘대만판 법조비리’가 불거진 뒤에 대두

※ 최근 대만에서는 고위 경찰관들이 조직폭력배들과 유착돼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됨으로 인해 라이잉자오 사법원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표 제출

☞ ‘엽정서’는 설치전부터 독립성,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 특히 법무부의 산하 조직이라는 데에서 독립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법무부 조사국 등 기존 반부패조직과의 업무 중복성의 이유로 엽정서 설치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음

○ 정풍사(대만 법무부)을 통한 반부패 활동

- 설립근거는 정풍기구인원설치조례(政風機構人員設置條例)로 반부패 관련 주관기관으로 각급 기관 내 정풍기구 관장 근거

- 정풍사에서는 「부패·독직사건 고발자 보호·보상에 관한 법」을 근거로 장려보호검거탐오독

직관법(獎勵保護檢舉貪污瀆職辦法), 정풍기구인원설치조례(政風機構人員設置條例) 시행

- 「행정원 소속공무원의 재물 및 향응 수수 금지에 관한 법」으로 「행정원금지소속공무원인원증수재물금지접수초대판법」(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공직인원이익충돌회피법」(公職人員利益衝突回避法)을 소관

○ 대만의 경우 반부패를 법무부인 정풍사가 담당하였지만 계속되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로 공무원 부패 법무부 산하조직으로 공무원 부패 전담기구인 ‘염정서가’ 설립되었으나 정풍사와 염정서의 업무 중복 및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체계가 잡히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음. 하지만 대만이 반부패를 위해서는 부패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만의 현재 상황은 반부패전담기구 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례인 반면 이는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존재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도 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반부패 전담기구가 필요함.

4)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국가청렴도 제고 방안>

□ 부패행위의 엄정한 처벌 시스템 확립

- 감독부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뇌물제공, 불법 리베이트 수수 만연 등 민간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 필요
 - 그간 권익위가 권고한 관련 개선안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 대상분야 : 건설공사, 하도급, 보험, 금융, 의료분야 등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입법의 신속한 완료 촉구
 - 부패공직자에 징역형 외에 수수액의 최고 5배 벌금형 병과(법무부 도입)
 - 징계시한 연장(3년→5년), 부패공직자 강등제 도입(행안부 도입)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 내실화
 - 행동강령,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동강령 주요 위반행위 등 실태조사 강화
 - ※ 이권개입·청탁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촌지 등 금품 수수 행위 등
 -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이해충돌 회피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행동강령 개정도 필요

□ 윤리경영 보급 등 민간의 통제역량 강화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을 개발·보급하여 자율적 윤리경영 확산 지원
 - UN Global Compact 가입 기업은 이행성과 보고서 의무적 작성

※ UN Global Compact('08년 국내 127개 기업 가입), ISO 26000 등 공공분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과 청렴관련 기준 정립 움직임 가속화

- 회계투명성, 내부 통제체계 등의 자체적 진단을 위한 '기업 투명성 진단 모델' 개발·보급

□ 국제협력·홍보를 통한 청렴국가 이미지 확립

- 반부패 국제기구(UNDP)와 반부패 협력사업 지속 추진

- 부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수범 프로그램의 적극적 소개 및 보급 추진

- 홍보대상별 효과분석을 통한 맞춤형 홍보 실시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성과에 대한 홍보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주한 외국 CEO, 투자자, 주한 상공단체 회원, 외신기자 등 고객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투명성 뉴스레터 발송, 현지 정책설명회, 반부패정책 간담회 등

<정책적 시사점>

□ 반부패 정책 체계화 필요

- 반부패정책은 일회성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화가 필요

- 정책의 공개, 근거규정의 명시, 정책의 실현, 평가의 타당성 판단을 통한 체계화로 정책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

-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정책의 공개성이 높은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공기업뿐 아니라 민

간 기업까지 확대

- 정부는 지자체 및 부처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민간 기업은 계열사별로 윤리규정을 제정

○ 실현성과 타당성이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 반부패 자체 조사, 반부패 상시 확인·관리 시스템, 행동강령 생활화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
- 기관 단위로 반부패 자체 조사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인 단위로 반부패 상시 확인 시스템을 관리하되, 이를 성과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 반부패 교육, 반부패 홍보, 시민권리 알림, 참여컨설팅 정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반부패 마인드가 정착되도록 노력

○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로 제정할 정책 구상 필요

- 고위직 반부패 개선정책, 사이버 부패 대응 조직 보완, 예산사용 공개 시스템, 윤리 경영 보고서 발간 등

□ 반부패 정책 시민협력추진체계 강화

○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파트너십 강화

- 최근 청렴정책은 청렴홍보, 청렴교육, 청렴상담, 청렴정책 평가 분야에서 민관공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
- 청렴사례 교육집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부패 관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전의 부패경험과 현재의 부패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렴상담 센터 활용 검토

○ 부패신고 및 예산감시 제도의 활성화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동시에 공공 조직 부패 척결 목표 달성
- 시민 스스로 예산집행 감독 및 적정성 점검 과정에 참여, 부적정 집행 가능성을 줄이고, 수시로

확인하는 미스터리샤퍼* 활동을 통해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 실시

- * 미스터리 샤퍼 (mystery shopper) :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일반 고객인 것처럼 매장을 방문해서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들. 매장 직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온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온갖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다.

□ 글로벌 반부패 정책 지표 개발

○ 글로벌 청렴지표 개발을 통한 선진국과의 청렴도 비교

- 비교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및 도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고려, 싱가포르, 홍콩, 도쿄, 대만 등을 검토하여 정기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구성
- 정치, 행정, 사회, 경제 영역 등의 평가를 통해 해당 국가 및 도시의 전반적인 청렴도를 조사,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청렴 순위 경쟁에 활용

□ 반부패 정책 관련 법규정의 재정비

○ 청렴 관련 규정 보완 및 재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 현재의 공무원 윤리강령 체계를 구체적인 세부운영 지침화하여 범위가 넓어 해석의 여지가 큰 지침을 구체화하여 표준 대응책 수립
- 내부고발제도의 범위를 확장하여 내부 고발을 비롯한 내부 청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청렴 지킴이'(가칭) 등의 포지티브 제도화 추진

3. 반부패 · 청렴 전략 도출

□ 반부패 · 청렴 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SWOT분석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조직 및 행위주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한 매칭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임
 - 따라서 강점/기회 전략, 강점/위기 전략, 약점/기회 전략, 약점/위기 전략이 도출됨
 - 도출된 전략의 성격에 따라 공격적 전략(강점/기회 전략), 다양화전략(강점/위기 전략), 방항 전환전략(약점/기회 전략), 방어적 전략(약점/위기 전략)으로 구분
 - 도출된 전략의 시기에 따라 우선수행과제(강점/기회 전략), 리스크해결과제(강점/위기 전략), 우선보안과제(약점/기회 전략), 장기보안과제(약점/위기 전략)
- 분석을 통한 최적 전략의 선택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 중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패해결은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시기별 전략에 따라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반부패 · 청렴 마스터플랜의 이행과정으로 설정
 - 우선수행과제를 단기전략으로 설정하고 우선보안과제 중 성격에 따라 단기 · 중기 · 장기로 구분하도록 함
 - 리스크해결과제와 장기보안과제는 마스터플랜 내에서 중기 ·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
- 전략에 따른 도출 과제의 성격
 - 우선수행과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부패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과제를 도출
 - 우선보안과제는 단기 · 중기전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
 - 리스크해결과제는 중 · 장기적으로 반부패 · 청렴 환경 조성에 있어 위협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과제를 도출
 - 장기보안과제는 현재 달성하기는 어려우나 시기별 과제들이 추진되어 반부패 · 청렴 환경에 대한 공고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를 도출

반부패 · 청렴 역량
반부패 · 청렴 환경

강점(Strength)
-부패방지 법제도 인프라의 구축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공감대 형성

약점(Weakness)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과 소통의 한계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부족
-독립적 반부패전담기구의 미비
-부패방지 법제도의 실효성 부족

기회(Opportunity)
-국민들의 반부패 · 청렴 의식수준의 향상
-반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조 강화
-공공간, 공공-민간간, 민간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확산

SO 전략
(우선수행과제/공격적 전략)
-부패의 개념 및 인식 확산
-반부패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구축(대응성 제고)
-민간부패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WO 전략
(우선보안과제/방향전환전략)
-반부패 · 청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반부패 · 청렴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반부패 국제규범 준수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실천제고
-독립적 반부패전담기구의 신설

위기(Threat)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
-반부패 문제에 대한 국제적 평가 지속적 하락
-공직자와 국민간의 부패에 대한 인식의 괴리

ST 전략
(리스크해결과제/다양화전략)
-구성원들(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반부패 · 청렴 가치 내재화
-국제규범을 반영한 제도의 정착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 제고
-반부패 · 청렴 가치의 체계적 교육

WT 전략
(장기보안과제/방어적 전략)
-반부패 · 청렴 법제도의 통합성 제고(이해충돌방지 장치 강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과거 추진했던 반부패정책의 평가 및 수정



반부패·청렴 전략의 재구성

SO & ST 전략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부패의식전환 전략
-반부패 · 청렴가치 내재화를 위한 청렴교육홍보 전략

WO & WT 전략
-반부패 · 청렴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청렴플랫폼 전략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 반부패·청렴 전략의 재구성 및 과제 도출

- SWOT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반부패·청렴 마스터플랜의 통합적 추진 및 그 시기별 이행을 위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략으로 통합하여 구성
 - SO & ST 전략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의식전환 전략, 반부패·청렴가치 내재화를 위한 청렴교육홍보 전략으로 구성
 - WO & WT 전략으로 반부패·청렴 의사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청렴 플랫폼 구축 전략,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전략을 구성
- 전략별 과제의 구성
 - 재구성된 전략별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반부패·청렴의식전환 전략의 중점과제는 사회지도층의 자기혁신운동, 공직윤리 실천운동, 기업의 투명경영 실천운동, 선진 민주시민운동으로 설정
 - 청렴소프트파워 형성을 위한 청렴교육·홍보 확산 전략의 중점과제는 청렴교육추진체계 신설, 청렴교육과정 확대, 대상별 청렴교육콘텐츠 개발, 청렴교육지원을 위한 교원양성체계 구축, 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을 설정
 - 반부패·청렴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청렴 플랫폼 구축 전략의 중점과제는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활성화와 반부패 정보공유 확산,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 및 개도국 지원, 부패방지 민관협의체 구축, 투명사회협약 재추진, 쌍방향 청렴 웹 구축으로 설정
 -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전략은 반부패이니셔티브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반부패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반부패법제도의 통합성 및 효율성 제고로 설정

전략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p>청렴 소프트웨어 형성을 위한 청렴교육·홍보 확산 방안</p>	<p>청렴교육추진체계 신설</p>	<p>-청렴교육위원회(가칭) 설립 -청렴교육·연구지원센터(가칭)설치</p>
	<p>청렴교육과정 확대</p>	<p>-공직 생애주기 청렴교육 -개인 생애주기 청렴교육 -기업 청렴교육과정 확대 -직역별·전문직 청렴교육과정 확대 -청렴교육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p>
	<p>대상별 청렴교육콘텐츠 개발</p>	<p>-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콘텐츠 개발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콘텐츠 개발 -청렴공개강좌 개발 및 보급</p>
	<p>청렴교육지원을 위한 교원 양성체계 구축</p>	<p>-청렴 교육 교원 양성 기반 마련 -청렴교육강사 양성과</p>
	<p>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p>	<p>-청렴문화축제 추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청렴 홍보 -국민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p>
<p>청렴의식 함양</p>	<p>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활성화</p>	<p>-사회지도층의 나눔·배려와 자기희생·봉사 실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모범사례 발굴·확산 -사회지도층의 청렴윤리의식 제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캠페인 -우수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p>
	<p>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운동</p>	<p>-관행과 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국민기초생활 실천운동 -청렴의 날 청렴의 달 지정, 청렴생활화 운동 -청렴학교교육 활성화</p>
	<p>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운동</p>	<p>-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구성 -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 -끼리끼리 문화 청산운동 -청렴공약실천서약운동 -투명경영실천운동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p>
	<p>전 국민 청렴감시 운동</p>	<p>-대정부 청렴감시운동 -대의회 청렴감시운동 -대사법부 청렴감시운동 -대기업 청렴감시운동</p>

전략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p>반부패·청렴 의사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청렴 플랫폼 구축 전략</p>	<p>국제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및 반부패 전문가 양성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및 적극적인 참여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설립
	<p>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 및 개도국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방법의 개발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p>부패방지 민관협의회(거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의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민관협력추진체계로서 반부패 청렴운동본부 설립 -반부패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
	<p>투명사회 협약의 지속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사회 협약의 체결 및 확산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 추가 협약을 추진 -투명사회협약의 입법화 등 제도적 이행방안마련 -협약의 실천 실태 점검 및 피드백
<p>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p>	<p>반부패 이니셔티브 창출을 위한 법·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체계 구조적 부패 가능성 축소 -이해충돌방지의무 강화 -기업부패방지방안 마련 -일수벌금제도 도입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부패 가능성 제거 -청탁등록 시스템
	<p>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법·제도 집행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권, 수사권/기소권 공유 -뇌물죄 양형기준 준수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설립 -종합적인 조정·관리 기능 확보
	<p>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와 피드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사범 사면권 제한 -청렴도 평가법 제정 -감사직렬 확대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의 정보공개

4. 비전의 설정과 목표체계

□ 반부패마스터플랜의 비전 : “청렴신뢰사회”

○ 국가경쟁력의 강화

- 부패문제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

○ 사회자본의 강화

- 청렴도 제고를 통한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과 이를 토대로 한 국가 통합 증대

○ 반부패 국제규범 선도적 이행을 통한 국격 제고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부패 국제규범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한 층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정책에 대한 선도적 이행국가로 발돋움 함

□ 실천목표(가치)

○ 국민의 의식 속에 반부패·청렴의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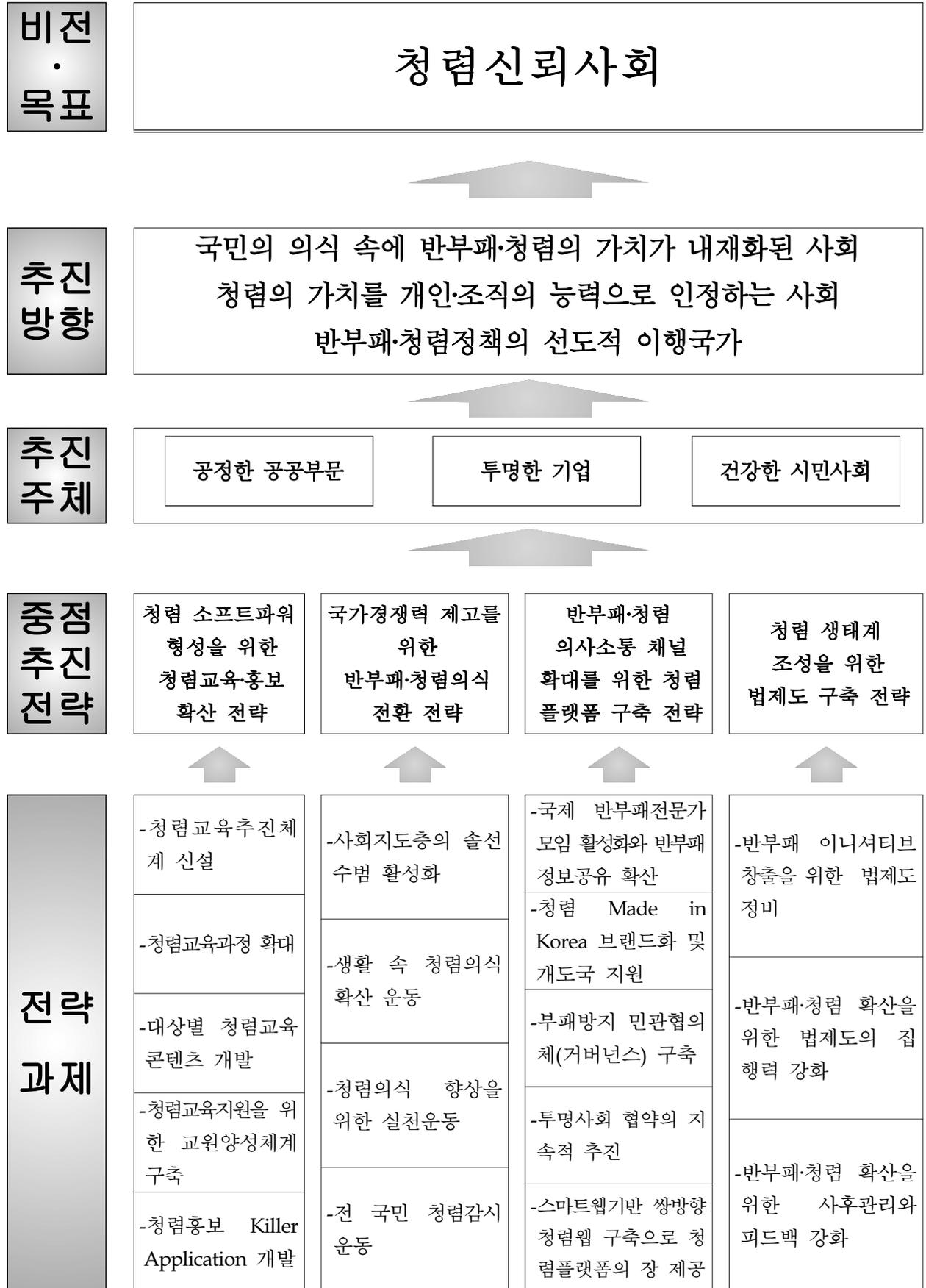
- 반부패·청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개인간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사회

○ 청렴의 가치를 개인·조직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사회

-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청렴의 가치가 곧 개인과 조직의 능력이 되는 사회

○ 반부패·청렴정책의 선도적 이행국가

- 반부패·청렴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사회적 시스템이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가



5. 반부패마스터플랜 이행계획 및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 단계별 추진과제의 설정

- 마스터플랜의 단계별 추진방법은 1단계(우선추진과제:2011~2012), 2단계(단기추진과제:2013~2015), 3단계(중장기추진과제:2016~2020)로 구분함
 - 시기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과제의 파급효과 및 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과제를 선정
 - 1단계는 반부패·청렴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며 그 확산효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함. 또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
 - 2단계는 청렴의식 및 청렴사회문화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반부패·청렴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지원토록 함. 법제도적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1단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음을 전제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
 - 3단계는 과제를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앞의 1단계와 2단계 과제의 성과를 통해 과제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과제의 이행이 가능한 것을 3단계 과제로 선정하고 계획 이행과정에서 새롭게 도출되는 과제 등을 추진. 또한 1단계와 2단계의 반부패·청렴 추진과제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플랜의 지속적 집행을 위한 과정임

□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 구체적이고 생생한 반부패·청렴마스터플랜의 청사진의 필요성
 - 마스터플랜의 기본적 목적은 과제를 달성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대한민국의 청렴수준임
 - 마스터플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실천과제이고 이러한 실천과제를 수행했을 때 일정기간 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구체화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상정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부패인식지수(CPI)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함

○ CPI 달성 정도에 대한 고려사항

- 매년마다 CPI달성 정도를 산정하여 제시하기에는 추정이 어려우므로 단계별 이행과제의 수행 시 CPI 달성 정도를 제시하도록 함(2010년 CPI점수를 기준으로 반부패추진전략을 수행했을 시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

□ CPI 목표 달성에 따른 대한민국의 모습

○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1단계)

- 1단계는 전사회적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시기로 청렴 의식개혁 및 청렴 교육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또한 반부패이니셔티브의 선도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렴플랫폼 구축 작업을 수행
- 1단계 계획 완료 시 CPI지수는 5.8점으로 평가대상 국가 중 33위가 예상되며 이는 1인당 GNP 7.5%상승, 1인당 국민소득 \$1413 정도의 상승효과 예측

○ 반부패·청렴 과제의 안정적 수행 및 지속적 환류 및 평가 시기(2단계)

- 1단계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토대로 추진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 환류가 되도록 하는 시기

○ 과제이행 평가 및 신규과제의 도출 및 수행(3단계)

- 3단계는 반부패·청렴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평가와 과제 수행 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신규과제 도출 및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시기
- 3단계 계획 완료 시 CPI지수는 7.3점으로 평가대상 국가 중 21위가 예상되며 달성정도를 볼 때 OECD평균(6.97)을 상회하며 미국, 벨기에 등과 비슷한 수준에 오를 것으로 예측

중점 과제		청렴 소프트웨어 형성을 위한 청렴교육·홍보확산 전략	청렴의식 함양	청렴 플랫폼 구축	청렴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전략	CPI 달성목표 (순위)
1단계	2011	-청렴교육위원회, 연구지원 센터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설립 -공직생애주기 청렴교육 실시 -기업 청렴교육 과정 확대	-사회지도층의 나눔·배려, 자기희생·봉사 실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모범사례 발굴·확산 -사회지도층의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솔선수범 캠페인 -청탁 안하고 안받기, 끼리끼리 문화 청산, 청렴공약 실천 서약, 투명경영 실천 운동 실시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및 반부패 전문가 양성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 -민·관의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간에 투명사회 협약 -청렴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구 구축	-턴키 입찰방식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방안 마련 -기업부패방지 법률 제정 -기업 청렴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사정기관 공직자의 처우개선, 처벌강화, 사후관리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 방안 수립 -부패사범 처벌, 사면권 제한 등 사후관리 방안 근거 마련 -일수벌급제도 시행 환경 조성	5.8점 (33위) 대만수준
	2012	-청렴교육 강사 양성 -청렴문화축제 추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청렴 홍보				
2단계	2013	-개인생애주기 청렴교육 실시 -지역별, 전문직 청렴교육 확대 및 시행 -청렴교육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관행과 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국민 기초생활 실천운동 확산 -청렴의 날 청렴의 달 지정 및 청렴생활화 운동 -청렴학교 교육 활성화 -법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구성 -對의회, 정부, 사범부, 대기업 청렴시 운동 활성화	-해외부패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 반부패 전문가 동참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설립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지자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상시감시체계 형성 -내부고발제도,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협약 추진에 따른 이행사항에 관한 사회적 공표 -생방향성 콘텐츠 개발을 통한 스마트웹 기반 청렴웹 구축 및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이해충돌방지 의무 강화 -CSR Action Plan수립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정비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신진화 -민·관 합동 반부패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정탁등록시스템 구축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립 -통계적·과학적 뇌물죄 양형시스템 구축 -부패방지과 공직윤리 기능 통합 -종합적인 Control Tower 설치 -청렴도 평가법 제정 -감사직렬 신설 및 확대 제도화	6.3(28위) 스페인 수준
	2014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공개강좌 개발 및 보급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운영				
	2015					
3단계	2016 ~2020	-청렴교육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신규과제 도출 및 지속적 수행	-과제 이행 평가 -신규과제 도출 및 지속적 시행	-과제 이행 평가 -신규과제 도출 및 지속적 시행	-신규과제 도출 및 지속적 시행	7.3(21위) 미국수준

IV. 과제별 전략 :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청렴 소프트웨어 형성을 위한 청렴교육·홍보 확산

1) 필요성

□ 반부패이니셔티브의 선도적 이행을 위한 청렴사회문화 확산 필요

○ G20세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반부패이니셔티브의 선도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 부패문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UN반부패협약('03), OECD 뇌물방지협약('97) 등)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부패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OECD회원국이나 청렴선진국의 부패인식지수(7점대 이상)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5.4점; 2010년 기준)와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

○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형성 및 강화

- 소프트 파워는 매력을 통해 다른 국가를 설득하거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여,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국가는 그들의 가치와 정책으로 자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음

※ 소프트파워란 1990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군사력 및 경제력을 나타내는 Hard Power에 대응한 개념임. 소프트파워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지만 소프트파워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의 공유로 상정한다면 현 시기 반부패·청렴이란 가치도 소프트파워 형성의 하나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반부패라운드 등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소프트 파워 향상은 반부패이니셔티브의 선도적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청렴이란 가치가 공유된 소프트파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렴사회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동인으로 청렴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정부 차원의 청렴교육 전략체계 필요

○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통합적 청렴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청렴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 내용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사회적 차원의 청렴교육과 관련된 위원회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어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교육계획 수립과 집행을 요구됨

○ 청렴교육계획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기반 마련

- 소프트파워 형성 및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청렴교육계획의 집행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이러한 추진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필요

○ 대상별(공공, 기업, 시민)·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교육 관련 콘텐츠,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단발적이고 분산적인 청렴교육이 아니라 청렴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통해 소프트파워 강화

□ 청렴사회문화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 반부패·청렴은 공정한 사회 구현의 핵심적 가치로 이를 알리고 전달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청렴사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행사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대상별 청렴 글짓기 대회, 청렴촌극 경연대회 등) 국민참여프로그램

램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렴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제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2) 현황 및 문제점

□ 청렴교육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청렴교육전문가과정」은 교육인원 2,659명 교육 횟수 50회, 「사이버청렴교육과정」은 교육수료 인원이 169,370명,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3회에 걸쳐 고위공무원단 698명, 공직유관단체 412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임(2010 국민권익위원회백서)
 - 교육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평가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내용이 피교육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환류체계가 미비
- 초·중·고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검정교과서인 중학교 2학년 교과서 3개 출판사, 4종 교과서에 청렴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고등학교 필수 도덕교과서에는 1개의 출판사, 2종 교과서에 청렴 내용을 반영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내용을 정규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 교육과정에 반영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 국가차원의 통합적 청렴교육 전략추진체계 미흡

-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청렴관련 내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략적 추진체계 부재로 청렴관련 내용의 교과반영이 전 사회적으로 전파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청렴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통합적 전략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추진

체계 내에서 청렴교육확산과 관련된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요구됨

□ 청렴사회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Killer Application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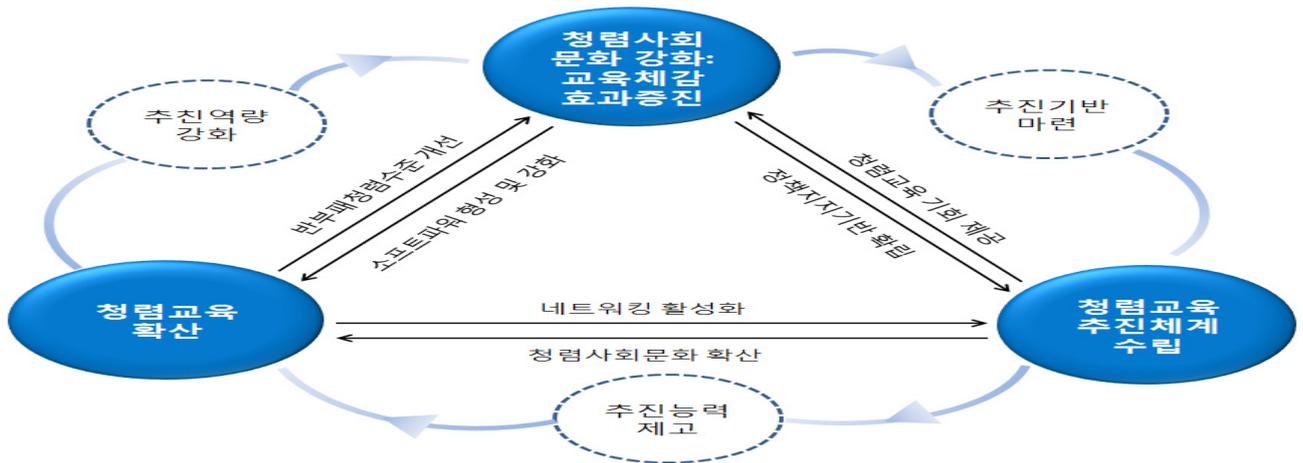
-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상을 다양화하여 국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렴이라는 가치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이를 전파할 수 있는 확산의 장이 부족함
- 따라서 개별 국민은 청렴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체가 청렴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집행중인 국민참여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Killer Application 개발이 필요

3) 정책 제안

□ 소프트파워 형성 및 강화를 통한 클린노믹스(Cleanomics) 추진

- 클린노믹스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소프트파워의 형성 및 강화가 중요
- 클린노믹스(Cleanomics)란 Clean+Economics의 합성어로 하드웨어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청렴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렴이라는 민주적 가치가 공유된 소프트파워 형성전략임
- 반부패·청렴이란 주제는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시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공직자에게 있어서도 청렴이란 주제는 진부하거나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부차적인 내용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소프트파워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 국가청렴도 1점 상승 시 1인당교역 31%, 외국인투자관심도 26%, 1인당 GNP 26% 상승이라는 연구결과를 본다면 청렴이 개인 및 조직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알 수 있음(출처 :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4.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 청렴한 정부운영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기여(출처 : 장근호, 1997. 부정 부패와 경제성장. 한국조세연구원)



□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문화 확산

- 소프트웨어 형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지지기반 필요
 - 민주적 가치(청렴마인드)가 내재된 소프트웨어의 형성은 청렴교육추진체계의 지지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청렴의식개혁 운동과 더불어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청렴교육은 시민의 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청렴이라는 가치 추구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구현

□ 추진능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청렴 교육추진체계 수립

- 국가차원의 통합적 청렴교육추진체계 수립
 - 청렴교육을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청렴교육위원회(가칭)를 설립
 - 청렴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안은 여러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 첫째, 독립된 위원회 조직을 설립하여 청렴교육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청렴교육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조정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 둘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청렴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 * 셋째, 청렴플랫폼 안에서 시민단체 공공부문, 기업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켜 청렴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및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위원회의 구성

○ 국가차원의 통합적 청렴교육추진체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집행기구 설립

- 청렴교육위원회 정책집행 및 조정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기업인, 시민들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청렴교육·연구지원센터(가칭)를 청렴교육위원회 산하에 설립
- 지속가능한 청렴교육정책 수행과 확산을 위해 지역별 거점 연구센터 등을 설정하고 청렴교육·연구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청렴사회문화 확산의 기반 제공

□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확산

-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부패발생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접근을 강화
 - 공직자의 공직생활 전체에 걸쳐 청렴교육 실시(공직진입 전, 공직입문, 퇴직 전후로 구분/대상별로는 신규임용자, 중간관리자, 고위공직자로 구분)
 - 공무원교육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직 전입 전은 공직입문이 가능하게 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사법연수원 등)하여 청렴의식을 제고
-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의 경우 일정기간 청렴교육과정 이수 후 현업에 복귀하도록 청

렴교육을 의무화하여 행동강령 위반 재발 방지에 기여

- 2009년 행동강령 위반자의 경우 1,089명으로(출처 : 2010 국민권익위원회 백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 개선

□ 생애주기 교육확산을 위한 고려사항

○ 각 개별기관의 교육기관 및 교과과정설치와 관련된 근거의 개정

- 육사·해사·공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칙을 개정하여 청렴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할 수 있음
- 사법연수원의 경우 「사법연수원운영규칙」에 의하여 교육과정이 개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각 법률에 의해서 직역별 협회에 의해 교육되는 직역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검토를 통한 청렴교육 개설 유도(ex: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같은 직역별 협회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 유도)
- 각 기관별(감사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 등) 교육기관의 운영규칙 개정을 통하여 청렴교육과정 이수를 유도

○ 각 개별 기관의 교육 이수 후 청렴교육·연구센터의 청렴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

- 각 개별 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개정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이수가 아닌 교육과정 전체에 청렴교육·연구센터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 이를 위해서 청렴교육·연구센터의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대상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 등의 준비가 필요

※ 위의 두 가지 안에 대한 사전준비조사(각 개별기관의 법적 근거 및 커리큘럼 검토)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안 도출 필요

○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청렴교육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학생에 대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실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내용을 확대하여 반영하고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이수하는 방안을 고려
- 대학 교육과정에 청렴교육과정을 교양과정으로 개설하도록 유도하여 대학생들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한 청렴사회문화 확산
-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청렴교육 과목 개설 유도 및 확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

○ 기업교육 프로그램에 청렴교육과정 확대

-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및 기업 사내교육프로그램에 청렴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등에 관한 의식을 내재화하도록 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고려
-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의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및 사내 직원교육프로그램에 청렴교육과정 개설 유도 및 의무화
-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및 사내 직원교육프로그램에 청렴교육과정 개설 유도
-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 청렴교육과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마련

○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점은행제 수업 등에 청렴교육과정 개설 유도

-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점은행제 수업 등에 청렴교육과정 개설을 유도하여 청렴교육이 개인의 자기 계발과 연계되도록 하여 청렴사회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 및 직역별 청렴교육 강화

- 고위공직자 및 직역별로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내재화시키도록 함
 - 고위공직자의 경우 역량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직역(전문직 : 의료종사자, 법조인,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맞는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윤리위원회 산하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 지속적인 청렴교육확산을 위해 청렴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환류 필요
-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청렴교육에 따른 효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청렴교육의 방향성을 정립
 -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청렴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청렴봉사활동을 포함시켜 생활 속에서 청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입학 시 청렴 및 윤리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경우 채용 시 개인의 청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청렴교육과정 이수 여부나 면접 시 개인의 청렴성 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 채용 시 청렴성 평가 방안 도입
 - 행동강령 위반자 청렴교육 이수 후 평가 실시
 - 공직 진입 전단계(경찰대, 육사·해사·공사, 사법연수원 등) 청렴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 * 평가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을 이수 한 인원에 대한 개인평가 체계임
- 고위공직자의 역량평가에 청렴가치 역량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피드백하여(인사평가 반영)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

- 공직자의 승진 및 임용 시 청렴 가치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함

□ 청렴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콘텐츠 개발

- 영·유아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어린 아이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캐릭터의 활용을 통해 정직, 책임, 배려, 관용 등 민주적 가치 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뽀로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교육)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청렴캠프 및 청렴봉사활동 프로그램, 청렴인물 여행 프로그램, 청렴사적지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학생들이 생활에서 청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청렴교육위원회 내지 민간·대학 등에서 청렴 공개강좌(open lecture)를 개발하여 청렴 플랫폼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시 각 과정 간 교육내용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청렴교육 지원을 위한 교원양성체계 구축

○ 청렴교육 교원 양성기반 마련

- 사범대 및 교육대학 그리고 교사임용 자격시험에 청렴교육을 포함
- 예비교사과정인 사범대 및 교육대학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임용 연수과정에 청렴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사의 청렴마인드 내면화로 청렴사회문화 확산
-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에 대한 청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어린 아이들의 청렴교육을 내실화

○ 교사임용연수과정 및 자격연수 과정 청렴교육 강화

- 교원 연수과정에 청렴교육을 도입하여 교육공무원의 청렴성을 강화
- 신규채용시 청렴윤리 교육 의무화(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 교직입문을 위한 교직자 청렴서원식 운영
- 교장 및 교감, 교육행정직 청렴교육 연수 의무화

○ 교육공무원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원복무규정을 도입하여 교육기본법의 입법정신 실현
- 교원행동강령(가칭) 제정 및 시행
- 교육자 청렴도 진단모델 개발 및 평가시행

○ 청렴교육 강사 양성화

- 대상별 청렴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하고 인증기관에서 청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청렴교육강사활동을 하도록 함
- 청렴교육 강사 과정 이수 후 청렴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

○ 청렴문화축제(Clean Culture Festival) 추진

-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기관의 청렴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청렴축제를 청렴사회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청렴이라는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축제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 형식의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흡수하고 청렴홍보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물 등을 공모하여 축제기간에 상영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집약적인 청렴사회문화 확산의 장으로 활용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을 통한 청렴홍보

- 청렴 플랫폼 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을 통한 청렴홍보를 통해 쌍방향적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홍보의 실효성을 강화
-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참여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 및 다양화

- '장학퀴즈', '도전! 골든벨' 등과 같은 퀴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단위, 학생 팀 단위,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매스컴을 통해 방영하여 청렴사회문화 확산
- 부패사건과 관련된 드라마를 제작하여 이를 TV에서 방영하여 국민들의 청렴사회문화 인식 제고

※ 홍콩의 경우 부패사건과 관련된 드라마를 제작하여 TV를 통해 방영하여 국민들의 청렴사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청렴교육 추진체계 신설

1 과제설정의 배경

- 청렴사회문화의 확산의 전제는 사회 구성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의 공유에서 출발하며 청렴이라는 가치 공유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반부패·청렴의식의 공유는 반부패이니셔티브의 선도적 이행과 청렴사회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음
- 청렴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청렴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청렴교육의 내실화 전사회적 청렴사회문화 전파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청렴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추진체계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통합적 청렴교육 추진체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청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반 마련
- 통합적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전사회적인 청렴사회문화 확산과 더불어 개인의 청렴의식 개선을 통하여 공동체의 청렴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
- 청렴교육과 관련된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청렴교육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청렴교육위원회(가칭)설립**

- 국가차원의 통합적 청렴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청렴교육의 추진능력을 제고
- 청렴교육위원회 구성방식 및 역할 논의(1단계)
- 청렴교육위원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설립(1~2단계)

□ **청렴교육·연구 지원센터(가칭) 설치**

- 청렴교육·연구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역할 논의(1단계)
- 청렴교육·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별 거점 청렴교육·연구지원센터 선정(1~2단계)
- 각 지원센터간 네트워킹 작업(1~2단계)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렴교육위원회 구성방식 및 역할 논의	구성방식 및 역할 논의						
청렴교육위원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설립	제도적근거 마련	청렴교육위원회 설립					
청렴교육·연구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역할 논의	구성방식 및 역할 논의	청렴교육·연구지원센터 설치					
		- 거점센터 선정 - 네트워킹 작업					

청렴교육 과정 확대

1 과제설정의 배경

- 공직자 중심에 치우친 청렴교육은 전사회적 청렴사회문화 확산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정규교육과정에서 청렴교육 관련 과정의 확산이 미비하여 사회구성원의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부패발생에 대해 사전적·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상별 청렴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개인의 청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교육과정의 확대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청렴의식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 균형점을 낮추어 청렴신뢰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직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청렴 교육과정 제공으로 청렴의식을 생활 속에서 내재화하여 부패로 인한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청렴교육과정의 확대를 통한 청렴 소프트웨어 형성으로 국가 전체의 반부패청렴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공직 생애주기 청렴교육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정 재검토 및 개선방향 설정(1단계)
- 공직 생애주기(공직진입 전, 공직 입문, 공직 과정, 퇴직 전후) 청렴교육과정 개설(1~2단계)
 - 공직 전입 전 단계를 거치면 공직입문이 가능하게 되는 대상자(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1~2단계)
-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과정 이수 후 현업 복귀 의무화(1단계)

□ 개인 생애주기 청렴교육

- 어린이집·유치원 학생에 대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실시(2단계)
-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과정 확대 및 필수과목 선정(2단계)
- 대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관련 교양과목 유도 및 확대 (2단계)
-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에 청렴과목 개설 유도 및 확대(2~3단계)

□ 기업청렴교육과정 확대

-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의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및 사내 직원교육프로그램에 청렴 교육과정 개설 유도 및 의무화(1단계)
-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및 사내 직원교육프로그램에 청렴교육과정 개설 유도(2단계~3단계)
-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 청렴교육 과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2~3단계)
- 청렴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 지원방안 마련(2단계)

□ **지역별·전문직 청렴교육과정 확대**

- 전문직(의료종사자, 법조인,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및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청렴교육과정 이수 유도(1~2단계)
 - 전문직의 경우 연수프로그램 내지 보수교육 시 청렴교육을 실시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윤리위원회 산하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청렴교육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에 청렴봉사활동을 포함하도록 함(2~3단계)
 - 청렴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필요
- 대입 시 입학사정관제 활용을 통한 청렴성 평가 방안 도입(2~3단계)
-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 채용 시 청렴성 평가 방안 도입(1~2단계)
 - 청렴성 진단 지표의 개발 및 보급 후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청렴성 평가 방안 도입 유도
- 행동강령 위반자 청렴교육 이수 후 평가 실시(2~3단계)
- 공직 진입 단계 전(경찰대, 육사·해사·공사, 사법연수원 등) 청렴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체계 도입
 - 순위를 매기는 평가체계가 아닌 청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고위공직자의 경우 역량평가체계에 청렴성 지표를 포함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 (2단계~3단계)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공직생애주기 청렴교육	공직자청렴 교육과정 재검토 각급 교육기관 교육방안 마련					
		공직생애주기 청렴교육과정 개설				
		공직입문대상자 청렴교육 의무화				
		행동강령위반자 청렴교육 의무화				
개인생애주기 청렴교육			미취학어린이 청렴교육 프로그램 실시			
			중고등학생 청렴교육과정 확대 및 필수과목 도입			
			대학교육 과정 청렴관련 교양과정 개설 유도 및 확대			이행사항 점검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청렴교육과목 개설 유도			이행사항 점검
기업청렴교육과정 확대		공직유관단체 청렴교육과정 개설 유도 및 의무화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민간기업 청렴교육과정 개설 유도	이행사항 점검 및 확대유도		
		청렴교육과정 개설 기업 지원방안 마련				
지역별·전문직 청렴교육과정 확대		전문직 청렴교육과정 이수 유도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유도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청렴교육과정 이수 유도			
청렴교육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청렴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봉사활동에 중고생 청렴 봉사활동 포함			
				대학입학 시 청렴성 평가 도입		
			행동강령위반자 재교육 평가체계 마련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 인재 채용 시 청렴성 평가방안 도입			
			공직입문대상자 청렴교육 평가방안 도입			
			고위공직자 청렴성 평가 역량평가체계에 도입			

대상별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1 과제설정의 배경

- 청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렴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학습자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청렴교육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렴교육 체감 효과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상별 청렴교육 과정에 적절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청렴사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교육과정의 질적 담보를 위한 다양한 청렴콘텐츠의 개발
- 공직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청렴 교육과정에 적절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의 체감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콘텐츠 개발
 - 대상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단계)
 -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대상 콘텐츠 개발
 - 공직대상자 콘텐츠 개발
-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청렴교육콘텐츠 개발
 - 청렴캠프 및 청렴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1~2단계)
 - 청렴인물 여행 프로그램 개발(1~2단계)
 - 청렴사적지 수학여행 프로그램(1~2단계)
- 청렴 공개강좌(open lecture) 개발 및 보급
 - 청렴 공개강좌를 개발하여 청렴 플랫폼에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1~2단계)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콘텐츠 개발	교육콘텐츠 실시	개발용역	용역 구축	결과 반영	콘텐츠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청렴교육콘텐츠 개발	청렴봉사프로그램 개발						
		청렴인물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렴사적지 개발 및 여행프로그램 개발					
청렴 공개강좌(open lecture) 개발 및 보급		청렴 공개강좌 개발 및 보급					

청렴교육 지원을 위한 교원양성 체계 구축

1 과제설정의 배경

- 청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청렴 마인드를 내재한 교원이 필요함
- 청렴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체계적 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청렴교육 강사의 양성화를 통해 향후 청렴교육 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교육과정 확대, 청렴교육콘텐츠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면 이를 제대로 학습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이 필요하게 되며 청렴 마인드를 내재한 교원 확보는 학습자의 청렴교육 체감 효과 증진과 더불어 청렴교육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임
- 증가하는 청렴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청렴교육강사의 질 제고 및 양성화가 필요하며 청렴교육 교원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청렴 교육 교원 양성 기반 마련

- 사범대 및 교육대학 그리고 교사임용 청렴교육프로그램 개발(1단계)
- 예비교사과정인 사범대 및 교육대학 과정에 청렴교육과정 반영(1~2단계)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 부기준」 개정을 통한 청렴교육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 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청렴교육을 포함하여 교원취득과정의 필 수교직 과목화
- 교사임용연수과정 및 자격연수 과정 청렴교육 강화(2단계)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연수과정에 청렴교육 포함
 - 신규채용시 청렴윤리 교육 의무화(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 교직입문을 위한 교직자 청렴 서원식 운영
 - 교장 및 교감, 교육행정직 청렴교육 연수 의무화
- 교육공무원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3단계)
 -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원복무규정을 도입하여 교육기본법의 입법정신 실현
 - 교원행동강령(가칭) 제정 및 시행
 - 교육자 청렴도 진단모델 개발 및 평가 시행

□ 청렴교육강사 양성화

- 청렴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1단계)
- 청렴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청렴교육강사 활동(2단계)
- 청렴교육강사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및 환류(2~3단계)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렴 교육 교원 양성 기반 마련	예비교원 청렴교육프로그램 개발						
	각 방안에 대한 관계 기관 논의 및 공청회	- 청렴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및 규정 개정	청렴교육과정 확대				
		- 예비교사 청렴교육과정 시범실시					
		- 신규채용 시 청렴 윤리교육 의무화 - 교원 연수과정 청렴교육 도입 - 교직원 청렴서원식					
	- 교장 및 교감, 교육행정직 청렴교육 연수 의무화						
	- 복부규정 및 교직원 행동강령 도입에 대한 관계기관 논의 및 공청회 - 교육자 청렴도 진단모델 개발 논의	- 교직원 복부규정 도입 - 교직원 행동강령 도입 및 시행 - 교육자 청렴도 진단 실시 및 평가					
청렴교육강사 양성화	청렴교육기관인증제도 개발 및 근거 마련						
			청렴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 이수 후 청렴교육강사활동				
				청렴교육강사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및 환류			

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구축

1 과제설정의 배경

- 청렴사회문화 확산은 구성원의 청렴 마인드 내재화와 청렴의식 제고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청렴홍보는 중요
- 일방향적인 홍보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구성하여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통한 청렴홍보의 효과 극대화가 필요
- 따라서 청렴사회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청렴홍보 Killer Application 개발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홍보는 개인의 청렴 마인드 제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사회 구성원과 청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청렴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청렴사회문화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하고자 함
- 일회성 내지는 행사성 홍보 전략을 지양하고 구성원간 소통이 가능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청렴사회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청렴문화축제 추진

-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 가치에 대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으로서의 청렴 문화축제 추진
 - 청렴문화축제를 통한 청렴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청렴의식 확산에 기여
- 청렴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1단계)
- 청렴문화축제 실시(2단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청렴 홍보

- 청렴플랫폼 내에서 SNS를 활용한 청렴홍보(1단계)
- 청렴 앱 개발 및 보급(1~2단계)
 - 스마트 폰을 활용해 누구나 청렴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렴 사회문화 확산 가능
 - 에어태그 등을 활용한 청렴퀴즈 등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국민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

- 청렴퀴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EBS나 KBS를 통해 방영(2단계)
- 반부패 사건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2단계)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렴문화축제 추진	청렴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						
		청렴문화축제 추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활용한 청렴 홍보	SNS를 활용한 청렴홍보방안 개발	SNS를 통한 청렴홍보					
	청렴 앱 개발 및 보급						
국민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			청렴퀴즈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반부패 관련 사건 드라마 제작 및 TV 방영				

2. 청렴의식 함양

1) 필요성

□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사회전반의 총체적 청렴의식 함양이 요구

○ 국가·사회 전반에서의 청렴의식 개혁

-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임
- 선진일류국가는 공동체 모두가 共存·共生·共榮할 수 있는 3共의 사회임
-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참으로 괄목상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감소, 결과중시 풍토에 따른 절차·과정의 비민주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지수는 사회의 총체적 불신과 갈등의 위협요인으로 상존

○ 국민 기초생활 속의 청렴의식 확산

- 사회 전반에 퍼진 사회적 불건전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국민기초생활의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혁신이 요구됨(ex. 사교육문제, 관혼상제, 부동산투기, 향락과 향응의 접대문화, 지나친 연고주의, 불공정한 전관예우, 기타 기초생활질서유지 문제)
-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 개성과 능력이 상이한 하나의 인격체 이지만, 모두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공존·공생·공영의 사명을 띠고 있기에 새생활 민주시민운동이 요구됨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립

- 급속한 산업화와 급변하는 정치·행정환경 속에서 형성된 천민적 상류층의 상도를 넘는 일탈행위가 정치와 정부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짐(ex. 안철수 신드롬)
- 사회지도층이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정사회의 가치재정립이 요구됨

- 글로벌 무한경쟁과 인터넷을 통한 기업정보의 신속한 전파는 기업윤리가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
- 기업부패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과 기업의 투명·윤리경영 및 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
- 기업은 법을 준수하면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이지만, 세계화의 진전과 기업의 영향력 증대로 기업의 무한 신뢰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ex. 애플모빌사, 도요타 자동차 리콜)

○ 자발적·적극적 청렴감시 활동

- 시민 모두가 청렴수호자로서 역할수행이 요구되며, 사회구성원 각자가 청렴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청렴수호자' 운동 추진

※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 순위를 보면, 제일 먼저 사고발생 약 1-2분 후에 차량견인을 위한 견인차량이 도착, 약 7-8분 후에 보험회사 차량이 도착, 약 10분 후에 경찰차량이 도착, 약 15분 후에 구급차량이 도착함. 견인차량의 경우는 사고 주변을 지나던 택시운전사가 견인차 회사에 신고(신고에 따른 일정액의 보상을 받음), 보험회사 차량이나 경찰차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신고, 구급차량의 경우는 사고차량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나 경찰차량이 신고함

- 시민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청렴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학교 등 감시활동 연계 지원

※ ex) ① (행정) 예산낭비감시, 주요 사업 감시활동, ② (기업) 회계투명성, ③ (교육) 촌지근절, ④ (정치) 매니페스토 운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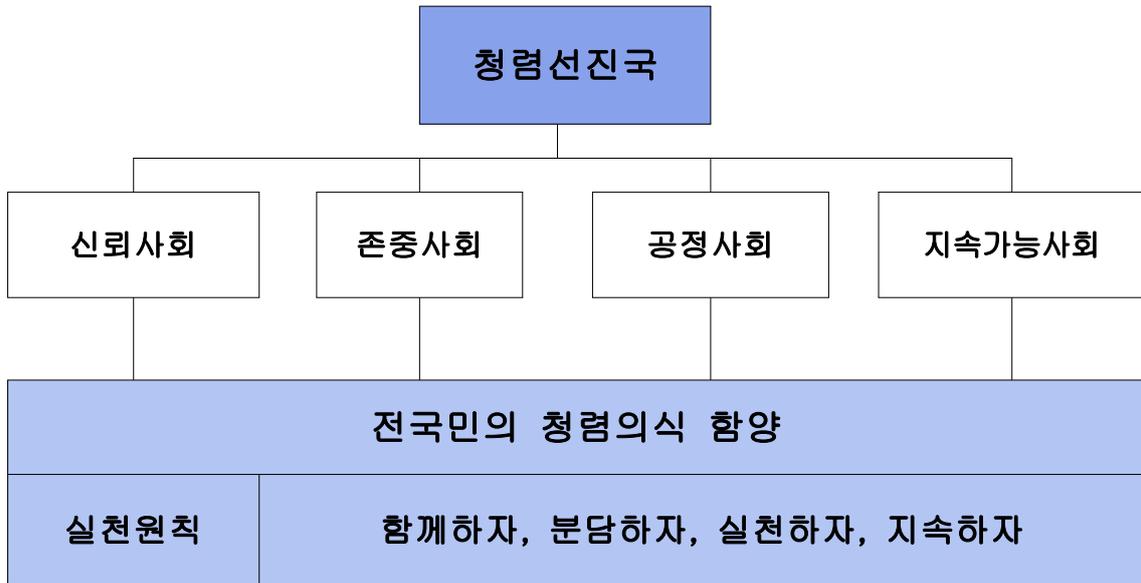
□ 청렴의식 함양의 궁극적 목적

- 전 국민의 청렴의식 함양은 청렴한 국가공동체 완성을 통한 청렴선진국 진입과 모든 국민의 지속가능한 행복향유에 있음
- 국민의 청렴의식 함양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사회는 맑은 사회,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 사회
 - 서로 믿는 맑은 사회: 신뢰사회, 깨끗한 사회, 겸양·겸손 실천
 - 서로 돕는 밝은 사회: 존중사회, 나눔·배려·봉사 실천
 -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 정의·공정사회, 사회적 형평성, 의리·희생 실천(행동하는 양심)
 - 공공의 목표와 임무에 충실한 지속가능 사회: 책임사회, 무실역행, 지행합일, 공동체정신 실천

□ 청렴의식 함양 방향과 실천원칙

- 청렴의식 함양 방향
 - 청렴의식 함양은 우리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모든 부패·부조리 요인들(물질적 양적인 팽창에 따른 주체성확립의 위기, 정치참여의 위기, 사회 안정의 위기 등의 현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정신의 질적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질적 개선의 주요 요인인 민주, 정직, 공정, 공영, 공익, 준법, 질서, 형평, 합리, 보편, 박애, 봉사 등이 상호 결합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음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원칙
 - 함께하자: 적극적 참여와 상생 협동의 실천
 - 분담하자: 개인과 조직역량에 따른 역할의 공평배분
 - 실천하자: 주어진 소임에 대한 철저한 책임완수
 - 지속하자: 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이행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추진체계와 실천원칙>



2)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청렴정책의 낮은 일관성과 후순위의 중요성

- 정부의 중장기 비전 부재, 청렴정책 추진기관의 기능축소, 관련 법령의 실효성 부족, 시스템적 견제균형 장치 역할부재
 - 국가기관 상호간 견제균형 장치 이완에 따른 핵심권력층 부패통제 곤란
-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팽배
 - 청렴가치는 국민이 공직봉사자에게 요구하는 최상의 가치이지만(헌법, 공무원법, 부패방지법), 당장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늘 우선순위에서 배제(청렴가치는 선진국 진입의 필요조건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 요망)
 - 사회 엘리트 계층의 先私後公·출세지향주의 견고화와 기득권과 특권의식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어려움

□ 기업, 청렴가치의 중요성(경쟁력) 저하

- 기업신뢰의 주요 동인은 사회적 자본의 구축으로 신뢰성, 진실성, 투명성 가치의 내재화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임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공시제도의 개선 요망. 이를테면, 이사회내 사외이사제도 비중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회계감사의견의 부적정 및 의견거절 비중 증가, 상장법인의 불성실 공시문제 잔존
- 기업의 진정한 발전은 성장과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이지만, 성장의 과실에 대한 진정한 나눔과 배려가 없는 기업은 고객신뢰를 잃게 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게 됨
- 기업의 책임성(Corporate Responsibility) 강화 요망
 - 청렴이 기업스스로의 자공심의 원천임을 망각하고 있으며 청렴한 환경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투명·윤리경영과 책임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의 윤리경영체제 도입과 국제기구·정부의 환경조성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ex. Fortune 500대 기업의 95%가 윤리경영체제를 도입)
 - 1999년부터 국제조직, 기업 등에서 제정한 256개 기업윤리강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크게 기업의 책임성 강화현상, 윤리강령 제정 및 실천경영시스템 구축, 자발적 윤리경영을 위한 인트라 제공 등이 주요 내용임

□ 국민, 청렴문화 실종 속에서 삶의 가치표류

○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지만 대응방안 부재에 관조적 태도

- 공정치 못한 게임의 룰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인식
- 부의 편중, 계층별 격차 심화, 비리와 부정의 만연, 산업화과정의 가치체계 혼란 등의 후유증의 상존

○ 국민의 청렴에 대한 몰이해로 주체적 정체성 상실

- 자신을 위한 삶과 이타적 삶 모두에 해이를 느끼게 됨
- 돌이켜 보면 경쟁과 성취를 위한 삶을 느끼게 됨

※ 우리나라 자살률(28.4%)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09년에 이어 '10년도에도 OECD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직업별 자살자 수 현황을 보면 무직 가사 학생의 자살률이 직업별 자살자 수 1위를 기록(56%)하고 있어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이 요구됨

3) 정책 제안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활성화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활성화 필요성

-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정치과정과 정부정책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행정 행위과정에서 청렴이 담보되지 않을 때 정치, 정부 또는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되어, 정치실패, 정책실패, 정부실패로 귀결됨
- 따라서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는 청렴한 정치·행정적 행위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사회지도층의 체계적인 청렴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또한 정부는

사회지도층의 청렴실천운동의 Trig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가 속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지도층 인사들을 존경과 신뢰를 보내게 됨
-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를 뜻함. 즉, 사회지도층이 이 정신의 바탕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숭선수범할 때 사회의 갈등을 조정·통합할 수 있고,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당한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 국무총리실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분야로 정치(31.2%), 법조(14.0%), 언론(12.1%),를 지목하고 있음. 우리사회 공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지도층의 부도덕(40.7%), 부의 편중과 세습(28.3%), 고용·복지의 불평등(12.2%)순으로 나타남

※ 사회지도층의 주체는 이 시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적 지위에 있거나 고위층의 인사,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치가와 고위공직자, 종교지도자, 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총수와 CEO, 학자와 교수 등 전문지식인, 판검사와 변호사 및 의사 등 전문직업인, 군의 고급지휘관 등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를 이끌어 가고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됨

○ 사회지도층의 숭선수범 실천기준 先公後私(개인이익보다 공익에 우선)

- 이를테면, 미국의 이익충돌금지 법안인 상원의 연방상원윤리규정(Senate Ethics Code)과 하원의 윤리규정(House Ethics Rules)의 핵심은 첫째, 공직과 기밀정보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둘째,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지녔을 때 이에 대한 투표를 삼감. 셋째, 농업문제에 관계된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형법상 연방정부와의 직접적 접촉을 금함. 넷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 고용이나 투자에서 실질적 재량권을 지니나, 이들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사회지도층의 청렴실천운동의 확립방안

- 사회지도층의 청렴실천운동의 확립방안은 사회지도층의 청렴실천운동을 어떻게 지속적·영속적으로 실행하고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청렴실천운동의 확립이 사회지도층과 고위 공무원의 경우는 청렴의무 이행 및 이익충돌규제 원칙의 제도화와 순응확보에 달려 있고, 기업의 경우는 투명경영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정도에 달려 있음
 - 사회지도층과 고위 공무원의 청렴의무이행 차원에서 공직자행동강령이나 청렴윤리헌장이 있고, 이익충돌규제로는 퇴직 후 활동 제한의 강화(퇴직 후 활동제한 또는 취업제한은 본래 기업과 공직을 오가면서 경력을 추구하는 이른바 '회전문(revolving door) 관행에 따른 비윤리적 로비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재산공개규제의 내실화(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노출될 때 이들의 행위가 보다 윤리적일 수 있음을 기대 함) 등이 있음
 - 기업의 경우 청렴의무이행 차원에서 기업윤리경영헌장과 투명경영실천운동 등이 있고, 존경받는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사회공헌 일자리 및 상품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착한 소비운동 등이 있음
- ※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게이츠는 창조적 자본주의 구축을 주장하며 “기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 사업을 창출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의 수익을 올리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의 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 또한 개선시키는 두 가지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다보스 포럼 기조연설 중에서)

□ 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운동

○ 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

- 청렴의식 확산은 글로벌 시대사조에 걸 맞는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

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운동

- 시민이 청렴운동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민주적이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역할(ex. 나눔 문화, 아름다운 가게, 눈 밝은 분들의 맑고 향기로운 운동 등 참여자와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 필요
- 청렴문화정착과 청렴의식제고를 위한 청렴운동 내실화 필요: 청렴운동 방향과 가치를 세우고, 이에 따른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주체별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하여야 함
- 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운동을 통해 사회적 불건전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관행·제도를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함양된 사회, 다양한 문화를 이해·포용하고 국제수준에 걸 맞는 미소·예절·칭찬·책임을 공유하는 여유로운 사회를 구축

○ 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운동의 추진방법 및 체계

-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활 속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이 주요 추진대상임: 답례·접대문화 개선 운동, 공정소비 운동, 생활 속 부패 개선 운동(ex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보조금 부정사용) 등
- 추진방법은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가까운 곳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실천함: 이 운동의 구체적 추진방법은 교육과 캠페인과 홍보임. 이를테면, 스마트코리아 리더십과정 신설, 차세대 지도자를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통한 연수교육 실시, 각종회의나 간담회 시 자체교육 실시
- 범정부 차원의 청렴운동 추진전략 필요(중앙-지방): 청렴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렴운동과 관련된 각 주체별 과제 등의 선정과 이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
- 추진체계는 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운동을 위한 권익위, 교육부, 검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권익위, 경찰서, 자치단체 주민센터, 각급 초·중·고등학교 등에 실행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함. 제3의 전문기관에서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차년도 이행계획에 반영함

○ 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운동의 확립방안

- '청렴의 날, 청렴의 달' 지정하여 전국민이 동참하는 청렴생활화 추진

※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청렴의 날로, 12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청렴을 놀이처럼 즐기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청렴축전 개최: 청렴의 달과 연계하여 청렴콘서트, 경연대회, 청렴박람회 등 행사실시, 국제세미나, 학술대회, 청렴 우수사례·인물 발굴

- 일상생활속 편법, 질서위반 등 생활속 부패근절을 위한 캠페인: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렴이 어렵지 않고 생활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인식

※ ex) 버스, 지하철 '양심승차의 날'을 운영하여 생활 속에서 쉽게 청렴을 실천하고, 자신의 양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문화 생활화, 핀란드는 버스, 지하철, 전차에 검표원이 없고, 주차장도 자동판매기나 주차 미터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스스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나 무임승차가 없음

- 생활 속 청렴교실인 청렴충전소(가칭) 운영·지원: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청렴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렴교실 운영

※ 체험프로그램, 청렴연극(권익위 연극대본 보급 등 지원), 청렴헌장 만들기

- 청렴연구학교 등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지원센터 마련: 자녀의 인성·청렴교육을 위한 관련 정보, 학부모 교육정보 지원

※ 우선 교과부, 여가부의 학부모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청렴교육정보 제공, 장기적으로 청렴충전소를 통해 학부모 교육 등 지원

※ 영국은 부모지원센터에서 자녀연령별 정보제공, 호주는 부모역할웹센터를 통해 자녀연령별 부모역할 관련 정책정보·전문가 정보 등 제공

□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운동

○ 실천운동의 필요성

- 관주도의 청렴정책에서 탈피하여 공공, 시민사회,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의 참여와 실천을 통

한 청렴의식 내재화

- 급격한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쟁과 갈등구조의 심화(상극의 사회), 무질서와 가치 전도(사회적 엔트로피현상, 사회지도자의 도덕적 해이, 개인의 일탈행동) 등의 문제 대두
- 개방화·국제화의 시대적 사조로 인한 출처를 추적하기 힘든 음성적 비밀자금흐름과 다양한 불법거래 증가문제: 다국적기업의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한 뇌물공여를 통한 비합법적 경영행위 증가, 개인·기업의 자금세탁과 국제적 범죄에의 악용 증가, 마약과 향정신약 물질의 불법거래 증가 초래
- 민주적 시장경제의 왜곡 현상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폐해로 사회·경제적 약자가 급증하면서 자본주의의 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적 천민계급이 형성하게 되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대안으로 법제도적 개선과 이행뿐만 아니라, 청렴세상 실천운동이 함께 요구됨

○ 우리나라의 현상과 문제점

- 현재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지나친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 팽배
 - ※ 공동체의 연대의식보다 경쟁에서의 개인적 승리를 더 높게 평가하고, 대등한 참여보다 엄격한 계급주의를 통해 배타적 고립적으로 타인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려 함. 정신적 풍요대신에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 배급사상을 우선시하며, 인간스스로가 만든 제도들과 시스템에 예속화 되고 있음(인간이 기계의 노예화)
-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를 존중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 즉, 우리의 사회체제는 자발성과 창의존중보다 복종과 동조를 발견하는데 치우치고 있어, 긍정적 사회구조적 변동이나 민주적 이념 및 문화적 전승 측면에 부정적 가치관 팽배
- 우리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과 형평성의 문제
 - ※ ex)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문제: 감세 규모가 연간 20조원으로 이는 월 200만 원 봉급자 83만3333명의 1년치 급여에 해당함. 이 부족분을 전세금과 술·담배에 대한 부세(賦稅)하겠다는 발상은 소득과 수익에 따라 부세하는 조세원칙에 반할 뿐

만 아니라, 울곡의 損傷益下의 사회적 형평성 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됨

- 청소년의 잘못된 가치관

※ ex) 전쟁이 발발하면 나가서 싸우겠다(10%/일본 41%)/ 청소년의 물질만능 풍조 팽배(부자면 성공한 인생(50%/일본 20%)/ 돈벌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23%/일본 1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경제의존도(대학 학자금 93%/결혼비용 87%/집마련 74%/생활비 26%)

○ 실천운동의 추진체계 수립

- 공동체가 함께하는 청렴세상 실천운동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은 나눔, 배려, 봉사과 이해의 가치 하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공생·공영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
- 사회지도층의 청렴세상 실천운동 추진체계는 청렴실천운동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 시기별, 이행가능성 및 과제의 파급효과별 추진체계를 달리하며, 청렴세상 실천운동을 보다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 기관, 기업 및 시민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과제추진을 위해 청렴세상 실천운동추진 조직을 결성함(가칭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권익위에서 추진위의 구성·운영체계 및 이행 계획과 예산을 지원 관리하고, 해당 각 부처는 실천운동의 세부 내용과 이행과정에 대해서 관장하며 이 운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하도록 함)
-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구와 지역별 하위 부서 또는 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 활동의 확산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렴세상 실천운동 연구지원평가센터 및 하위 네트워킹 체계를 확산시킴

○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의 성공요건

-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는 정치제도적 장치 확립요망

※ ex) 로크나 루소의 권력분립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한 개인, 집단, 세력으로 균형점이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청렴세상의 충분조건임. 우리 사회의 균형잡힌 질서와 조화를 위해 기관 간, 권력(세력)집단 간, 특정 조직간 견제·균형의 장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함

- 견제균형의 확립원칙은 ‘合理的 損傷益下’의 원칙이 요구됨. 즉, 공동체 경영과 질서유지에 있어서 상류층(부와 권력을 가진 계층)이 보다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을 일컬음. 이는 하류층의 존재에 의해서 상류층의 존재가 유지되기 때문임(ex. 그리스의 민주주의 발달, 신라 골품제도, 고려 귀족제도, 조선의 양반제도의 성공)
- ‘合理的 損傷益下’의 실천원칙이 성공하기 위한 대 전제는 사회지도층의 청렴사상에 근거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에 대한 하류층의 감사와 존경사상이 상호 공유될 때 성공할 수 있음
- 그 하위 전제로는 사회지도층의 진입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규정과 사회지도층과 하층민 간의 공동체 관련 정보공유와 상호간 소통이 원활하고, 공동체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진지한 숙의과정을 거친 토론과 집행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 전국민 청렴감시운동

○ 청렴감시운동의 필요성

-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 스스로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음
- 청렴감시운동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실현과 국민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국가권력, 재벌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
- 권력감시운동과 시민권리 보장운동: 청렴감시운동을 통해 권력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감시하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게 함
- 대 국회감시기능으로 의정감시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로 대의민주적 정치제도 발전과 의회정치 개혁에 참여
- 대 사법부감시기능으로 사법감시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국민에 의한 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목표 하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기관을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운동

- 대 기업감시기능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추구 차원에서 경제청렴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간접적인 시민감시활동(공익소송 제기 및 불매운동 등) 실시

○ 우리나라의 현상과 문제점

- 청렴감시에 필요한 법령상 한계: 2001년 6월 26일 부패방지법 제정과 동년 9월 3일 돈세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형식적 입법체계는 마련하고 있지만, 그 핵심내용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누락되어 ‘종합적인 부패방지입법’이 되지 못함
- 즉,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실질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 도입도 시급히 요구됨
- 공익제보자(Whistleblowers) 보호의 한계: 공익제보자 보호문제는 199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 몇몇 학자에 의해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되었지만 실제 제도로의 정착은 쉽지 않고, 부패방지법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그 시행결과는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못함
- 시민감사제도의 신분과 구조적 한계: 시민감사관제도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며 시장소속하에 있으며, 또한 대부분 자치단체의 시민감사관의 수는 5명 내외(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감사관이 5명)에 불과하여 각 전문분야별 입찰·계약·시공과정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에 한계
-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감사·조사를 실시함. 즉, 시민감사·주민감사청구 사항 감사 및 직권감사 실시, 시장·시의회·자치구청장의 의뢰사안 감사·조사실시, 집단민원 등 반복·고질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공공사업의 발주·입찰·계약·시공과정에서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전국민청렴감시운동 추진체계 수립

- 전국민청렴감시운동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청렴수호자로서 역할수행을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함에 있음. 즉, 모든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청렴해야

하며, 청렴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주체이며, '내가 바로 청렴수호자'운동의 추진 주체임을 명심해야 함

- 전국민청렴감시운동 추진은 공익제보자(Whistleblowers) 보호제도와 시민감사제도의 법제적 개선 하에 권익위가 공공부문 및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학교 등과 감시활동 연계 지원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각 부문별 감시활동체계와 주요 감시활동 내용으로는 ① 행정 부문의 예산낭비감시, 주요 사업 감시활동, ② 기업 부문의 회계투명성 감시활동, ③ 교육 부문의 촌지근절 감시, ④ 정치 부문의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등

□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미지 제고운동

○ 기업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 정보화와 세계화에 맞춘 기업 윤리 강조 :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기업이 하청업체를 착취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예전처럼 숨겨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이러한 행태가 드러날 경우, 강한 사회적 반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 이미지 및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원인이 됨.
- 최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은 기업의 투명성, 공개성, 창의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어 기업부문에서도 CEO의 윤리(투명)경영 확보 정도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 윤리경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지만, 조기 확산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이를테면, 인증서 부여, 신용평가지 가산점 부과, 정부조달물자 및 발주사업 입찰시 우대,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함
- ※ 국내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대부분의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위법이 아니면 비윤리적이 아니다”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윤리경영을 위기관리차원, 이미지 및 효율성 재고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윤리경영은 신뢰상실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방지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윤리경영 체계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향후 국내외적으로 경영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윤리경영의 경영전략화는 더욱 중요하고 기업이 강화하여야 할 과제임

○ 기업신뢰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임

- 친환경 제품, 투명 경영 기업 등 기업이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 정보화 시대에 맞춰 기업의 불법 증여, 부당 거래 등이 공개되고, 그 기업은 기업 이미지 및 경쟁력이 저하됨
- 투명한 기업윤리를 통한 기업 경영으로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은 깨끗한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음
- 기업의 투명 기업윤리 실천을 통해 민주 사회 구현이 가능해짐
- 불법이나 부당거래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 및 불매운동으로 확산됨

※ 한화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을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폭행하는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한화 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저하되고, 김승연 회장은 청계천 회장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였음

○ 기업윤리 사회공헌 및 사회 환원 기회 확대

- 기업이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 공헌 또는 사회 참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윤리 고취 및 기업 이미지 상승
 - 사회봉사 및 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 홍보 가능
 -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한 사회 지도층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 공생 관계 형성
- ※ 안철수 연구소의 안철수 소장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사회 공헌 및 사회 환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 투명한 기업윤리경영을 통한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

- 기업윤리가 확실히 잡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실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기업윤리 기준 건설, 시민들이 기업윤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한 후, 그에 맞는 기업윤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 기업윤리강령이 잡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정의 사회 구현: 기업 윤리는 기업이 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기업 윤리와 경영을 통해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정직한 기업 윤리를 기준으로 공산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 윤리강령을 통해 기업윤리를 꾸준히 사내 교육 진행
- 국제적 윤리 규정의 이행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기업 윤리 강화를 통해 국제 경제력 향상 및 국제 사이의 신뢰도 상승
- 올바른 충성: 사내에서 불합리한 명령이나 타 회사와의 거래 시, 불공정한 거래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상부나 감사실에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내 문화 구축 및 회사 시스템 마련
- 기업의 책임성 강화: 기업윤리 강화, 기업윤리 강령 제정 및 실천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기업윤리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환류를 책임지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구현

○ 사회 환원,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구축

-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규 제정: 많은 회사에서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1사1촌 결연이나, 정기적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직원 및 임직원들의 사회봉사의 무화,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사회에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환류 기능 및 사회 환원에 대한 의식 고취
- 사회 환원 및 공생 관계로서의 기업윤리 제고: 직원들에게 기업이 우선이라는 것보다, 사회 속의 어울림이 우선이라는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임직원들의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이 사회의 공생 관계에 관심이 있고, 환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음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활성화

1 과제설정의 배경

○ 사회지도층의 청탁과 관행 문제의 심각성

- 최근의 외교부 공무원 인사청탁이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인사청탁과 업무청탁 등의 불법·음성적인 청탁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 현재에도 인사청탁이나 업무청탁의 경우 대가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만, 불법·음성적인 청탁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이 쉽지 않고 청탁을 통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보아도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 더불어 불법·음성적인 청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개선과 확산이 필요함

※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자녀 부정입학, 교육감선거를 둘러싸고 벌인 교장·교감선생의 행태, 대기업 오너의 상속세 줄이기 위한 변칙·편법 증여행위, 국회의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 10배 상회(삼성, 현대, SK, 한진 등 4대기업 병역면제율이 56.5%/국민평균 22%)

○ 기업의 윤리경영 필요성 인식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내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반기업정서 쇄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윤리현장을 채택하여 기업활동에 있어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에 대한 마인드 제고 필요
- 부패는 최고관리층의 전략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론적·경험적 교훈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CEO의 윤리경영 실천선언운동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의지 확대 필요

○ 급속한 산업화와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형성된 상류층: 오블리스 없는 노블리스로 상류층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신분집단, 돈과 권력의 획득·유지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 팽배

○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통합의 순응을 확보함

- 고귀한 탄생과 고귀한 행동은 동치 될 때 존경 받을 수 있음

○ 청렴선진국 사례의 반면교사

※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고위층 자체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에서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으며, 6.25전쟁 때 미군 장성 아들 142명이 참전,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함. 1930년대 독점 석유재벌로 대중의 비난과 증오를 받았던 카네기는 오늘날 기부와 자선의 대명사로 재탄생, 빌 게이츠 재단과 M. D. 앤더슨 재단 사례 등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쇄신결의 및 청렴서약제 등 사회지도층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마련

- 고위공직자 퇴직 후 사회공헌 등 모범사례를 발굴, 전부처 확산
 - ※ 재능기부, 건전한 경조사, 공익단체·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 사례 등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결과 공동체의 질서와 추구하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가능
 -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행과 건강한 사회통합과 적극적인 참여의 유인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 천민자본주의의 폐해 극복을 통한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정착
 - 기업경영의 가치와 철학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공헌(사회적 환원)에 두며, 공정하고 정당한 선진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가의 사명감 고취

□ 사회지도층 자기혁신을 위한 문제점 진단

- 사회지도층과 공직사회 제도적 부패(Caiden)의 문제 진단
 - 조직 내의 실제와 다른 형식적 윤리조향을 규정·표방하고, 조직이 이들 조향의 위반을 묵인·장려하거나 숨기는 지를 진단
 - 지도층의 비리는 보호받고, 비리가 노출되었을 때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조직으로부터 희생당하는지를 진단
 - 부정직 또는 불성실이 공직자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정직한 공직자가 의지할 곳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심한 박대를 받지 않는지를 진단
 - 비리 적발에 공식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조직 내 비리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은 공직윤리에 대해 이율배반적 시각과 이익충돌에 관한 윤리불감증을 가지지 않는지를 진단

□ 사회지도층의 率先垂範과 先公後私 활성화 필요성 진단

-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익충돌을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고위 공직윤리가 지닌 실천적 의미가 확인되면, 상황적 접근에 기초한 윤리기준의 정립이 요구됨
- 공공의사결정의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성·중요성 차원에서 볼 때,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이 큰 고위 공무원 또는 사회지도층의 정책윤리 내면화 차원에서 자기혁신이 요구됨(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정책투명성 평가)
- 올바른 충성: 고위 공직자의 충성은 맹목적 혹은 무조건적 충성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의문스런 정책활동을 거부하며, 때로는 사직을 무릅쓰고라도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됨
- 품위유지: 고위 공직자의 행동은 하위공직자의 준거가 될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행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실질적 비리(위법)행위는 물론 외형상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삼감으로써 이를 하나의 윤리규범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실천운동

○ 배려·나눔(損傷益下)과 자기희생·봉사(先公後私) 실천

- 사회지도층의 자기혁신운동이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며, 이를테면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전쟁에 처하였을 때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달성할 수 있음
- 우리사회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불우한 이웃 및 장애인들을 위해 공동체가 귀중하다고 여기는 재정적 기부, 봉사 및 새로운 고용창출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음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모범사례 발굴·확산

- 재능기부(Pro Bond), 건전한 경조사, 공익단체·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사회공헌 사례 등
-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각기 전문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공동체나 구성원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것임. 이를테면, 복잡·다양한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이론적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치종합성, 가치중립성의 견지에서 문제해결 모델을 제시하는 것
-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자기의 위치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 공익과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솔선수범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할 때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룰 수 있음

○ 사회지도층·고위공직자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마련

- 국무위원, 고위공직자 청렴채신 결의 및 청렴서약제
- 사회지도층의 청렴실천운동으로는 공공부문의 윤리강령이나 기업윤리경영헌장 제정 확산 및 실천운동, 청탁·관행 금지운동, 답례·접대문화 개혁운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전담부서 확산, 사회적 일자리 확대운동, 청렴아이돌 개발 등

○ 사회지도층의 청렴실천운동의 추진체계 수립

- 사회지도층의 청렴실천운동 추진체계는 청렴실천운동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 시기별, 이행 가능성 및 과제의 파급효과별 추진체계를 달리함
- 청렴실천운동을 보다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 기관, 기업 및 시민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과제추진을 위해 청렴실천운동추진 조직을 결성함(가칭 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 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구와 지역별 하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활동의 확산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렴실천운동 연구지원평가센터 및 하위 네트워크 체계를 확산시킴

○ 재능기부, 사회공헌 등 솔선수범 활동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

○ 우수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사회지도층의 나눔·배려와 자기희생·봉사 실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학습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실천운동전개 및 성과평가와 피드백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우리사회 교재 및 사례 개발을 통한 현상분석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모범사례 발굴·확산	모범사례의 발굴기준과 확산방안 마련		모범사례 교재개발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사례의 확산·전파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		과정개설과 교육·학습				
			실천운동전개 및 성과평가와 피드백				
사회지도층의 청렴윤리의식 제고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실천운동전개 및 성과평가와 피드백				
	우리사회 현상분석						
	청렴채신 결의 및 청렴서약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캠페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결과 평가 및 반영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						
	우리사회 현상분석					전사회적 확산·전파	
			청탁근절, 답례 및 접대문화 개선, 기부문화 활성화 등				
우수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우수자 포상기준과 근거 마련						
	포상자의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매년 청렴의 날 포상				
						포상 후속조치 발표 및 확산·전파	
	우수자 포상에 대한 적극적 홍보		포상결과 공표				

생활 속 청렴의식 확산운동

1 과제설정의 배경

- 국민생활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단호한 법집행 요망
 -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 국민생활 기초질서확립이 어려움
 - 우리나라의 법질서지수가 66개국 중 30위권
 - 불법시위를 통한 의견수용률(42.4%)이 합법시위 수용률(28.2%)보다 높음
 - 법 앞에 평등치 못한 사회로 인식: 돈과 권력이 통하는 사회로 인식
-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상실
 -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지수가 3.2로 낮선 사람에 대한 지수 4.0보다 낮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부자가 되는 데는 물질적인 자본의 역할은 1-3%이며 도로·항만·기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17%에 불과하나, 나머지 80%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분석함
 -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실천 요망: 겸손하고 공정한 일처리,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함, 청렴성을 견지한 공사의 명확한 구분
- 21세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사회적 자본은 법치주의 확립, 부패방지 정책의 성공, 공정한 시장경제원칙의 확립, NGO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확대 등을 통해 축적됨
- 사회적 불건전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관행·제도의 혁신요망
 -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사교육제도와 입시제도
 - 구폐의 잘못된 유습을 지속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관혼상제
 - 공정경쟁과 건전한 투자를 대체하는 증권·부동산 투기
 -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성 도박행위 팽배
 - 건전한 청렴문화를 유린하는 접대-향응문화 팽배
 - 연고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실·낙하산 인사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반부패·청렴을 일상 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렴의식 생활화
- 국민기초생활질서 이행가능성 제고
 - 국민의 기초질서 인식제고를 통한 준법정신 함양
 - 법을 잘 지키고 순응하는 사람이 이익이 되는 사회
- 정부나 정부정책의 신뢰제고를 통한 정책집행 성공
 -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실천
 - 정부의 사회적 자본축적과 국민의 참여확보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 사회적 불건전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관행·제도의 혁신
 - 사교육제도, 부동산투기, 향응-접대문화, 정실인사, 사행성 도박행위 등의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 잘못된 관행·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접대·향응문화 개선운동: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더치페이 운동
 - 고위공직자(정치인 포함)의 경우 경조사 관련 부조금 안 받기 운동 실천(친인척 제외, 만약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받을 경우 이를 기부하도록 유도),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전문직)의 솔선수범 후 일반시민까지 확대
- 사행성 도박·투기행위 근절운동
 - ※ 최근 인터넷 게임성행으로 게임중독증에 빠진 청소년 급증, 성인의 무절제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폐습 확산과 위화감조장(마늘밭 5만원권), 사회 전반에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투기심리 팽배

□ 국민기초생활 실천운동

- 일상생활 속 편법, 질서위반 등 생활 속 부패근절을 위한 캠페인
 -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렴이 어렵지 않고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인식
 - ※ ex) 버스, 지하철 '양심승차의 날'을 운영하여 생활 속에서 쉽게 청렴을 실천하고, 자신의 양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문화 생활화, 핀란드는 버스, 지하철, 전차에 검표원이 없고, 주차장도 자동판매기나 주차 미터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스스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나 무임승차가 없음
- 생활 속 청렴교실인 청렴충전소(가칭) 운영·지원
 -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청렴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렴교실 운영

※ 체험프로그램, 청렴연극(권익위 연극대본 보급 등 지원), 청렴헌장 만들기

□ '청렴의 날, 청렴의 달' 지정, 전국민이 동참하는 청렴생활화 추진

※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청렴의 날로, 12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청렴을 놀이처럼 즐기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청렴축전 개최하고, 청렴의 달과 연계하여 청렴콘서트, 경연대회, 청렴박람회 등 행사실시, 국제세미나, 학술대회, 청렴 우수사례·인물 발굴

□ 청렴학교교육 활성화

- 대학입시에서 청렴·봉사점수 반영: 청렴봉사활동과 청렴캠프 참여(병원, 양로원 등), 청렴 사적지 답사 및 청렴독후감, 청렴강의 이수 등 반영방안 다양화, 청렴인성지표 개발

- 청렴연구학교 등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지원센터 마련: 자녀의 인성·청렴교육을 위한 관련 정보, 학부모 교육정보 지원

※ 우선 교과부, 여가부의 학부모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청렴교육정보 제공, 장기적으로 청렴총전소를 통해 학부모 교육 등 지원

※ 영국은 부모지원센터에서 자녀연령별 정보제공, 호주는 부모역할웹센터를 통해 자녀연령별 부모역할 관련 정책정보·전문가 정보 등 제공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관행과 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준법생활 실천방안 관련 문제점 분석		공정생활 실천운동의 전략적·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분석					실천운동 정착
	실천운동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이행의의 및 방안에 대한 홍보·교육			
	구체적 실천계획 작성 및 홍보					
국민기초생활 실천운동	기초생활 질서사범 캠페인 실시 근거 및 이행계획 수립		캠페인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결과 반영
	청렴교실인 청렴충전소(가칭) 운영근거 및 운영계획 수립					
청렴의 날 청렴의 달 지정, 청렴생활화 운동	청렴의 날과 청렴의 달 지정 근거 및 지정 방안 마련		청렴의 날 청렴의 달 운용 세부계획 이행 및 이행결과 평가			
						제도로의 정착
						평가결과 공시 및 반영, 확산·전파
	청렴생활화 운동 세부계획 수립					
청렴 학교 교육 활성화	대학입시 청렴·봉사점수 반영 근거 마련 및 반영계획 수립		교과부와 여가부의 관련 규정 법제화			시험 적용 및 운용
			관련 운영기구 설립			평가·환류를 통한 제도 확립
						기관형성
	학부모 교육지원센터 운영 근거 및 운영계획 마련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운동

1 과제설정의 배경

-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방향성 상실의 문제: 갈 곳을 잃은 사회(上濁下不淨): 지도층의 비리와 부도덕, 구성원의 성공에 대한 냉소와 불신, 반목과 갈등과 무질서가 심화, 잘못된 교육: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제1위 - 돌 지나면 공부시작, 조기유학 세계 1위(기러기 아빠도 감수)/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 노후 대비 저축보다 당장의 자녀 교육비 지출이 우선(과출부 하면서 자녀 과외비 마련)
- 법 지배원칙의 위기: 법의 정신을 무시한 법적용의 오남용은 독직이나 다름없고, 자기절제를 상실한 공권력 행사는 시민의 자유와 창의성을 위축시켜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될 것임
- 빈번한 권력남용의 문제: 우리 지도층은 납세의 의무를 탈세의 권리로 이용하고, 국방의 의무는 예외적 차별적 의무로 악용하고 있고, 범법 행위를 금전과 권력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민·관·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공생·공영의 가치 실현
- 사회 전구성원의 행복한 청렴세상 실천운동 참여로 사회적 형평성 달성
- 우리사회 특정계층과 특정집단의 고질적인 권력형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운동을 통해 계층 간 위화감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 실현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한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향상

분야별 실천과제 선정, 매년 분야별 주요 과제를 확정·추진

○ (공공) 청탁 안하고 안받기운동(上淸下淸 운동)

-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上淸下淸운동을 통해 사회 전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함

○ (사회) 끼리끼리문화 청산운동(易地思之 운동)

-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연고주의임. 학연·혈연·지연에 의한 끼리끼리문화임. 易地思之 운동으로 이 문화의 청산을 통해 공동체의 투명성과 통합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정치) 청렴공약실천서약운동(損傷益下 운동)

- 사회지도층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자신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렴공약실천서약을 하며, 이는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소외계층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임. 즉, 損傷益下 운동으로 상류층의 이익을 덜 어서 하류층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수행을 의미함

○ (기업) 투명경영실천운동(明鏡止水 운동)

신뢰·투명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 분야별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우수사례 확산·보급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

○ 기부에 대한 감성적 호소가 아닌 이성적인 설득을 통한 기부문화 정착

※ ex) 기부자들이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를 공개하고, 기부의 기여금만큼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거나, 기차나 항공기를 이용 시 할인 및 편리를 제공함(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워렌 버핏 등)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범국민청렴실천운동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취지 및 근거 마련과 홍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령제정, 기관형성				
						평가결과 반영	
			실천운동 전개 및 평가				
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	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 근거 법령제정 및 개정		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 이행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이행계획 수립		이행결과 평가				
						제도로의 정착	
	홍보 및 교육실시						
끼리끼리문화 청산운동	끼리끼리문화 청산운동 근거 법령제정 및 개정		청산운동 이행 및 이행결과 평가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이행계획 수립						
						제도로의 정착	
	대상자에게 홍보 및 교육실시						
청렴공약실천서약운동	청렴공약실천서약운동 근거 법령제정 및 개정		운동 이행 이행결과 평가				
	이행계획 수립, 대상자에게 홍보 및 교육실시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제도로의 정착	
	투명경영실천운동 근거 법령제정 및 개정, 이행계획 수립		운동이행 및 이행결과 평가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제도로의 정착	
	대상자에게 홍보 및 교육실시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 근거 마련		기부실천 및 이행결과 평가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전파	
	이행계획 수립방안 마련						
	대상자에게 홍보실시						
						제도로의 정착	

전국민 청렴감시 운동

1 과제설정의 배경

-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가권력 감시 및 국민 권리침해 보호
 - 대 정부감시를 통한 비대화된 행정의 비효율·비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 대국회 감시를 통한 의회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확립
 - 대 사법부감시를 통한 ‘국민에 의한 법, 국민에 의한 사법’ 확립
-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권력 감시기구설치 요망
 - 행정부 권력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국민감시기구로 국정감시위원회(가칭), 국회감시기구로 의정감시위원회(가칭), 사법부감시기구로 사법감시위원회(가칭) 설치요망
- 재벌의 횡포로부터 국민재산권 보호
 - 현대는 무한경쟁체제의 글로벌 기업화에 따른 재벌의 횡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가 빈발가능
 -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창출과 기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법규제정 및 개정을 위해 입법 부 및 행정부 포획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에 따른 보호
 - 반환경적 기업 활동으로 공해 등 사회적 비용초래에 따른 비용부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 기업의 회계투명성, 공시투명성, 책임경영, 주주권의 보호와 관련한 투명성이 확보된 기업 경영의 문제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 기업의 환경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관형성 요망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환경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 청렴감시기구 설치요망
 - 기업 외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자문·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전담할 기구설치 요망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전 국민 청렴감시운동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청렴수호자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 ※ 사회구성원 각각이 청렴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청렴수호자’ 운동 추진
- 대정부 및 국가기관의 청렴감시운동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권리 보장
- 대의회 청렴감시운동을 통해 원칙과 신뢰를 전제한 민주주의 발전과 의회정치 개혁
- 대사법부 청렴감시운동을 통해 사법기관의 오판을 막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 확립에 기여
- 대기업 청렴감시운동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막고 경제민주주의의 실천에 기여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대정부 청렴감시운동

- 가칭 국정청렴감시위원회 설치
- 부처별 국정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 국정청렴감시규정 제정(※ 각 부처별 시행세칙 및 규칙(매뉴얼 등) 마련)
- 국정청렴감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대의회 청렴감시운동

- 가칭 의정청렴감시위원회 설치
- 의정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 의정청렴감시규정 제정(※ 시행세칙, 규칙 및 매뉴얼 등 마련)
- 의정청렴감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대사법부 청렴감시운동

- 가칭 사법청렴감시위원회 설치
- 사법부 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 사법부 청렴감시규정 제정(※ 시행세칙, 규칙 및 매뉴얼 등 마련)
- 사법부 청렴감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대기업 청렴감시운동

- 가칭 경제청렴위원회 설치
- 기업(재벌) 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 기업(재벌) 청렴감시규정 제정(※ 규칙 및 매뉴얼 등 마련 유도)
- 기업(재벌) 청렴감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대정부 청렴감시운동		가칭 국정청렴감시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마련		부처별 국정청렴감시 이행계획 수립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	
		부처별 국정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홍보 및 교육, 지침 시달				
		국정청렴감시규정 제정 및 평가 기준 마련		이행, 평가				
		국정청렴감시위원회 설립						
대의회 청렴감시운동		가칭 의정청렴감시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마련		의정청렴감시 이행 계획 수립			평가결과 반영 및 전파	
		의정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홍보 및 교육, 지침 시달,				
		의정청렴감시규정 제정 및 평가 기준 마련		이행, 평가				
		의정청렴감시위원회 설립						
대사법부 청렴감시운동		가칭 사법청렴감시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마련		사법청렴감시 이행 계획 수립			평가결과 반영 및 전파	
		사법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홍보 및 교육, 지침 시달				
		사법청렴감시규정 제정 및 평가 기준 마련		이행, 평가				
		사법청렴감시위원회 설립						
대기업 청렴감시운동		가칭 경제청렴감시위원회 설치 근거 기준 마련		경제청렴감시 이행 계획 수립			평가결과 반영 및 확산	
		경제청렴감시위원회 설립		홍보 및 교육, 지침 시달				
		경제청렴감시 기준, 대상과 범위확정		이행, 평가				
		경제청렴감시규정 제정 및 평가 기준 마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미지 제고운동

1 과제설정의 배경

- 기업신뢰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임
- 기업윤리준수와 사회적 기업이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이미지로 자리매김
 -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참여를 통해 기업 윤리 고취 및 기업이미지 상승
 - 사회봉사 및 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 홍보 가능
 -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한 사회 지도층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 공생 관계 형성
- 정보화와 세계화에 맞춘 기업 윤리 강조
 -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기업이 하청업체를 착취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예전처럼 숨겨지지 않고 있음
- 투명한 기업윤리를 통한 기업 경영으로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은 깨끗한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투명한 기업윤리를 통한 경영으로 공정한 기업 문화 정착
- 기업자산의 자발적 사회 환원,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구축
- 기업윤리 확립을 통한 기업신뢰 구축
- 투명한 기업윤리를 통한 기업 경영으로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정직한 기업 윤리를 기준으로 공산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 윤리강령을 통해 기업윤리를 꾸준히 사내 교육 진행
- 국제적 윤리 규정의 이행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기업 윤리 강화를 통해 국제 경제력 향상 및 국제 사이의 신뢰도 상승
- 기업윤리 강화, 기업윤리 강령 제정 및 실천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투명·공정한 기업윤리 준수운동 실시
 - 운동실시 본부를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협의체로 구성
 - 운동추진 전략과 기준 및 대상과 범위확정
 - 운동추진 규정 제정(※ 각 추체별 시행세칙 및 규칙(매뉴얼 등) 마련)
 - 운동추진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기업의 사회봉사운동 실시
 - 기업의 사회봉사운동 추진 본부 구성
 - 기업과 병원 및 사회시설센터와 연계망구축을 통한 지원활동
 - 봉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교육자료로 활용
 - 봉사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기업의 사회적 기부운동 실시
 - 기업의 사회적 기부운동 여건조성과 전략수립
 - 기업기부문화촉진센터 구성(자율적 구성 및 관리)
 - 지원과정 및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교육자료로 활용
 - 기부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신뢰 구축
 - 기업윤리경영실천연합 구성: 범 기업적 차원에서 기업윤리경영과 문화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윤리 강화 및 윤리 강령의 실천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국내적 윤리강령과 교육실시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청렴감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국제적 윤리 규정의 이행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기업 윤리 강화방안 마련
 - 기업의 책임성 강화: 기업윤리 강화, 기업윤리 강령 제정 및 실천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투명·공정한 기업윤리 준수운동	투명운동실시 본부구성		운동추진 전략/ 기준/규정 제정			
	운동추진 대상과 범위확정					
			주체별 운동추진 계획수립			평가기준 마련/이행/평가
기업 사회봉사운동	사회봉사운동 추진 본부 구성					
			사회시설센터와 연계망구축			
			언론보도/교육자료 활용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규정마련			평가기준 마련/이행/평가
기업의 사회적 기부운동	기업기부문화촉진센터 구성					
			기업의 사회적 기부운동 여건조성과 전략수립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교육자료 활용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평가기준 마련/이행/평가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신뢰 구축 방안	기업윤리경영실천연합 구성					
	국내적 윤리강령과 교육실시					
	국제적 윤리 규정의 이행방안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기업윤리 강화방안 마련					
		대기업에 대한 청렴감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3. 청렴 플랫폼 구축

1) 필요성

□ 스마트 시대 청렴 플랫폼 국가 전략의 필요

- 스마트 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하여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 즉 場을 만들고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새로운 개방형의 가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청렴 가치를 창출하는 청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교류와 혁신, 협력을 통하여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미래를 조성해 나갈 필요
-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스마트 시대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이슈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

□ 국제적 경제위상에 맞는 반부패 청렴성 필요

-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10년 10점 만점에 5.4점으로 '09년에 비해 0.1점 하락하였으며, 순위로는 '09년에 이어 '10년에도 180개국 중 39위로서 경제수준에 비하여 반부패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자본 인프라는 월등히 취약한 형편임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청렴의식을 정립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할 필요

-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협약체결,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국제규범이 확대되고 이의 이행체계도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강화되는 국제규범에 발맞추어 한국도 모든 부문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부패방지 민관협력 플랫폼을 제도화할 필요

-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효율성 있는 반부패 활동 전개가 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협력으로 인해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부패방지 민관협력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의 개념 >

□ 거버먼트 2.0과 플랫폼으로의 정부

- 공공정보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먼트 2.0 운동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여러 나라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거버먼트 2.0이란 용어는 윌리엄 에거(William Egger)의 동명 저서를 통해 처음 등장하였는데, 그는 거버먼트 2.0을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과 정부 행정의 결합으로 설명
- 웹 2.0의 대부라 불리는 오라일리(O'Reilly)는 에거의 개념을 적극 옹호하며, 이를 2.0 패러다임과 공공서비스의 만남으로 정의함. 그는 2009년 '거브 2.0 회의(Gov 2.0 Summit)'를 통해 기존 정부의 공공서비스 행태를 자판기에 비유하면서,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공유를 가능케 하는 개방된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함.

□ 최첨단 경영전략으로서 플랫폼 전략

- 플랫폼 전략은 관련 그룹을 '장(場)', 즉 플랫폼에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의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출처: 히라노 아쓰시 칼, 안드레이 학주. 2010)

- 플랫폼 전략

- * 관련이 있는 여러 그룹을 '장', 즉 플랫폼으로 불러모아
- * 관계 형성이나 고객 모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 * 검색이나 광고 등의 비용을 줄여
- * 입소문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
- * 참가자들의 인맥, 지혜,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
- * 참가한 모든 그룹이 윈-윈 관계를 구축

- 성공하는 플랫폼의 3가지 특징

- * 스스로 존재 가치를 창출. 플랫폼에 참가하는 여러 그룹에게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 대상이 되는 그룹 간의 교류를 자극
- * 통치: 플랫폼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퀄리티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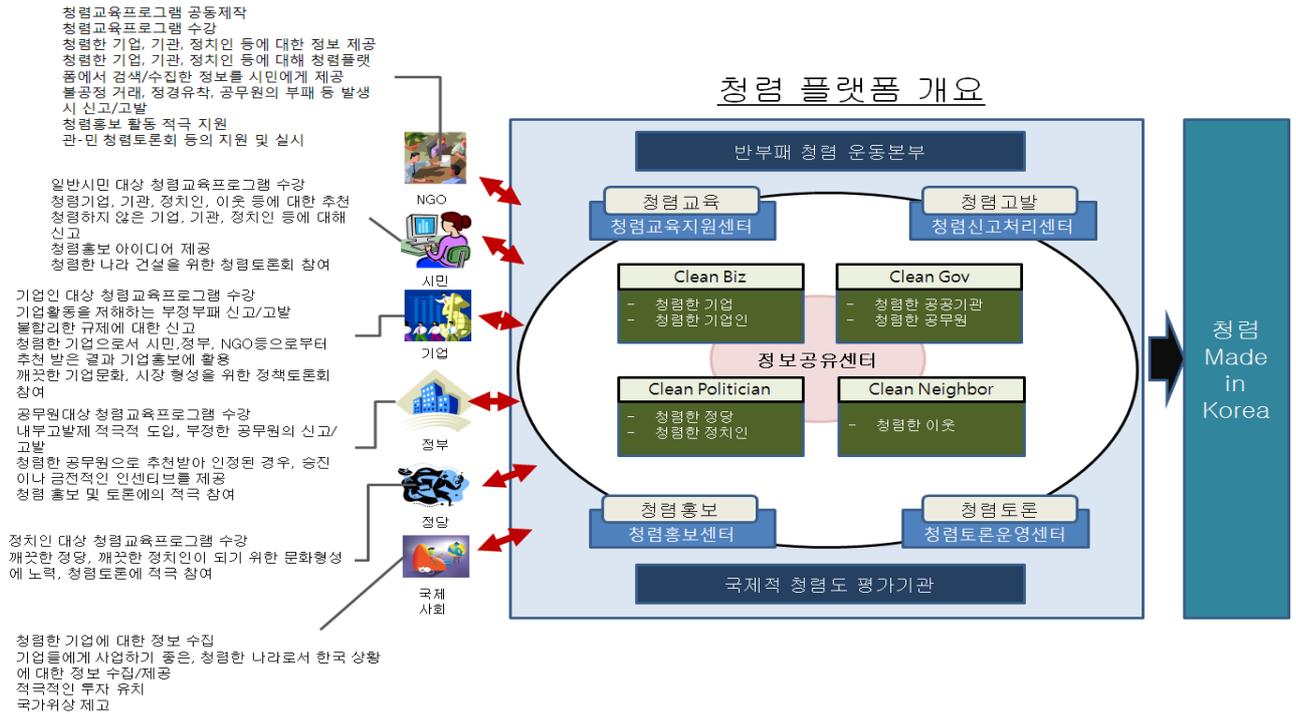
2) 현황 및 문제점

- 불균형 경제성장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부패가 구조적이며 (entrenched corruption) 조직적이고 내적인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는 미성숙 문화가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
 - 우리나라 시민의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의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 법적 제도적 준비를 통해 낮은 균형에서 높은 균형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숙 문화와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민관협력,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
- 국가경쟁력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
 - '10년 9월에 발표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4.93점(7점 만점)으로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여 전년(133개국 중 19위)보다 3단계 하락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자금의 유용(56위), 비정상적인 비용 및 뇌물(51위), 정부정책수립의 투명성(111위), 정부규제 부담(10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위) 항목의 평가가 낮게 나옴
- 반부패 국제협력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동향
 - 국제금융관련 기구들, 국제상공회의회 및 무역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부패행위로 부터 나온 불법적 원인의 자금이동과 그 자금의 돈세탁방지과 환수, 기술적 원조와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이행감시체제 등에 국제협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부패방지전략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감시, 유인제공, 기술지원, 저항 극복 등의 통제체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의 장이 되는 청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제안

□ 청렴플랫폼을 제공하여 청렴 생태계 조성

-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민관협치를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 정치부문·행정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간에 투명사회 협약 체결 등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복수의 집단들과 프로그램들을 플랫폼에 불러모아 탈조직적 전략으로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청렴 의식과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 유도, 상호 감시 및 상시 감시, 실시간 감시 체계를 형성하여 청렴 생태계를 구축
 -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는 Clean 기업 Best 10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산업부문별로 Clean 기업 Best 10이 되는데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며, 관심 있는 기업들은 관련 지표에 대한 자료를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부처와 권익위원회는 자료의 사실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청렴플랫폼의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기업은 홍보비용을 절약하고 소비자는 검색비용을 절약함.
 - 농산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원산지, 무농약 유기농 재배, 불순물 첨가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유통과정 관리 등의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관심이 많음. 농산물 분야 청렴 Best 10기업이 분기별로 실시간으로 청렴플랫폼에 발표된다면, 소비자들은 청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 바이러스처럼 입소문이 퍼진다는 의미의 바이럴 효과에 의해 참가 그룹간에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보의 상호 교류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역량이 증진될 것임



□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청렴플랫폼 콘텐츠 개발

- Clean 기업 best 10, 청렴 정치인 Best 10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청렴플랫폼 콘텐츠를 개발하여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나 정치인의 청렴성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제공

□ 국제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반부패·청렴 평가의 선도적 지위 확보

-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반부패·청렴정도를 선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반부패 청렴문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 및 개도국 지원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과정을 통해 반부패 정책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반부패 정책의 개도국 지원을 통해 반부패·청렴 부문에서의 한국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의 반부패 문화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과 신뢰를 증진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서 반부패 문화의 확산을 유도함.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과정에서의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활력 증진

□ 국제 반부패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모임 결성

-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동참
 - 국제간 관계에서 반부패문제는 투명성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 문제와 연결되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됨. 반부패 활동과 관련한 점증하는 수의 조직과 단체들 사이에 정보교환과 협력의 필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을 결성하고 정보교환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반부패 전문가 플랫폼을 제공함.

□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감시체계

- 청렴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적 반부패 프로그램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범정부적, 범시민사회적 노력을 결집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감시, 상시 감시체제를 형성하고 청렴역량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부패방지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민관 협치를 통한 반부패운동 거버넌스 구성: 반부패 청렴운동본부(가칭) 설립

□ 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인 추진

- 강화되는 국제규범에 부응하여 한국도 모든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간에 각 부문을 대표하여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렴의식을 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할 필요

□ 스마트웹기반 쌍방향 청렴 웹 구축

- 영국의 fixmystreet.com과 같이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항을 웹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에 전달되어 이를 처리하고 시민에게 알려주는 쌍방향 웹을 구축하여 반부패·청렴 문제 해결에 쌍방향 소통을 원활화하도록 함
- 웹이 공공과 민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platform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4) 추진 단계

□ 1단계 (2011~2012)

- 청렴플랫폼 웹페이지 제공 및 플랫폼 추진체계 설정
 - 청렴플랫폼 웹페이지 신설: 멀티 사이트 플랫폼(Multi-sided platform)을 구축하여 청렴과 관련된 모든 그룹, 모든 프로그램을 불러 모으는 場을 제공: 복수 그룹과 프로그램의 참여
 - 플랫폼 추진체계 및 역할 : 권익위원회, 정부 각 부처, 전문가, 민관협력 추진체계: 추진주체들이 청렴플랫폼에 등록(회원가입)
 - ※ 권익위원회: 청렴정책의 총괄·기획 기능, 사회 각 부문의 청렴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청렴플랫폼의 플래포머(주재자) 역할, 정보제공, 청렴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 검증 및 감독역할
 - ※ 정부 각 부처: 청렴플랫폼에 등록, 행동강령 등 청렴 활동 및 노력 등록

- ※ 전문가: 청렴플랫폼에 등록, 청렴관련 정보자료의 교환
- 정보제공 기능: 법제도, 청렴교육·홍보, 청렴의식 함양
- 윤리지원센터 또는 청렴교육센터
- 청렴 고발센터 : 실명(공익신고), 익명(구속력은 없으나, 권익위 담당자가 선별하여 조사가능)
- ※ 정치인 부패 고발센터, 공직자 부패 고발센터, 기업 부패 고발센터, 교육현장 부패 고발센터
- 청렴 토론마당 제공 : 공공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
- ※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유통과정 등에 관한 청렴 정보 교환의 장 제공
- 청렴 정치인 Best 10, Clean 기업 Best 10(분야별), 청렴기관 Best 5
- ※ 청렴 Best를 선발하는 기준 마련: 투표 + 지표설정 등
- ※ Clean 기업 Best 10은 분기별 발표

청렴 플랫폼



○ 청렴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정보를 개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국가정보화기본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공공기관, 시민사회, 일반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청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렴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청렴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청렴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 청렴정보 제공 및 활용, 정부 각 부처 및 전문가그룹,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 마련, 청렴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청렴관련 윈스톱 서비스 제공

□ 2단계 (2013~2015)

○ 청렴 플랫폼 활성화 단계

-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일반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렴플랫폼 콘텐츠 개발 지속
- 복수 그룹들 간의 교류 및 토론 촉진
- 청렴 토론문화 활성화 : 접대문화, 청렴아이돌 등
- 정치, 공직자, 기업 등의 부패 관행 실시간 고발문화 활성화: 익명 및 실명 고발센터
- 정치부문·행정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간에 상호 감시 및 상시 감시, 실시간 감시
- 청렴 Best를 선발하는 기준의 지속적인 진화

□ 3단계 (2016~2020)

○ 청렴 플랫폼의 지속적인 진화

청렴 플랫폼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

1 과제설정의 배경

- 불균형 경제성장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부패가 구조적이며 (entrenched corruption) 조직적이고 내적인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는 미성숙 문화가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
 - 우리나라 시민의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의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낮은 균형에서 높은 균형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숙 문화와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민관협력,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
- 국가경쟁력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
 - '10년 9월에 발표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4.93점(7점 만점)으로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여 전년(133개국 중 19위)보다 3단계 하락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자금의 유용(56위), 비정상적인 비용 및 뇌물(51위), 정부정책수립의 투명성(111위), 정부 규제 부담(10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위) 항목의 평가가 낮게 나옴
- 반부패 국제협력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동향
 - 국제금융관련 기구들, 국제상공회의회 및 무역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부패행위로부터 나온 불법적 원인의 자금이동과 그 자금의 돈세탁방지과 환수, 기술적 원조와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이행감시체제 등에 국제협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부패방지전략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감시, 유인제공, 기술지원, 저항극복 등의 통제체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의 장이 되는 청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스마트 시대 청렴 플랫폼 국가 전략으로 청렴 미래를 조성

- 스마트 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하여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 즉 場을 만들고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새로운 개방형의 가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청렴 가치를 창출하는 청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교류와 혁신, 협력을 통하여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미래를 조성해 나갈
-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스마트 시대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이슈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

□ 국제적 경제위상에 맞는 반부패 청렴성 확보

-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10년 10점 만점에 5.4점으로 '09년에 비해 0.1점 하락하였으며, 순위로는 '09년에 이어 '10년에도 180개국 중 39위로서 경제수준에 비하여 반부패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자본 인프라는 월등히 취약한 형편이므로 청렴플랫폼을 통하여 국제적 경제위상에 맞는 반부패 청렴성 확보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청렴의식을 정립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

-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협약체결,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국제규범이 확대되고 이의 이행체계도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강화되는 국제규범에 발맞추어 한국도 모든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

□ 부패방지 민관협력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 제고

-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효율성 있는 반부패 활동 전개가 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협력으로 인해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부패방지 민관협력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활성화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청렴플랫폼을 제공하여 청렴 생태계 조성

-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민관협치를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 정치부문·행정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간에 투명사회 협약 체결 등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복수의 집단들과 프로그램들을 플랫폼에 불러모아 탈조직적 전략으로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청렴 의식과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 유도, 상호 감시 및 상시 감시, 실시간 감시 체계를 형성하여 청렴 생태계를 구축
 -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는 Clean 기업 Best 10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산업부문별로 Clean 기업 Best 10이 되는데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며, 관심 있는 기업들은 관련 지표에 대한 자료를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부처와 권익위원회는 자료의 사실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청렴플랫폼의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기업은 홍보비용을 절약하고 소비자는 검색비용을 절약함.
 - 농산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원산지, 무농약 유기농 재배, 불순물 첨가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유통과정 관리 등의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관심이 많음. 농산물 분야 청렴 Best 10기업이 분기별로 실시간으로 청렴플랫폼에 발표된다면, 소비자들은 청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 바이러스처럼 입소문이 퍼진다는 의미의 바이럴 효과에 의해 참가 그룹간에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보의 상호 교류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역량이 증진될 것임

□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청렴플랫폼 콘텐츠 개발

- Clean 기업 best 10, 청렴 정치인 Best 10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청렴플랫폼 콘텐츠를 개발하여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나 정치인의 청렴성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제공

□ 청렴플랫폼 웹페이지 제공 및 플랫폼 추진체계 설정

- 청렴플랫폼 웹페이지 신설: 멀티 사이드 플랫폼(Multi-sided platform)을 구축하여 청렴과 관련된 모든 그룹, 모든 프로그램을 불러 모으는 場을 제공: 복수 그룹과 프로그램의 참여
- 플랫폼 추진체계 및 역할 : 권익위원회, 정부 각 부처, 전문가, 민관협력 추진체계: 추진주체들이 청렴플랫폼에 등록(회원가입)
 - ※ 권익위원회: 청렴정책의 총괄·기획 기능, 사회 각 부문의 청렴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청렴플랫폼의 플래포머(주재자) 역할, 정보제공, 청렴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 검증 및 감독역할
 - ※ 정부 각 부처: 청렴플랫폼에 등록, 행동강령 등 청렴 활동 및 노력 등록
 - ※ 전문가: 청렴플랫폼에 등록, 청렴관련 정보자료의 교환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을 결성하고 정보교환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반부패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모임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
- 정보제공 기능: 법제도, 청렴교육·홍보, 청렴의식 함양
- 윤리지원센터 또는 청렴교육센터
- 청렴 고발센터 : 실명(공익신고), 익명(구속력은 없으나, 권익위 담당자가 선별하여 조사가능)
 - ※ 정치인 부패 고발센터, 공직자 부패 고발센터, 기업 부패 고발센터, 교육현장 부패 고발센터
- 청렴 토론마당 제공 : 공공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
 - ※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유통과정 등에 관한 청렴 정보 교환의 장 제공
- 청렴 정치인 Best 10, Clean 기업 Best 10(분야별), 청렴기관 Best 5
 - ※ 청렴 Best를 선별하는 기준 마련: 투표 + 지표설정 등
 - ※ Clean 기업 Best 10은 분기별 발표

□ 청렴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정보를 개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국가정보화기본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공공기관, 시민사회, 일반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청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렴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청렴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청렴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 청렴정보 제공 및 활용, 정부 각 부처 및 전문가그룹,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 마련, 청렴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청렴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청렴 플랫폼 활성화 및 진화

-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일반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렴플랫폼 콘텐츠 개발 지속
- 복수 그룹들 간의 교류 및 토론 촉진
- 청렴 토론문화 활성화 : 접대문화, 청렴아이돌 등
- 정치, 공직자, 기업 등의 부패 관행 실시간 고발문화 활성화: 익명 및 실명 고발센터
- 정치부문·행정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간에 상호 감시 및 상시 감시, 실시간 감시
- 청렴 Best를 선발하는 기준의 지속적인 진화
- 청렴플랫폼의 지속적인 진화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렴플랫폼 웹페이지 제공 및 플랫폼 추진 체계 설정	청렴플랫폼 웹페이지 신설					
	권익위원회, 정부 각 부처, 전문가, 민관협력 추진체계 등 추진주체들이 청렴플랫폼에 등록					
청렴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청렴정보 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청렴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렴 플랫폼 활성화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일반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렴플랫폼 콘텐츠 개발 지속					
	청렴 토론문화, 청렴 고발문화 활성화(익명 및 실명 고발센터)					
청렴 플랫폼의 지속적인 진화						청렴 플랫폼의 지속적인 진화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활성화와 반부패 정보공유 확산

1 과제설정의 배경

- 1990년대 이래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거래방지 즉 반부패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부패문제가 최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배경은 만연된 국제적 뇌물수수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임
- 국제간 관계에서 반부패문제는 투명성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 문제와 연결되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됨. 반부패 활동과 관련한 점증하는 수의 조직과 단체들 사이에 정보교환과 협력의 필요가 증대하고 있음.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동참할 필요가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글로벌 경제에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거래는 외부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함. 국제반부패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 모임을 결성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
- 국제사회의 반부패 규범 설계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반부패·청렴정도를 선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반부패 청렴사회문화에 기여
- 대표적인 청렴도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반부패를 국제사회의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한 영향력 있는 도구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임.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청렴이슈를 국가 전체에 걸쳐 중요한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는 효과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및 반부패 전문가 양성

- UN 반부패협약, 자금세탁방지, 기업의 투명성 제도 등 분야별로 자발적인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금융부문, 정부-기업간의 관계, 기초적인 법체제의 개혁, 특정분야에서의 부패동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법개정 등에 대한 전문가 모임 결성
- 청렴플랫폼에서 반부패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국제 반부패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정보교환, 교육 등을 통하여 학습과 성장

□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및 적극적인 참여

- 권익위원회에서 국제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미나 프로그램 작성, 예산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
-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설립

- 청렴도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가 청렴도 평가의 주체가 됨으로써 국제적 청렴도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 국제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반부패·청렴 평가의 선도적 지위 확보
- 국제적 반부패 청렴평가 지수 및 지표 개발
- 국제투명성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평가기구 설립
- 반부패 청렴평가 실행과 피드백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및 반부패 전문가 양성	청렴플랫폼에 분야별로 자발적인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을 위한 장을 제공		반부패 전문가 모임의 정보공유 및 확산, 학습과 성장을 통한 반부패 전문가 모임 양성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동참		국제반부패 전문가 활동 확대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동참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 예산확보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국제 반부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 반부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설립	반부패 전문가 모임 활성화		국제적 반부패 청렴도 평가 지수 및 지표 개발 및 설계			국제투명성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평가기구 설립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 및 개도국 지원

1 과제설정의 배경

-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협약체결,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국제규범이 확대되고 이의 이행체계도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강화되는 국제규범에 발맞추어 한국도 모든 부문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과정을 통해 반부패 정책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반부패 정책의 개도국 지원을 통해 반부패·청렴 부문에서의 한국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의 반부패 문화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과 신뢰를 증진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서 반부패 문화의 확산을 유도함.
- 핵심 청렴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청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반부패 청렴 유대를 강화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과정에서의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활력 증진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부패방지 선도
-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의식수준을 개선
- 반부패 정책의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반부패·청렴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반부패 청렴문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례 공모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에 대한 평가 및 성공사례 선정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집 발간
- 핵심브랜드 사업 발굴
- 반부패 기술지원 프로세스 개발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반부패 전문가와 ODA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선정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및 지속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 발굴핵심 브랜드 사업의 발굴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정책의 평가 및 환류					개도국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환류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정책 지속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정책 지속

부패방지 민관협의체(거버넌스) 구축

1 과제설정의 배경

-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효율성 있는 반부패 활동 전개가 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협력으로 인해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부패방지 민관협의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하여 반부패 정책과 문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반부패 정책공동체'를 형성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시민단체는 조직내외의 한계로 인하여 적극적인 기업부패, 민간부패 영역에 대한 부패 통제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정부와 기업이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부패방지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적 반부패 프로그램의 민관공동 추진을 통해 범정부적, 범시민사회적 노력을 결집하여 상호 감시, 상시 감시, 저항극복 등의 부패방지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부패방지 민관 협의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부, 정치, 비즈니스, 시민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없는 사회를 효율적으로 구현함.
- 반부패 민관 협의 체제를 통하여 부패의 효과적인 방지에 기여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함. 많은 국가에서 부패방지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시민참여의 결여가 지적됨. 시민의 부패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식없는 부패방지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반부패의식의 제고와 확산이 부패예방의 조건이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본질적인 부패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임.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민·관의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예시)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구성 등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참여주체 간 동등한 의사결정체제를 구축
- 정부와 민간이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반부패 정책결정체제의 변화
- 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 간에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을 구축

□ 민관협력추진체계로서 반부패 청렴운동본부 설립

- 정부기관과 기업,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청렴정책의 확산

□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

- 예시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활동 프로그램 공모
 - 지역단체의 ‘부패방지 시민센터화’ 및 활성화 방안 등

□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감시체계 구축

- 청렴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적 반부패 프로그램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범정부적, 범시민사회적 노력을 결집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감시, 상시 감시체제를 형성하고 청렴역량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부패방지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민관 협치를 통한 반부패운동 거버넌스 구성: 반부패 청렴운동본부(가칭) 설립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민·관의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구성 등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기회 확대	예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활동 프로그램 공모					
반부패 청렴운동본부 설립			반부패 청렴운동본부 설립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기회 다양화 방안 마련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 참여기회 다양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시감시체제를 형성, 내부고발제도,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민관거버넌스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예시) 지역단체의 ‘부패방지 시민센터화’ 및 활성화 방안 등			

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 추진

1 과제설정의 배경

-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협약체결,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국제규범이 확대되고 이의 이행체계도 강화되는 추세임.
- 강화되는 국제규범에 부응하여 한국도 모든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간에 각 부문을 대표하여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렴의식을 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할 필요
- 투명사회 협약을 통해 부문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투명사회 협약을 통한 시민사회 주도 반부패 운동으로 정치권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기업 등을 부패통제의 주체로 이끌어 내고 반부패 연대를 통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부패를 위한 좋은 거버넌스의 모델을 형성
- 정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가 함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부문마다 지켜야할 다양한 협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내부 성원들 간에 공감과 인식을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각계의 불투명한 관행들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투명사회 협약의 체결

- 2005년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을 확대하여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 간에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갱신

□ 협약서명운동 등 확산

- 협약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시민들 속에서 협약과 시민헌장 참여와 서명을 확산시키며 후속조치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

□ 분야별 투명사회 협약의 확대

- 법조계·교육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
- 분야별로 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는 수용가능성, 합의가능성, 이행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재편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집행위원회는 각 부문·분야·지역의 투명사회협약의 전반적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
- 협약이행에 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문·분야·지역별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관할하는 이행평가단을 집행위원회 산하에 설치
- 투명사회협약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지표의 개발

□ 투명사회협약의 입법화 등 협약의 제도적 이행방안 마련

- 자율적 결의만이 아니라 제도적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수준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

□ 협약의 실천 실태 점검 및 피드백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간에 투명사회 협약 체결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간 투명사회 협약 체결, 협약의 갱신					투명사회협약의 주기적 갱신
협약과 시민현장 참여와 서명 확산	협약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시민들 속에서 협약과 시민현장 참여와 서명을 확산					
분야별 투명사회 협약을 확대	법조계·교육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재편	각 부문·분야·지역의 협약이행 실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협약의 제도적 이행방안 마련			입법을 위한 노력	입법화		
협약의 실천실태 점검 및 평가			협약의 실천실태 점검 및 평가			
협약 추진에 따른 이행사항에 관한 사회적 공표			협약추진에 따른 이행사항에 관한 사회적 공표			

스마트웹기반 쌍방향 청렴 웹구축으로 청렴플랫폼의 장 제공

1 과제설정의 배경

-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스마트 시대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반부패·청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청렴과 관련된 복수의 집단, 복수의 프로그램이 참여하여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청렴정보를 개방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을 통해 청렴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청렴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영국의 fixmystreet.com처럼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항을 웹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에 전달되어 이를 처리하고 시민에게 알려주는 쌍방향 웹을 구축하여 반부패·청렴 문제 해결에 쌍방향 소통을 원활화하도록 함
- 참여자 증가→서비스 다양화→이용자 증가의 선순환체계를 형성하여 쌍방향 청렴정보 공유의 확산
- 민관협력의 스마트 청렴생태계를 조성하여 신뢰 정부 구현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쌍방향 웹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스마트웹기반 청렴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위한 웹의 기능 및 구성 논의

- 쌍방향 웹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 (1단계) 청렴플랫폼 웹 페이지 구축 및 정보제공 기능
 - (2단계) 청렴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 마련
 - (3단계) 플랫폼 추진체계 설정 및 등록

스마트웹 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 웹이 공공과 민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platform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 스마트웹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 정부기관, 전문가단체, 기업,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집단이 청렴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

스마트웹 기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청렴 정치인 Best 10, Clean 기업 Best 10 등

스마트웹 기반 청렴플랫폼으로의 역할 활성화

- 쌍방향 청렴정보의 공유 및 활성화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쌍방향 청렴 웹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청렴플랫폼 웹 페이지 구축 및 정보제공 기능					
청렴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구축	청렴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 마련					
스마트웹 기반 청렴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위한 웹의 기능 및 구성 논의			플랫폼 추진체계 설정 및 등록			
단순한 전달이 아닌 쌍방향성 콘텐츠 개발	웹이 공공과 민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platform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단순한 전달이 아닌 쌍방향성 콘텐츠 개발			
스마트웹 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스마트웹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스마트웹 기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웹 기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청렴 플랫폼의 지속적인 진화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활성화와 반부패 정보공유 확산

1 과제설정의 배경

- 1990년대 이래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거래방지 즉 반부패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부패문제가 최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배경은 만연된 국제적 뇌물수수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임
- 국제간 관계에서 반부패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연결되는 이슈임. 반부패 활동과 관련한 점증하는 수의 조직과 단체들 사이에 정보교환과 협력의 필요가 증대하고 있음.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동참할 필요가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글로벌 경제에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거래는 외부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함. 국제반부패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 모임을 결성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
- 국제사회의 반부패 규범 설계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반부패·청렴정도를 선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반부패 청렴사회문화에 기여
- 대표적인 청렴도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반부패를 국제사회의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한 영향력 있는 도구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임.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청렴이슈를 국가 전체에 걸쳐 중요한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는 효과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및 반부패 전문가 양성

- UN 반부패협약, 자금세탁방지, 기업의 투명성 제도 등 분야별로 자발적인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금융부문, 정부-기업간의 관계, 기초적인 법체제의 개혁, 특정분야에서의 부패동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법개정 등에 대한 전문가 모임 결성
- 청렴플랫폼에서 반부패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국제 반부패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정보교환, 교육 등을 통하여 학습과 성장

□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및 적극적인 참여

- 권익위원회에서 국제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미나 프로그램 작성, 예산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
-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설립

- 청렴도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가 청렴도 평가의 주체가 됨으로써 국제적 청렴도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 국제적 반부패 청렴평가 지수 및 지표 개발
- 국제투명성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평가기구 설립
- 반부패 청렴평가 실행과 피드백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 및 반부패 전문가 양성	청렴플랫폼에 분야별로 자발적인 국제 반부패 전문가 모임 결성을 위한 장을 제공		반부패 전문가 모임의 정보공유 및 확산, 학습과 성장을 통한 반부패 전문가 모임 양성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동참		국제반부패 전문가 활동 확대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한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동참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 예산확보		국제 반부패 세미나의 주도적인 개최			
국제 반부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 반부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국제적 청렴도 평가기구 설립	반부패 전문가 모임 활성화		국제적 반부패 청렴도 평가 지수 및 지표 개발 및 설계			국제투명성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평가기구 설립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 및 개도국 지원

1 과제설정의 배경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과정을 통해 반부패 정책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반부패 정책의 개도국 지원을 통해 반부패·청렴 부문에서의 한국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의 반부패 문화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과 신뢰를 증진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서 반부패 문화의 확산을 유도함.
- 핵심 청렴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청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반부패 청렴 유대를 강화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과정에서의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활력 증진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부패방지 선도
- 청렴 MADE IN KOREA 브랜드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개혁을 유도하고 인식수준을 개선
- 반부패 정책의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반부패·청렴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반부패 청렴문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례 공모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에 대한 평가 및 성공사례 선정
-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집 발간
- 핵심브랜드 사업 발굴
- 반부패 기술지원 프로세스 개발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반부패 전문가와 ODA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선정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및 지속

4 과제의 추진단계

과 제 \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의 발굴핵심 브랜드 사업의 발굴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방법의 개발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실행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정책의 평가 및 환류					개도국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환류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정책 지속						반부패 정책 개도국 지원 정책 지속	

부패방지 민관협의체(거버넌스) 구축

1 과제설정의 배경

-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효율성 있는 반부패 활동 전개가 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협력으로 인해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부패방지 민관협의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하여 반부패 정책과 문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반부패 정책공동체'를 형성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시민단체는 조직내외의 한계로 인하여 적극적인 기업부패, 민간부패 영역에 대한 부패 통제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정부와 기업이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부패방지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적 반부패 프로그램의 민관공동 추진을 통해 범정부적, 범시민사회적 노력을 결집하여 상호 감시, 상시 감시, 저항극복 등의 부패방지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부패방지 민관 협의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부, 정치, 비즈니스, 시민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없는 사회를 효율적으로 구현함.
- 반부패 민관 협의 체제를 통하여 부패의 효과적인 방지에 기여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함. 많은 국가에서 부패방지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시민참여의 결여가 지적됨. 시민의 부패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식없는 부패방지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반부패의식의 제고와 확산이 부패예방의 조건이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본질적인 부패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임.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민·관의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예시)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구성 등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참여주체 간 동등한 의사결정체제를 구축
- 정부와 민간이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반부패 정책결정체제의 변화
- 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 간에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을 구축

□ 민관협력추진체계로서 반부패 청렴운동본부 설립

- 정부기관과 기업,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청렴정책의 확산

□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

- 예시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활동 프로그램 공모
 - 지역단체의 ‘부패방지 시민센터화’ 및 활성화 방안 등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민·관의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구성 등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기회 확대	예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활동 프로그램 공모					
반부패 청렴운동본부 설립			반부패 청렴운동본부 설립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기회 다양화 방안 마련	반부패 활동에 민간부문 참여기회 다양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시감시체제를 형성, 내부고발제도,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민관거버넌스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예시) 지역단체의 ‘부패방지 시민센터화’ 및 활성화 방안 등			

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 추진

1 과제설정의 배경

-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협약체결,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국제규범이 확대되고 이의 이행체계도 강화되는 추세임.
- 강화되는 국제규범에 발맞추어 한국도 모든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에 각 부문을 대표하여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렴의식을 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투명사회 협약을 통해 부문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투명사회 협약을 통한 시민사회 주도 반부패 운동으로 정치권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기업 등을 부패통제의 주체로 이끌어 내고 반부패 연대를 통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부패를 위한 좋은 거버넌스의 모델을 형성
- 정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가 함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부문마다 지켜야할 다양한 협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내부 성원들 간에 공감과 인식을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각계의 불투명한 관행들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투명사회 협약의 체결

- 2005년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을 확대하여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 간에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갱신

협약서명운동 등 확산

- 협약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시민들 속에서 협약과 시민헌장 참여와 서명을 확산시키며 후속조치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

분야별 투명사회 협약의 확대

- 법조계·교육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
- 분야별로 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는 수용가능성, 합의가능성, 이행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재편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집행위원회는 각 부문·분야·지역의 투명사회협약의 전반적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
- 협약이행에 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문·분야·지역별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관할하는 이행평가단을 집행위원회 산하에 설치
- 투명사회협약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지표의 개발

투명사회협약의 입법화 등 협약의 제도적 이행방안 마련

- 자율적 결의만이 아니라 제도적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수준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

협약의 실천 실태 점검 및 피드백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간에 투명사회 협약 체결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간 투명사회 협약 체결, 협약의 갱신					투명사회협약의 주기적 갱신
협약과 시민현장 참여와 서명 확산	협약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시민들 속에서 협약과 시민현장 참여와 서명을 확산					
분야별 투명사회 협약을 확대	법조계·교육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재편	각 부문·분야·지역의 협약이행 실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협약의 제도적 이행방안 마련			입법을 위한 노력	입법화		
협약의 실천실태 점검 및 평가			협약의 실천실태 점검 및 평가			
협약 추진에 따른 이행사항에 관한 사회적 공표			협약추진에 따른 이행사항에 관한 사회적 공표			

스마트웹기반 쌍방향 청렴 웹구축으로 청렴플랫폼의 장 제공

1 과제설정의 배경

-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스마트 시대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반부패·청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청렴과 관련된 복수의 집단, 복수의 프로그램이 참여하여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청렴정보를 개방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을 통해 청렴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청렴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영국의 fixmystreet.com처럼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항을 웹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에 전달되어 이를 처리하고 시민에게 알려주는 쌍방향 웹을 구축하여 반부패·청렴 문제 해결에 쌍방향 소통을 원활화하도록 함
- 참여자 증가→서비스 다양화→이용자 증가의 선순환체계를 형성하여 쌍방향 청렴정보 공유의 확산
- 민관협력의 스마트 청렴생태계를 조성하여 신뢰 정부 구현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쌍방향 웹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스마트웹기반 청렴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위한 웹의 기능 및 구성 논의

○ 쌍방향 웹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 (1단계) 청렴플랫폼 웹 페이지 구축 및 정보제공 기능
- (2단계) 청렴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 마련
- (3단계) 플랫폼 추진체계 설정 및 등록

□ 스마트웹 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 스마트웹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 정부기관, 전문가단체, 기업,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집단이 청렴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스마트웹 기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청렴 정치인 Best 10, Clean 기업 Best 10 등

□ 스마트웹 기반 청렴플랫폼으로의 역할 활성화

- 쌍방향 청렴정보의 공유 및 활성화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쌍방향 청렴 웹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청렴플랫폼 웹 페이지 구축 및 정보제공 기능					
청렴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구축	청렴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 마련					
스마트웹 기반 청렴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위한 웹의 기능 및 구성 논의			플랫폼 추진체계 설정 및 등록			
단순한 전달이 아닌 쌍방향성 콘텐츠 개발	웹이 공공과 민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platform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단순한 전달이 아닌 쌍방향성 콘텐츠 개발			
스마트웹 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스마트웹기반 청렴웹 구축 및 운영			
스마트웹 기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웹 기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4.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1) 필요성

□ 반부패 initiative 창출을 위한 법·제도 도입

- 부패는 그 사회의 문화와 부패 인식, 경제수준과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대체로 사후 처벌적 부패대책 보다는 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적 처방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부패의 사전예방적 방안으로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식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이 토대가 될 필요성이 있음
- 법·제도를 통한 반부패·청렴사회문화 정착에 있어 시스템적인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반부패·청렴사회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민주화와 경제성장 이후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독점권 축소를 위한 행정체계의 구조적 개선, 재량권 제한을 위한 이해충돌방지의무의 개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업부패방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에 일정부분 성과가 있으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법·제도 집행력 강화

- 부패는 점점 은밀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그로 인해 부패통제를 위한 법·집행에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음
- 법·제도 집행력 강화를 위한 독점권의 축소, 재량권의 제한, 책임성의 강화, 투명성의 확대가 필요함
-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하여 부패에 대한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법 집행의 독점권 축소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부패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관리 기능의 확보 등이 요구됨

□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와 피드백 강화

- 부패사범을 처벌하는 행위가 부패예방과 이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음
- 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특히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등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부패예방을 위한 기초적이며 동시에 강력한 처방임
- 더불어 부패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반부패·청렴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반부패 initiative 창출을 위한 법·제도 도입

○ 독점권 축소를 위한 행정체계의 구조적 부패가능성 제거

- 민주화와 경제발전 이후 행정체계 내에서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많은 개혁이 있었고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일부 부분에는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로 미쳐 개선되지 못했거나 사회적으로 새로이 부각되는 행정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상존하는 구조임
- 기득권층의 반발로 미쳐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으로는 대표적으로 건설업계의 턴키 입찰 계약 방식을 들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행정의 새로운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방식을 들 수 있음

○ 재량권 제한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공직자는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강화와 실질적인 처벌조항의 신설로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부패방지방안 마련

-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가 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기업은 이익의 사회 환원 보다는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한 부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이 다수 있음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로 부패의 가능성 제거 필요

- 민주화 이후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업무상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과 공직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음
- 현재 한국에서 정보공개 현실은 법·제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 혹은 공무원의 태도와 인식이 더 문제임.(주로 법정 공개시한을 채워서 공개하고 쓸모없는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공개에 대해 시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은 각 급 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와 공직자의 책임성을 위한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법·제도 집행력 강화

○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

- 검찰은 법집행을 위한 사정기관으로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관이나 항상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옴
- 사정기관이 부패에 포획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공유 혹은 분배가 필요함

○ 기초질서에 대한 재량권의 제한

- 기초적인 법질서에 대한 단속과 캠페인은 부패와 위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됨
-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작은 부패를 행하는 자는 큰 부패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 부패도 성폭행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범에 대하여 온정주의나 미온적인 판결은 국민과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음. 예로 성폭행 초범의 경우 한국은 최고 5년, 영국이나 미국은 적어도 8-15년이 형량이 주어지

고 있음(조선일보, 2011. 10. 20)

- 특히 현재의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사과 한마디로 용서되는 이중적 잣대에 의한 법집행의 개선이 필요
- 현행법에 의해 범죄가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부패와 위법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권 제한이 필요

○ 책임 있는 반부패 기구의 설립

- 세계적으로 CPI 점수가 좋은 국가들의 경우 예외 없이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부패에 대한 포획가능성이 적은 독립적인 기구의 존재와 책임성 있는 기구의 활동은 반부패·청렴을 위한 제도적인 기본임
-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이후 대통령 산하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함으로써 인해 사실상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독립성의 측면에서 하향 조정되었음
- 대만도 최근 공무원들의 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부패 전담기구로 별도의 기관(염정서, The Agency against Corruption: AAC)을 정부 내(법무부 산하)에 설치하였음

○ 부패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대

- 부패는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해 저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음
- 부패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고 각 급 기관의 협조를 조정·강제할 수 있는 부패통제의 Control Tower가 필요함

□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와 피드백 강화

○ 부패에 대한 사후 책임성의 강화와 피드백 장치

- 한국에서 위법인 부패는 종종 적발되어 처벌되고는 있음
- 그러나 사소한 일상의 부패가 아닌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어 이슈가 되는 부패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에 의해 의혹으로만 끝나거나 처벌받더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사면·복권 되는 경우가 많음
- 사면·복권에 대한 제도적 제한으로 사회지도층의 부패에 대한 책임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일반의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은 부패처벌의 강화와 동일하게 부패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와 부패에 대한 인식개선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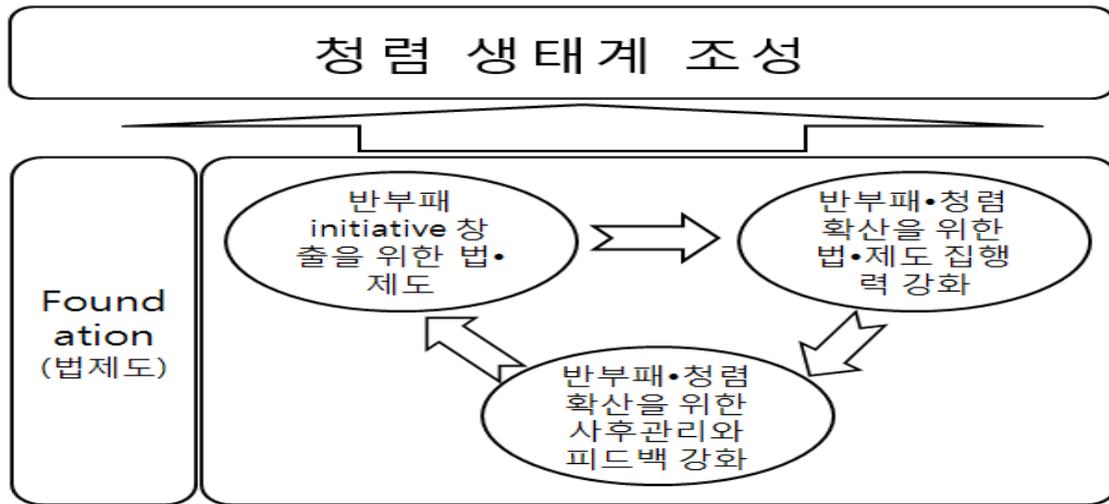
○ 부패에 대한 사후 투명성 확대를 통한 부패방지

- 부패 개인, 부패 기업, 부패 기관 등의 정보공개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부패 당사자의 부패 개선을 강제할 방안이 필요

3) 정책 제안

□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 지식생태계의 순환구조인 지식창출-지식확산 및 유통-지식 저장의 구조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분으로 활용하여 구분



□ 주인 대리인 모델에 입각한 부패수준 제고를 위한 법제도

- Robert Klitgaard가 제시한 '부패의 수준=독점권+재량권-책임성-투명성'이라는 틀에 입각하여 법제도를 도출

<반부패·청렴을 위한 법·제도 분석틀>

구분	반부패 ini셔티브 창출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법·제도 집행력 강화	반부패·청렴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와 피드백 강화
독점권 축소	행정체계 구조적 부패 가능성 축소	조사권, 수사권/기소권 공유	
재량권 제한	이해충돌방지의무 강화	뇌물죄 양형기준 준수	
책임성 강화	기업부패방지방안 마련 일수벌금제도 도입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설립	부패사범 사면권 제한 청렴도 평가법 제정 감사직렬 확대
투명성 확대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부패 가능성 제거 청탁등록 시스템	종합적인 조정·관리 기능 확보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의 정보공개

행정체계의 구조적 부패 가능성 축소

1 과제설정의 배경

- 전통적인 부패산업으로 인식되어온 건설 산업에서 구조적인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턴키 입찰 계약 방식 구조의 개선 필요
- 집단이기주의 및 부조리 등 건설업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경제체계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건전한 시장 메커니즘이 운용되는 시장 환경 조성 필요
- **턴키입찰방식의 문제점**
 - 턴키입찰방식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소재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여업체는 설계까지 하여 입찰에 참여
 - 그러나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고 낙찰되지 못한다면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감
 - 당연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힘들어 대형 건설사들의 전유물이 되고 대형 건설사가 다시 하청하는 과정과 낙찰을 이한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찰 방식임
- 사회복지 등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개선 필요
-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과 최우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확산 필요
- 정부의 복지사업은 각 부처가 제각각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복지수혜자의 선정 기준 역시 다양해서 정작 자신이 수혜자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임
 -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복지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복지 전달에 어려움과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구조적으로 행정체계에서 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개선
- 기존의 기득권층의 반대로 개선되지 못한 구조적인 행정체계의 개선과 사회적 수요로 인해 새로이 부각되는 행정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 고질적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및 제도 개선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 ※ 공공부문 취약 분야(청탁, 예산낭비, 교육, 지방자치 등), 민간부문 공익 침해 분야, 대외신인도 저해 분야 등
- 추진실적 실시간 입력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제도 개선 이행의 실효성 제고

□ 턴키입찰방식의 개선

- 원래 건설 사업에서 턴키입찰방식은 민간기업의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
- 다만 대부분의 건설 사업은 특수한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더 효과적
- 더불어 입찰경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차단이 필요함
 - 현재의 턴키입찰방식의 경우 명확한 심의 기준이 없으며, 심의위원의 50% 이상이 공무원으로 채워짐. 또한 각 지역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시 투명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양화대교 개·보수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민간단체의 반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복지부분의 인력 증원
- 인력부족으로 복지의 수요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힘들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은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복지 서비스의 불만족으로 연결
- 원스톱서비스와 같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운영체계가 필요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 공공부문 취약분야 제도 개선('13)	- 민간부문 취약분야 제도 개선('14)	각 분야 제도 개선 이행관 리시스템 구축 및 시행		
턴키입찰방 식개선	- 턴키입찰 기준 마련 - 턴키 심의기준 마련						
	일반경쟁 입찰 제도 도입						
사회복지 서 비스 전달체 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적 관리부서 마련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인력 충원						

이해충돌방지의무 강화

1

과제설정의 배경

- 공적이익과 사적이익 간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이해충돌 회피제도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음
 -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만 규정할 뿐 규정위반 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와 판사 등의 사법부 공직자를 포함한 국가의 전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필요
- 전관예우 관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무원 네 명 중 한 명은 퇴직 상관을 의식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며 15.7%는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전관예우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현직 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 존재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간접적으로 했더라도 1년간은 취업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업무는 4년까지 제한기간을 확대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윤리적 책무성을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행위기준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사적이익과 충돌하거나 사적이익 추구 시 이를 방지할 수 있음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정부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으로 사익추구금지법 제정 추진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검사, 금융감독위원 등 사정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의 강화와 확대
 - 사회적 이해관계 등록(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경우 사회·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제도 검토 후 필요시 도입
 - 정부 내부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관련 업무 경력 세탁 방지 대책 마련
 - 퇴직 전 3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지던 것을 4~5년으로 늘리고, 관련 업무 범위를 과장 이하는 국 단위, 국장 이하는 기관 전체로 확대
- 취업 제한 업체 확대 방안 마련
 - 자본금 2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6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낮추고, 법무, 세무 등은 신설법인을 포함해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 퇴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접촉할 경우 현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에게 취업 후 2년간 연간 보수액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 마련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이해충돌방지 의무강화	- 「공직자 윤리법」 내 처벌규정 마련 -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 법 제정						
		- 사회적 이해관계 범위에 대한 여 론수렴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시행					
			사회적 이해관계 등록을 위한 법·제도 마련 실시		국회의원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시행		

기업부패방지방안 마련

1 과제설정의 배경

-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과 경제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으로 부패 공급요인 개선 필요
 - 정부와 민간기업 및 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전반의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 책임성 향상 도모
- 민간부문의 기업의 부패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함
 - 기업의 경우는 '위법'한 부패와 부패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합법'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한국에서 기업의 부패에 대한 것은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 「형법」의 특성상 '위법'을 행한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개인이 속한 단체의 경우 처벌할 수 근거가 없음
 - 그로 인해 조직을 위해 '희생·충성'이라는 개념으로 기업전체의 부패를 개인이 책임지고 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형을 받은 '개인'에게만 보상을 하면 되므로 '위법'한 부패에 대한 위험요소가 줄어들고 기대수익은 늘어나 부패 자체에 대한 유인을 받음
- 또한 직접적인 부패는 '위법'이 되어 처벌됨으로 '위법'인 부패보다는 '합법'인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분야에 대기업 진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 등은 모두 합법적이면서도 불공정한 거래행위임
-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금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명이 어렵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제되지 않는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익의 환수도 전액환수가 아닌 과징금 결정의 참고사항 중 하나에 불과함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자율에서 일정정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일정정도 이루어졌으나 한국의 기업은 여전히 '공정'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인 제재장치 마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강화 필요
 - 부패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이익의 전액 환수와 Red Card 제도(부패기업 공개) 등을 도입 검토
 - 기업부패방지법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고려(미국의 SOX와 같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거나 자산규모별로 구분) 필요
-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납품단가 문제 해결방안 모색 시급
 - 원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필요
 -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혜택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Action Plan 수립 지원
 - 권익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차원의 사회적 책임 지원체계 구성
 - (1단계)정부 내부에 CSR지원 추진체 구성, (2단계)기업 등 각 부문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 운영
 - (보증)CSR 우수기업 선정, (활성화)CSR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 참여 지원, (협력)민·관 파트너십 지원 등의 프로세스 구성

- 회계 등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청렴기반 지원과 제도 개선
-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을 비롯한 기업내 청렴교육프로그램 개설 유도
 - 기업부패방지법 도입 검토 등으로 회계부정 및 불법자금 조성 근절 방안 마련
 - 접대비 사용 투명화 방안 마련(회계항목 단일화, 범위 명확화, 공개 확대 등)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기업부패방지법률 제정	- 기업부패 개념 정의 및 여론 수렴 - 기업규제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		부패기업 Red Card제 시범실시		부패기업 Red Card제 확산	
		기업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수정 및 시행				
			평가와 환류를 통한 법·제도 개선			
CSR Action Plan수립	- 정부 내 CSR지원체계 구성 - 기업 CEO 대상 정례 간담회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 체계 구성				
			Action Plan 수립 및 시행			
기업 청렴기반 지원 및 제도 개선		- 교육과정 등 개발 - 청렴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청렴교육 개설 유도				
		- 불법자금 근절방안 마련 - 기업감사시스템 개선			- 기업부패방지법 도입 검토	
		클린카드 도입 확산				
		접대비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부패 가능성 제거

1 과제설정의 배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으로 행정 민주화의 척도 지표임
-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내용은 극히 형식적이거나 매우 부실
 - 첫 시행된 1998년 이후 많은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시행초기의 비공개 결정, 유보결정 등이 줄어든 것은 사실
 - 지출증빙서류 열람 결과, 현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중 구체적 사용용도 불분명, 최종 수령자 불명, 무계획 집행 사후보완, 규정의 확대해석집행(집행 불가능자에게 집행), 사용내역 허위 기재, 업무추진비의 사전지출, 개인적 용도지출 등 불법 부당한 지출이 대부분
 - 물품구입의 경우, 구입한 물품의 구체적 용도 불분명, 관련규칙 위반 집행, 물품 수령증이나 수불부가 없는 회계 관련서류 부실작성, 구입하기 위한 결재 문서나 계획 없이 카드로 무분별하게 구입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확인
 - 업무추진비 담당 실무자들이 2회에 걸쳐 대책 회의를 갖고 정보공개 내용을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공개하기로 답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이 확인
- 현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는 공직자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심사할 수 있는 '주식거래심사'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거래자에 한해 주식거래 내역서를 2002년부터(2001년도 재산공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식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 「공직자 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범주 확대 및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함
 -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공개대상자 및 재산등록대상자는 과거 3년간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해야함
 - 과거 3년의 기간은 너무 짧을 뿐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한 공직자에 대한 제제권도 등록기관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제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현직·퇴직공직자에 공직윤리와 재산공개에 대한 관리를 각 기관(국회, 대법원, 선관위, 지자체 등)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부패감시능력이 더 향상되리라 사료됨
- 행정안전부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허위 공개를 하여도 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직사회에서 오랜 관행으로 묵인하고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조직과 공직자들의 의식개선과 조직문화 개선
-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아래에서의 제도적 압력으로 공공조직과 공직자의 의식개선과 조직문화 개선
- 처벌규정과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정보공개법으로는 업무추진비등 각종 예산집행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의 개정과 각급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이 절실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공직자 윤리법」의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법 개정

- 내부정보 유출, 스폰서 등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부정한 재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강구
 - 재산형성 과정(취득방법, 시기, 자금원 등)에 대한 등록 및 제재방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사후검증절차, 퇴직공무원 재산에 대한 공개방안 등 검토
-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기관화 및 전·현직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통합적 관리
 -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관리 그리고 부패방지에 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은밀화, 지능화 되는 부패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
 - ※ 법의 통합이 어렵다면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고려

□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선진화

- 부패가 은밀화·고도화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를 위해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자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한 비공개 대상 범위 조정, 정보공개위원회 활성화, 허위 정보공개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현행처럼 유형별 총액 또는 일자별 공개, 제목나열 수준의 공개가 아닌 일자별 세부내역(참석인원, 사용처, 현금 및 카드 사용 구분, 구체적 사용용도 포함)의 공개
 - 정보공개 거부, 허위, 축소 공개 시 처벌 및 징계규정 마련
-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정보공개 조례 제정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조례(안)을 참조하여 각 급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민·관합동 반부패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패 사건은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정보 공유방안 수립 등의 반부패 기관간 긴급대응체계 구축
- 부패 원인진단, 컨설팅, 직원교육, 청렴도평가 등 부패방지 틀을 활용한 부패 진단프로그램 개발

4 과제의 추진단계

단 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공직자재산 등록제도정 비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한 공직자 제제방안 강화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윤리위 독립기관화			
			재산등록 등 윤리기능과 반부패 기능의 통합적 운영			
행정정보 공 개제도의 선 진화	- 정보공개법 개정 - 비공개결정 세부지침 마련 - 업무추진비 공개 Guideline 작성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의무화			
민·관합동 반부패 긴급 대응시스템 구축		긴급대응체계 법적 근거 마련				
			부패 진단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청탁등록시스템

1 과제설정의 배경

- 부패로 인한 인식변질 및 잘못된 관행만연
 - 우리나라에서 목금 연찬회, 감독기관·산하기관 간 관행적 비리 등 최근 발생하는 공직사회 부패는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집단적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등 잘못된 관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위와 같이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점차 인식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일반인 응답자의 경우 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응답자의 32%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 및 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대답함
- 이러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써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청탁문화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청탁을 부패문화로서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느끼는 인식차이가 매우 큼.
 - ※ 8월 12~23일에 일반 국민 1천명과 공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국민의 84.9%가 “공직사회의 알선, 청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고 밝힘
 - ※ 공직자는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응답자의 21.8%만 “공직사회의 알선 및 청탁이 심각하다”로 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임
- 청탁은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전관리가 필요
 - 청탁은 곧 뇌물수수와 직계되어 사후에 사건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청탁은 양자간의 거래로써 이루어지고,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사후에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움
 - 청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탁등록 시스템구축
 - 청탁을 받은 사람이 청탁을 받은 후 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 청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탁한 사람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탁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시행을 통하여 청탁을 공개화 함으로써 청탁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개선에 기여, 일반 국민들의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신뢰성 향상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청탁등록시스템의 구축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속하여 청탁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독립된 부패기관 또는 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의 관리 하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청탁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 부패방지법으로써 청탁등록시스템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
 - 부패방지법에 청탁등록시스템이 조작 또는 허위로 내용이 기술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시스템의 이용과 시스템을 올바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벌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제정
- 청탁등록시스템 사용에 인센티브 부여
 - 청탁등록시스템의 사용으로 청탁을 근절한 본인, 기관 등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탁등록시스템의 활성화

□ 청탁등록시스템의 일부 정보공개

-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청탁을 한 사람, 기관에 관련하여 그 횟수에 따라 일부 정보를 청렴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틀 마련	시스템 구축	청렴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 시행			
		청탁등록시스템 관련 법적조항 제정					
청탁등록시스템의 일부 정보공개		정보 공개 법제화					

조사권, 수사권/기소권의 공유 그리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설립

1 과제설정의 배경

- 법 집행기관 중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검찰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검찰은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의혹과 어느 중소기업 사장으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은 적이 있음
 -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내부에 불기소 처분으로 의혹으로 끝나고 말았음.
-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
 - 부패에 대한 수사권의 독점은 수사기관이 부패에 포획되었을 경우 부패 자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 최근의 저축은행 사건의 경우를 보아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이 연루되어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 기소권의 독점 역시 포획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검찰이 떡값을 받은 의혹과 향응 제공받은 의혹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의혹으로 남고 말았음
-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검찰이 제몫을 못해서 공무원과 공기업이 썩었고, 정치인들이 부패했다”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음
 - 검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썩은 곳을 도려내며, 권력자들의 전횡을 다스려왔다면 국민들은 모두 검찰 편에 섰을 것임
- 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부패방지기구나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의 공유가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권이라도 부여받아 조사결과의 공표로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의 설립
-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이 힘들다면 조사권이라도 부여된 반부패기구의 설립을 통해 부패에 대한 사회적 통제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사정기관 부패

-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이 있음
- 사정기관의 독점적인 권한의 해체 혹은 권한의 중복을 통해 부패의 기회비용을 높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여야 함
 - 특히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구임

□ 부패방지기구의 독립 혹은 독립적인 새로운 기구 신설

- 부패의 적발·처벌은 반부패를 위한 정권의 의지 표출이기도 하지만 적발·처벌은 국민의 인식 개선에 기본적인 필수조건임
-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불가능할 경우 조사권이라도 보장이 되는 독립적인 기구의 존재가 필요
 - 독립적인 기구의 존재는 부패에 전문적인 관료를 양성하고 통합적인 부패관리에 실익

□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육성

- 국제 반부패 전문 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반부패 국제협약, 각국 반부패 정책 및 법률 연구, 반부패 컨설팅, 기업 윤리경영, 민간부문 우수 사례 연구
- 민간 주도의 「국제 반부패 컨설팅 센터」(가칭) 설립
 - 국제 반부패평가모형 및 반부패지수 등을 개발하여 아·태 국가별 반부패지수 측정, 반부패 컨설팅 등 수행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수사권/기소권의 공유	기득권층의 반발 무마 및 국민 여론 형성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사권·기소권의 - 합리적인 공유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				
				수사권·기소권의 제도적 중복 시행		
사정기관공직자의 처우개선 및 처벌강화	사정기관 공직자 처우개선 및 처벌강화 방안 마련					
			사정기관 공직자 처우개선 및 처벌강화			
독립적인반부패기구의 설립	-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에 대한 여론형성 - 반부패 전문연구기관 육성('12~) - 국제 반부패평가모형·지수 개발('12~)					
			- 국제 반부패 컨설팅 센터 운영('13~)			
				기구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제도의 수정		

뇌물죄 양형기준 준수

1 과제설정의 배경

- 형법상 뇌물죄는 유기징역,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기본적 구성요건인 제129조 제1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5,000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
 - 뇌물죄에 대한 법정 형량은 살인죄의 형량에 비견될 만큼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원의 형량이 관대하여 실행률이 낮고 집행유예율이 높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 뇌물죄의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뇌물액인데 동일한 뇌물액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따라 평균 실행 형기가 최저 2개월에서부터 최고 38개월까지 차이가 남
 - 대법원이 전국 판사들에게 권고한 뇌물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실행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단독법관 뿐만 아니라 합의부에서도 그러한 양형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러한 관용 일변도의 양형관행은 배분적 정의는 물론이고 구체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양형은 동질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법관의 주관적 개인차를 배제한 균등한 형량을 확보하고,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객관적 양형조건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관의 현실적인 양형행위가 직관적·경험적·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당위성 존재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뇌물죄는 규범적 접근방식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 이에 따른 양형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준수 절실
-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통계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뇌물죄 양형시스템 구축

- 뇌물죄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범죄형태에 있어서는 선고유형에 따른 양형 인자의 합리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
- 뇌물수수경위와 청탁내용의 적법성에 따른 양형체계 법제화
 - 뇌물수수경위는 수뢰자가 스스로 뇌물을 요구하였는가 아니면 증뢰자가 스스로 제공하였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수뢰자의 부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
 - 뇌물수수가 부정한 업무집행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정한 업무집행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행해진 것인지의 여부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뇌물죄의 유형화 기준 및 제도화

- 뇌물액과 뇌물수수 횟수 등에 따른 유형화가 필요
 - 양형기준을 뇌물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뇌물금액만큼 유의미한 양형 인자를 추출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
 - 뇌물수수횟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행위의 불법성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것임
 - 이는 행위자의 불법의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액과 마찬가지로 뇌물죄의 선고 형태와 의미가 있음

□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방안 수립

-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검증의 범위·절차·항목 등을 공개하는 프로세스 정립으로 고위직 인사검증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징계시 가중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라 보다 엄격히 관리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통계적·과학적 뇌물죄 양형시 스템 구축	과거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					
		뇌물죄 양형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법·입법·행정의 국민적 여론 형성				
				통계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뇌물범죄 양형시스템 구축		
뇌물죄 유형화 기준 제도화		뇌물죄 유형화를 위한 다양한 양형 인자 탐색 및 실증 연구				
				뇌물죄 유형화 제도적 기반 조성 및 법제화		
고위공직자 부 패 방지 방안 수립	고위직 인사검증 시스템 정비		고위공직자 징계시 가중처벌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 검토	

종합적인 조정·관리 기능 확보

1 과제설정의 배경

- 반부패 업무 추진에 상호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효율성이 떨어짐
 - 부패관리와 공직윤리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공공부문의 부패, 공직윤리 관리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공직자 윤리법」 상의 공직윤리기능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방지 기능의 통합을 통해 공직 윤리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
-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필요성 대두
 -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부패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심협의체 필요
 -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협의체 구축 및 부패정보(부패공직자 적발, 징계처분 현황, 사법처리 결과 등)의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확충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 기능의 중첩, 중복감사와 영역충돌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일관성 있는 사정체계 수립을 전담하는 정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
 - 공직자 윤리의식의 제고는 1회성의 선언식이나 결의대회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정책적 지원과 점검 등이 필요
 - 공무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에서는 이를 전담, 추진하는 기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중추적인 정책기구의 부재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며,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 존재
 -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헌장과 강령의 위반에 대한 판단과 이의 적용이 근본적으로 어려워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행동을 제고시키기 위한 현실적 기준으로서는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음
 - 대부분 훈령수준으로만 제시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실정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국가 청렴도 향상 및 대외신인도 제도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제시
- 부패방지·공직윤리·청렴의 유사업무 담당기능의 종합화로 반부패 정책의 통일성·일관성·예측성·효율성 강화
- 고도화·지능화·은밀화 되는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종합적 조정 관리 기능

- 범정부적 차원의 부패방지대책 협의체계 구축
- 공직윤리 기능과 반부패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및 공유
- 공직윤리 업무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수행
- 개별적으로 법을 두되 관리기능을 한 기관에서 통합하는 방안과 통일법을 제정하고 종합적으로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시행

□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부패방지 관리 기능 강화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선물신고 등 전반적인 윤리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 「공직윤리전산시스템 통합·고도화」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응용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공직자윤리법·제도 변경사항 반영 지속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부패방지 와 공직윤리 기능 통합관리	- 통일법 제정과 기관구성에 대한 논의 및 여론수렴 -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부패 정보 공유협약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수행			
			- 공직윤리와 반부패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 부패정보공유 법제화			
종합적인 Control Tower	- 종합적인 부패통제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 확산 - 반부패관계기관협의체 구성					
			범정부적 차원의 부패방지대책 협의체계 구축			

부패사범 사면권 제한

1 과제설정의 배경

□ 부패에 대한 미약한 처벌

- 부패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직 내의 인사권자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미약함
- 부패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덮어주고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온정주의 문화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패가 발생한 부서에 평가 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처벌위주의 평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함

□ 처벌의 일종인 부패 사후관리 미흡

-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강화가 필요함
 - 특히 부패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부패사범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 제한과 기준 강화 필요
 - 특히 사회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권력층의 인사에서 반부패·청렴을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사용
 -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과 복권기한의 연장을 통해 부패사범의 공직진출 기회를 제한할 필요 있음
- 특히 현재의 사면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사면위원회의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부패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부패의 기회비용의 증가시킴
- 부패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장치를 마련해 부패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처벌과 사후관리

- 부패사범의 공직진출 기회제한 기준 논의 및 개선안 마련
- 부패수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 부패공직자 징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부패사범의 정보 및 통계자료 공개

□ 사면위원회의 역할 범위 정립

- 사면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 사면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
-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사면권 심의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써의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면결정심사위원회'방안 고려
 - 사면권을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독점하기보다는 법원과 다른 기관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처벌과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사범 공직진출 제한 기준 논의 - 부패이익 환수 법·제도 개선안 마련 - 부패공직자 징계제도 개선안 마련 - 부패사범의 정보 및 통계자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사범 공직진출 제한 - 부패사범 정보 공개 					
사면권제한		사면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방안 마련 시행					
		사면위원회 회의록 공개					
		부패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와 양형기준 강화					

청렴도평가법 제정

1 과제설정의 배경

- 책임성강화를 하기 위한 기업부패방지방안 마련,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의 설립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계속해서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강화하여 조금씩 부패를 줄여 나가야함
- 제도나 법적 재정비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고,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는 부패와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대상들을 상대로 사후관리 일환으로써 청렴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청렴도 평가로써 청렴도 측정이 처음 실시된 이후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금품, 향응 수수로 물의를 빚은 일부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등 부패실태와 청렴 간의 괴리가 발생하거나 평가결과 드러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보다는 기관 간 순위 경쟁에 치우치게 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써 청렴도 평가가 자의적으로 조작가능한 설문으로써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항이 매우 단순하며, 평가 결과가 낮을 때 이루어지는 법적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볼수 있음
 - 내용적인 면에서는 유엔(UN)은 조직 내부 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청렴도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이른바 유엔 윤리진단 프로그램으로 조직가치, 행위원칙·기준, 조직관행, 조직문화, 리더십 등 총 5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음
 - 윤리진단 프로그램은 전체 질문 개수만 102개에 달하고 내용도 치밀하며 세심하기로 유명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청렴도 평가 설문 문항 수는 31개로, 유엔 청렴도 조사 항목의 3분의1 수준임으로 우리나라 평가 지표가 청렴도를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실함을 알 수 있음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렴도 평가의 내용적인 면의 개선과 더불어 청렴도 평가법을 제정하여 청렴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필요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청렴도평가법의 제정은 청렴도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로써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음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국가청렴지수 개발 등 청렴도 평가제도 발전방안 수립
 - 민간부문의 청렴도 평가모델 개발 및 기술 전수
 - 자체적인 국가청렴지수 개발, 장기적으로 「청렴도평가법」 제정 추진
- 청렴도 평가의 법적 조항 마련
 - 청렴도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과 민간분야의 전반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청렴도 평가의 항목을 설정하는데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항을 설정함
 - 청렴도 평가의 결과에 따른 해당 개인, 기관, 기업에 대하여 처벌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함
- 청렴도 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 청렴도 평가결과를 청렴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함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청렴도평가법 제정		- 민간부문 청렴도 평가지표 개발 - 국가청렴지수 개발				
				청렴도 평가법 (가칭) 제정		
청렴도 평가 결과의 정보 공개			청렴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1

과제설정의 배경

- 불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무조건 벌금 5,000만원'과 같은 식으로 양형하고 선고하는 것이 관례임
 - 이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앞두고 한나라당 최고위원 9명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 가진 만찬 자리에서 "생계형 픽업 차량들이 교통 위반해서 내는 벌금과 벤츠 승용차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똑같은데 그게 공정사회 기준에 맞겠느냐?" 라는 화두를 던짐
- 형벌의 개별화 취지와 부합되는 정책 기반 조성 필요
 - 모든 형벌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에게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느끼는 반성과 책임에 차이가 있음
- 형법상 책임주의*와 동등 희생의 원칙**과의 조화 달성
 - 빈자와 부자에게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되지만 부자에게는 전혀 충격이 되지 않는 심리 고려
 - 이러한 점이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수벌금제 적극 도입 필요성 존재
 - * 형법상 책임주의(責任主義) : '책임없이 형벌없다'는 법언에 따라 책임 없으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권을 한정하는 것
 - ** 동등 희생의 원칙 : 모든 납세자가 조세부담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
- 벌금형을 자유형에 더 한층 일치시킨 제도라는 평가도 존재
 - 주로 형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으로 자유형과 벌금형의 가치가 지나치게 분리되고 전혀 별개의 형벌처럼 평가되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왜곡된 책임주의 척결을 위해 제도의 도입 필요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벌금형의 탄력성 및 배분적 정의가 실현될 필요성 존재
- 벌금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경제사범의 경우 현재의 벌금형은 의미가 없으며 일수벌금제나 주식벌금제 같은 제도의 도입이 절실
- 벌금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면 범죄 예방효과가 저하되므로, 형벌을 통해서 배분적 정의도 실현 가능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해외사례 참고, 법규 위반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벌금 차등구형 방안 시행

※ 스웨덴의 한 부동산 업자가 자동차를 몰고 핀란드 땅으로 막 넘어갔을 때 갑자기 속도 측정기에서 플래시가 터짐. 시속30km 이하로 제한된 곳인데 표지판을 못 보고 67km로 주행하다 적발된 것이었고, 그는 몇 달 뒤 날아온 벌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람. 벌금이 무려 2만500 유로(약 2870만원)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행정착오가 아니냐"고 핀란드 법원에 항의하자 법원은 "핀란드의 교통 위반 벌금은 위반자의 연봉에 따라 책정된다"고 응답. 스웨덴 부동산 업자의 연봉이 29만 유로(약 4억600만원)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긴 것임

□ 중장기적으로, 국민 소득 파악 시스템의 제도적 기틀 마련

- 핀란드가 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어떠한 세금의 탈루나 축소 신고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국가의 조세권은 추상처럼 단호함
-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 등 소득계측장치의 선진화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의 형평성, 조세 정의를 이를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화 및 제도적 이행방안 마련

-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원과 검찰, 재야, 법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법률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함
- 형사제도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일수벌금제도 시행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일수벌금징액 결정에 대한 여론 수렴					
		사회보험제도 소득계측 시스템 선진화				
		벌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 의무화 추진				
일수벌금제도 관련법률 개정	법률안 개정 전국민 차원의 공론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제도 우선 시행			
			공공부문 선 시행 (공직자 등)	민간부문 후 시행 (일반국민)		
					법률 개정 및 일수벌금제 시행	

감사직렬 확대

1 과제설정의 배경

- 부패에 관한 감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자체의 경우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되어 있고, 감사 인력에 대한 다면평가제 운영방법 개선과 함께 이를 수행할 감사인력 확보 필요
 - 지자체 감사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감사요원을 5개 직렬로 한정하여 행정 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 존재
 - ※ 10여명의 감사요원이 감사수행, 직무감찰, 중앙감사 지원, 일반행정 업무수행 등 업무가 중으로 감사전문 교육 참석과 자체 연찬회 등을 개최하는데 미흡
 - ※ 특히 교육계는 비리건수에 비해 감사인력이 부족하여 교과부는 올해 초 특별감찰팀을 신설, 상시 감찰 기능을 강화, 기존 상시감찰팀을 확대 개편
- 개방형 감사책임자를 출신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기관에서의 경력자를 채용한 경우는 총 97개 기관 중 33개 기관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하여 감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 직렬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같은 기관에서의 경력자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경우가 45개 기관, 감사원 경력자가 채용된 경우는 20개 기관으로 나타남
 - 공공감사법의 제정 취지는 동일기관의 경력자가 순환보직에 의해 감사기구의 장으로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것임
 - 이를 감안하면, 감사원 출신 인사를 제외한 순수한 외부 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34%에 불과해 외부의 중립적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효과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개방형 감사직렬 외에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직렬을 신설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감사 직렬을 세분화 및 확대하여 국가 행정 전분야에서 해당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사행정 기반 조성
- 단일 감사직렬을 행정 분야별 복수직렬로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능력 위주 행정조직으로의 변화를 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감사직렬 확대 및 신설을 통해 부정부패 감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Full-Spectrum** 관점에서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각 행정 분야별 부패의 유형 및 사례, 조사에서 처분까지 이어지는 감사의 전과정 등을 매뉴얼화한 체계를 만들어 감사의 효율성 제고
- 지방직 공무원의 감사직렬 신설 또는 국가로부터의 파견을 통한 신분안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제도화 필요
 -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것이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다양한 측면의 정책과제 검토
 - 일본의 외부감사제도와 같이 감사제도의 보완책으로 전문가인 외부감사인과 위탁감사계약을 맺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주기적 감사과정 매뉴얼화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					
			법률에 의한 시스템 제도화 및 정착				
감사직렬 신설 및 확대 제도화	감사직렬 신설 및 확대 제도화에 관한 정책타당성 검증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직렬을 점진적, 단계적 확대					
					제도 정착을 통한 감사 경쟁력 강화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의 정보공개

1 과제설정의 배경

- 반부패·청렴을 위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의 정보 집계와 공개가 필요
- 또한 청렴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청렴플랫폼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국민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의 정보공개는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 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

2 과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선행
 - 청렴의식 함양의 제도적인 기반으로 활용할 자료의 확보
 - 사회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초 마련
 -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

3 과제의 세부구성 내용

- 반부패·청렴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함
 - 현재는 누가, 어느 기업이, 어느 기관이 부패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아 부패가 적발되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제도이지만 반대로 청렴 공무원, 청렴 기업, 청렴 기관에 대한 공개와 부패이후의 사후처리·개선 등에 대한 모범사례의 홍보와 정보공개를 통해 부패당사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의 필요
- 청렴 플랫폼을 통해 ‘부패 정보공개,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반부패 모범 사례공개 및 포상, 외국 사례연구 발표, 반부패 연구 자료 발표’ 등의 정보를 공유
 - 정보공개 관련 반부패 정책연구, 반부패 청렴교육 및 입법 활동
 - 지하경제 및 사회 각 분야의 부패 감시와 국민 정보 공개
 -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한 반부패 국민 여론 확산

4 과제의 추진단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 정보공개	-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 정보수집					
	- 청렴사례 수집 및 홍보					
	- 부패 극복 사례에 대한 수집 및 홍보					
				부패자, 부패기업, 부패기관 정보공개		

V. 향후 기대 효과

□ 반부패 문제의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의 기폭제

- 부패척결에 대한 분위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국가 단위에서는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행계획의 수립 등을 천명하고 있어 반부패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국내외적으로 부패척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부패척결의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시기에 반부패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은 반부패 문제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반부패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마련의 초석

- 현재 최고 지도층은 지방토착비리 및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공직사회 부패 등을 해결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사건은 이러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공허한 구호로 치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
- 반부패정책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한 마스터플랜의 충실한 집행은 공공부문을 반부패의 대상이 아닌 반부패정책 추진의 주체이자 시민사회와의 파트너로서 인식을 전환시키고 공공부문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반부패정책에 대한 전정부적 연계 가능성 강화

- 부패의 일반적 속성으로 습관성, 확산성, 은밀성, 보충성을 꼽는데 이러한 속성의 부패는 부패담당기구가 전담하여 해결하는데 있어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부패 관련 정보공유 및 정부부처간 협조체계는 부패척결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임

- 본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처간 업무공유 및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연계 체제 제시를 통하여 부패척결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더불어 청렴플랫폼을 통한 각계각층의 정보소통을 통한 부패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반부패정보 및 반부패정책에 대한 공유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반부패정책에 대한 실질적·지속적 추진의 토대

- 반부패정책은 추진전략과 추진목표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제시된 과제들이 공공부문 내에서 아젠다로 설정되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장기 반부패 Master Plan